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16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8년 10월 10일(수) 14:00~17:00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이상민 국회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국회 생명존중포럼 사형폐지 종교 · 인권 · 시민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원회

70주년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프로그램 Program

제1부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진행 : **황윤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간사

구분	일정	시간
등록		13:40 ~ 14:00
개회사	**문희상** 국회의장	14:00 ~ 14:05
기념사	**배기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14:05 ~ 14:15 (10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14:15 ~ 14:25 (10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과보고	**김형태** 범종교인연합집행위원장	14:25 ~ 14:30
지지성명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 대사	14:30 ~ 14:35
유족발언	**이영교 여사, 여규환**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유족	14:35 ~ 14:40
선언문 낭독	**종교, 시민사회단체 대표**	14:40 ~ 14:50
사진촬영 및 휴식		14:50 ~ 15:00

프로그램 Program

제2부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

좌장: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회: **조영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구분	일정	시간
	• **사형확정 후 감형, 석방된 경험자의 증언** **김성만**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피해자	15:00 ~ 15:10
발표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소개** **한영수** 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10 ~ 16:00 (50분)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 **사형의 대체형벌 제도에 대한 논의와 도입가능성의 검토**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 교수	
토론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00 ~ 16:50 (50분)
	이인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홍성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50 ~ 17:00 (10분)
폐 회		17: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목 차 Contents

기념사

배기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5

축 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9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1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13

이정미 정의당 대표 ····· 15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17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9

지지성명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 대사 ····· 21

유족발언

이영교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유족 ····· 23

발 표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 27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 **사형의 대체형벌 제도에 대한 논의와 도입가능성의 검토** ····· 51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 교수

토 론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91

이인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 95

홍성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 101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105

붙임 ▸ 사형제 폐지 – 각국의 29개 사례 연구 ····· 109

1부

▸ **기념사**

배기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축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지성명**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 대사

▸ **유족발언**

이영교 여사, 여규환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유족

기 념 사

배기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오늘 우리는 사형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형폐지국가로 나가기 위해 이미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동의로 이 법안이 마련되었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추이도 사형폐지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본 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편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사회가 사형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조차 힘든 흉악한 살인으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잃은 당사자의 가족에게 이 상식을 순하게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잃은 생명을 살인자의 생명으로 되갚는 응징의 길만이 이 억울한 일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커다란 아픔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아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께 참으로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귀한 생명을 잃은 결과로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업보같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자비와 용서라는 대승의 길을 걸어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의 심정 또한 헤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범죄와 속수무책의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그런 피해 속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인간들이기에 인간이 걸어가야만 할 더 귀한 길 곧 생명을 아끼는 길에 더 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일이지만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야 이루어질 이 사형폐지운동에 하늘의 감도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

기 념 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축사를 해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 이해찬 대표님, 손학규 대표님, 정동영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 지지성명 발표를 해 주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 대사님을 비롯한 각국 대사님, 인혁당재건위 조작 사건 사형수 피해자 유족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념식 행사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주신 국회 이상민 의원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사형제도 폐지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는 시민사회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국가로서는 마땅히 이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스스로 법의 이름을 빌어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총회는 2007년부터 매 2년마다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5년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이후 2009년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2018. 9.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사형 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형제도 폐지를 소극적인 입장으로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보상,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한 응보 내지 형사 책임에 따른 정의실현 등을 이유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통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만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후 대체 형벌을 통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간과한 채 모든 책임을 범죄자 개인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을 탈피해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범죄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배려 · 지원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고 기존에 사형으로 처벌했던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로 대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 이은 토론회에서 대체 형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형벌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입법적 조치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고견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기념식 행사와 토론회 개최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축 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 확대를 위해 그동안 애써 오신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사형제도는 국가가 정의라는 미명하에 계획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단적인 형벌입니다. 우리나라는 21년째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같은 해 유엔총회에서도 '사형에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고, 세계 각국에 사형집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계 102개 국가가 사형제 폐지를 헌법과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까지 포함하면 140여 개 국이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혁당 사건 등처럼 인간의 오판으로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받지 않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새기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당은 여러분의 열정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0.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해 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축 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제16회 세계사형제도폐지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15개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의 인권과 존엄을 위한 노력과 헌신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이 창립하고 10월 10일을 '세계사형폐지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온 지 16년이 되는 해입니다.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가해야한다는 여론 속에서도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내기 위한 연석회의의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간의 '사형제 폐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념식이 사형제도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및 사회 주요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사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를 바라며, 사형제도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도 널리 환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차후 사형제도 폐지를 포함한 인권 이슈에 관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0.8.
바른미래당 대표
손 학 규

축 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의 한 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하는 「제16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대한민국의 완전한 사형제 폐지와 진정한 인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면서 본 기념식과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한국사형제폐지운동연합을 비롯한 15개 단체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달 11일 사형제 폐지를 규정한 국제 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가입을 권고한 규약은 1989년 제44차 UN총회에서 채택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로서, 사형 집행금지 의무와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전쟁 중 군사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8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OECD 회원국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4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향후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2/3 이상의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EU의 모든 국가를 포함한 140개 국가가 사형제가 없거나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유지의 가장 큰 명분은 흉악 범죄의 예방입니다. 그러나 각종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유지가 범죄율 저하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 형벌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도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형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동서명하고 공동발의에 함께 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과 토론회」가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8.10.10.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축 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뜻 깊은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사회 사형제 폐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인권·종교단계 관계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힘찬 격려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오판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고, 범죄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제 존치여부가 살인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UN의 공식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살인을 범죄로 규정해놓고 다른 한쪽에서 국가가 직접 살인을 행하는 모순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살인을 살인으로 씻어내는 방식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감정을 인간의 기본감정으로 이해한다 해도, 인류의 법·제도는 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살인으로 살인자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악질범죄, 흉악범죄를 잉태한 병든 사회를 구조적으로 고치는 데 있습니다.

미국 〈플레이보이〉 창간자 휴 헤프너는 "나 같은 쓰레기의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때 모든 이의 '표현의 자유'도 지켜진다"고 말하 바 있습니다. 요컨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자였다 하더라도, 사형수의 인권이 지켜질 때 우리 모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인류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2015년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원전원이 서명하는 등 당론으로 사형제 폐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형이나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사형제 폐지 공론화와 대체형벌 도입을 위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우리사회 생명과 인권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축 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사형제도

오늘은 세계사형폐지의 날입니다.

매년 기념식이 끝나면 다음 기념식에서는 사형폐지를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기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공식 선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는 이미 1997년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20년 이상 그 선고가 집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형선고의 형 집행시효는 30년입니다. 그러나 30년까지 채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렇다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제도를 앞 당겨 지금 당장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많은 국민은 불안해합니다. 사형제도가 강력범죄를 예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대체할 적절한 형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이나 강도 살인처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그 믿음은 더 확고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범죄백서에 나타난 통계가 말해줍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20년 동안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살인과 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인 범죄로 사망하는 피해자 수는 매년 350여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 살인사건만으로는 오히려 유럽 국가들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 살인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형

이라는 최고 형벌이 잠재적 범죄자에게 겁을 주어 범죄억지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국민의 법 감정에 기대어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생명의 고귀함과 유일무이함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형제도의 수명이 다했음을 선언해야할 때입니다. 정작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내년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서는 그야말로 사형폐지를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하태훈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축 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제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오늘의 기념식과 토론회를 통해 국회, 종교, 시민사회에 사형 폐지를 위한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행사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국회생명존중포럼과 사형폐지 종교 · 인권 · 시민단체연석회의 분들께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기념식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각국의 대사님들과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유족분들, 이어지는 토론회 발제와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들 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목적일 뿐,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한편으로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의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형제도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겉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것을 실제와 맞는 법제도로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사형 제도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합니다. 이 법을 통해 국가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범죄자의 인권 보호 및 교화·개선을 지향하는 국가형벌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흉악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사형 집행에 대한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흐르는 사회 분위기 속에 제도적인 진전이 번번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동해복수(同害復讐)' 차원의 사형제는 집단지성 차원에서 볼 때도 온당치 않은 제도입니다. 반 인권적이고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형 폐지는 철학과 가치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하고 무거운 의제입니다. 또한 국회가 사형폐지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일에는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오늘의 기념식과 토론회를 계기로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지혜가 국민들에게 전해져 사형 폐지를 추진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입법을 통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를 의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야 모든 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를 통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의 되었으나 아쉽게도 매 국회 때마다 폐기가 되었던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자리가 사형 폐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사형 폐지를 위한 제도적인 진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이상민

지 지 성 명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 대사

Joint Local Statement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ation that the country accede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The European Union Delegation issues the following statement in agreement with the EU Heads of 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mbassador of the European Union, H.E. Michael Reiterer and the Ambassadors of the 28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elcome and strongly support the recommendatio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the country accede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Ambassadors equally support the Commissioners' hope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move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y making the unofficial moratorium on the implementation of executions into an official moratorium and voting in favour of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a Moratorium on Use of the Death Penalty.

The European Union reaffirms its strong and unequivocal opposition to capital punishment in all circumstances and for all cases. The death penalty is incompatible with human dignity. It is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does not have any proven significant deterrent effect, and allows judicial errors to become irreversible and fatal."

"유럽연합 대표부는 주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과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대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를 강력히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은 대한민국이 비공식적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상태를 공식적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으로 변경하는 것과,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사형제 폐지로 나아갈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희망을 동일하게 지지합니다.

유럽연합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 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로 그 어떤 중대한 억제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법적 실수를 가져옵니다."

유 족 발 언

이영교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유족

안녕하세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집행을 당한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입니다. 하재완씨와 그 동료 등 여덟 분이 사형집행을 당한지 벌써 4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형 집행 된 지 35년 만에 재심에서 하재완씨는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과 협박으로 조작된 사건이니 간첩이 아니라며 국가에서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조된 수사와 엉터리 재판으로 사형수가 되자마자 형장의 이슬이 되어 떠나버린 하재완씨와 그 동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수억 원의 배상금도 우리 인혁당 가족들의 지난 40년 세월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바로 사형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누가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인혁당 선생들을 포함하여 250여명의 정치범이 사형집행 되었습니다. 이 분들 중 상당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국가가 보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 다시 돌아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 인혁당 가족들은 이 나라에서 사형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부 모두가 나서서 꼭 사형제도를 폐지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부

▶ **발표**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 **사형의 대체형벌 제도에 대한 논의와 도입가능성의 검토**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 교수

▶ **토론**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홍성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Ⅰ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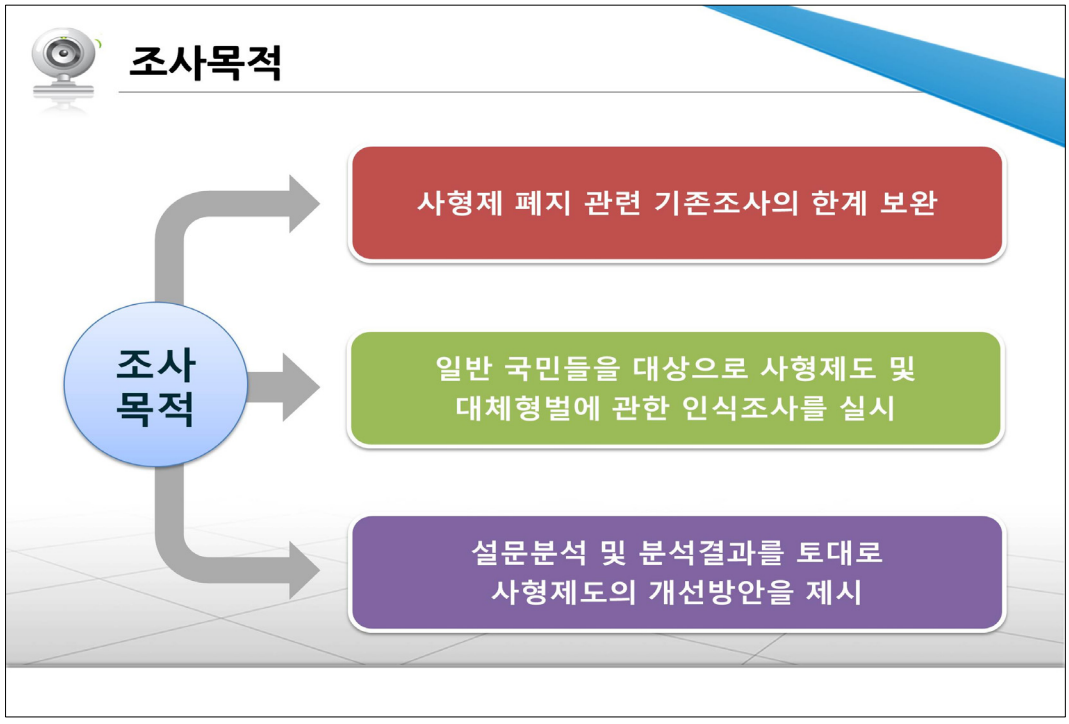
조사목적
조사 목적
사형제 폐지 관련 기존조사의 한계 보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
설문분석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조사방법

연구 추진 프로세스

적용기법 및 방법론

- 문헌조사
- 비교연구(기존조사결과 비교)
- 온라인 설문조사(일반시민)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설문 문항개발 등

조사설계

조사대상	표본수	표집대상	조사방법
일반국민	1,000명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례할당	온라인 설문조사 (95% 신뢰수준, ±3.1%p)

구분		응답자수	비율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7	50.7%	종교	기독교	215	21.5%
	여성	493	49.3%		불교	156	15.6%
연령	20대	184	18.4%		천주교	87	8.7%
	30대	197	19.7%		무교	538	53.8%
	40대	230	23.0%		기타/무응답	4	0.4%
	50대	231	23.1%				
	60대	158	15.8%				
지역별	서울	196	19.6%	강원		29	2.9%
	부산	67	6.7%	충북		30	3.0%
	대구	48	4.8%	충남(세종)		45	4.5%
	인천	59	5.9%	전북		34	3.4%
	광주	28	2.8%	전남		33	3.3%
	대전	28	2.8%	경북		51	5.1%
	울산	24	2.4%	경남		64	6.4%
	경기	253	25.3%	제주		11	1.1%
학력별	초등학교졸업	11	1.1%	대학교졸업		461	46.1%
	중학교졸업	14	1.4%	대학원 재학 이상		68	6.8%
	고등학교졸업	262	26.2%	기타/무응답		4	.4%
	전문대학졸업	180	18.0%				

조사내용

분류	세부항목
생명권에 대한 인식	•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 •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 •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 • 오판의 가능성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 의견	• 현행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및 인지경로 •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찬성이유 • 극단적 상황(가족이 사형과 관련)에서의 사형제도 유지/폐지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반응	•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 인식 •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성 인식 • 사형제도와 형벌목적과의 부합 정도 •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 사형폐지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의 관계

분류	세부항목
사형제도의 대안 (대체형벌과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 절대적 종신형 • 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 • 상대적 종신형 • 무기징역 •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 •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정도
사형제도에 대한 정보습득 이후 인식변화	• 설문 이후 사형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 습득여부 및 유형 •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여부 •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 •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원인
응답자 특성	• 성별 • 연령 • 거주 지역 • 종교 • 학력 • 월평균 소득(개인 & 가구소득)

II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현행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경로 및 정도

- 일반국민의 67.9%가 사형제도를 인지(매우 잘 알고 있음 9.6%, 알고 있음 58.3%)
- 인지경로는 언론보도(82.5%)와 학교교육(14.7%)이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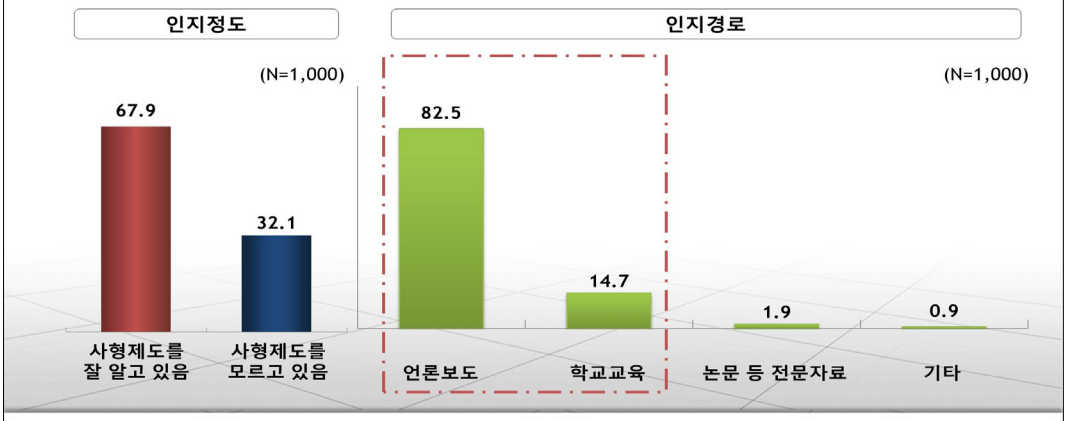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성별, 연령별 인지정도의 차이

- 주된 인지경로인 언론보도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형제도를 인지하였다는 비율이 높음
- 특히,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언론보도를 통한 인지는 낮은 반면, 학과교육을 통한 사형제도의 인지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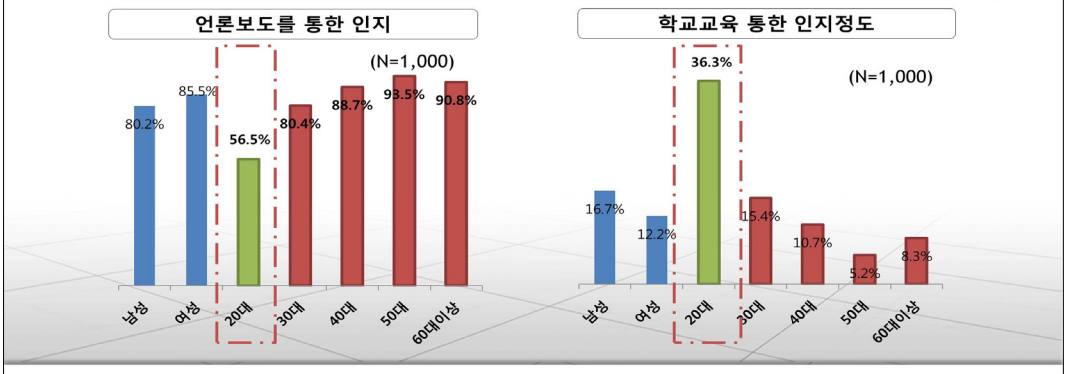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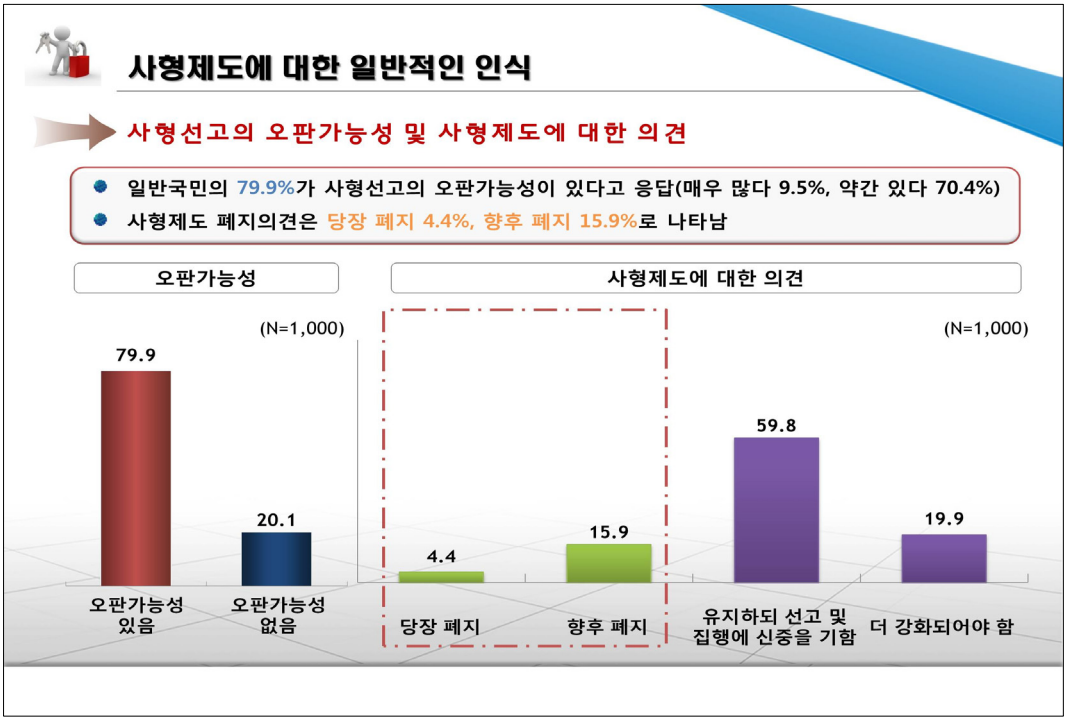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 및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의 79.9%가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이 있다고 응답(매우 많다 9.5%, 약간 있다 70.4%)
사형제도 폐지의견은 당장 폐지 4.4%, 향후 폐지 15.9%로 나타남
오판가능성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1,000)
(N=1,000)
79.9
20.1
4.4
15.9
59.8
19.9
오판가능성 있음
오판가능성 없음
당장 폐지
향후 폐지
유지하되 선고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함
더 강화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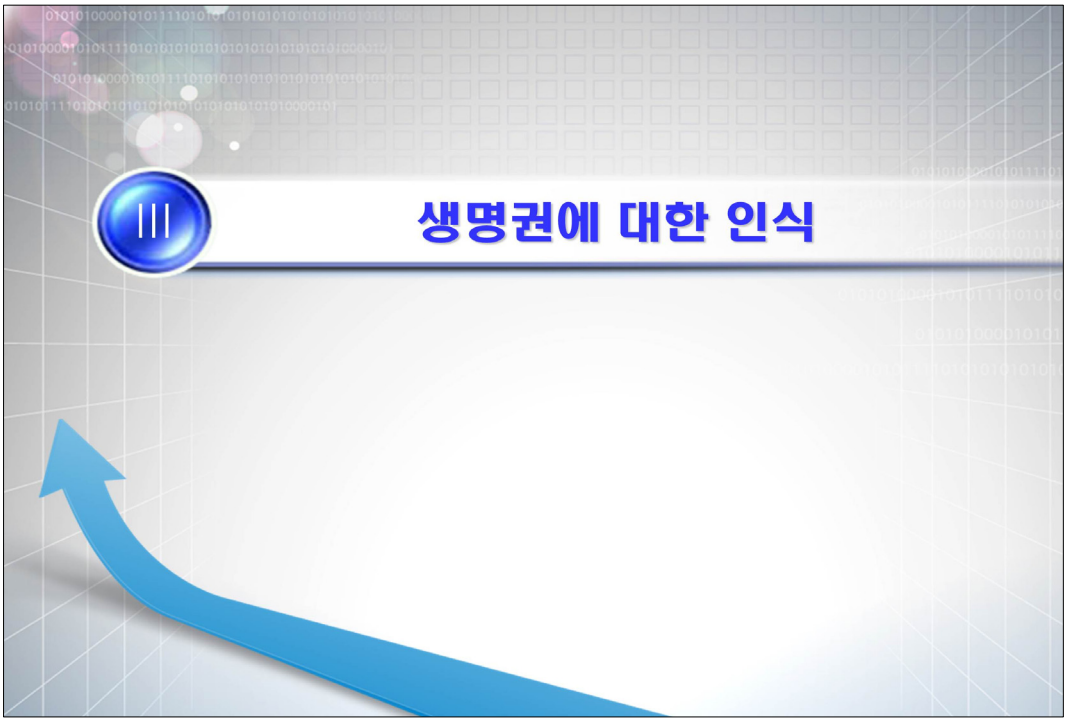
III
생명권에 대한 인식

생명권에 대한 인식

가장 우선시되는 기본권에 대한 의견

- 자신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기본권은 자유권(36.6%) > 생명권(27.7%) > 평등권(25.3%)
-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되는 기본권은 생명권(35.3%) > 자유권 (24.1%) > 평등권(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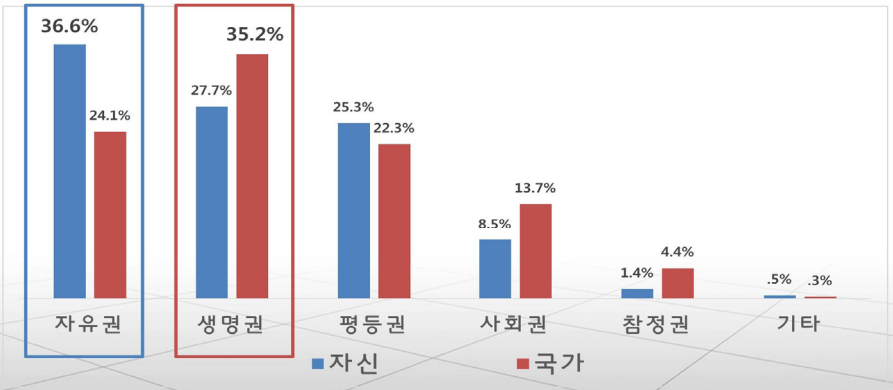

생명권에 대한 인식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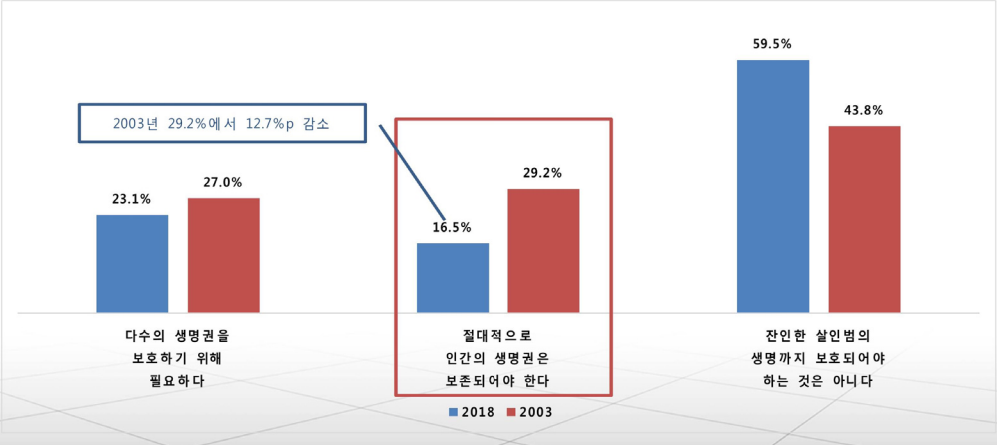

Ⅵ 사형제도의 평가와 폐지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의 평가와 폐지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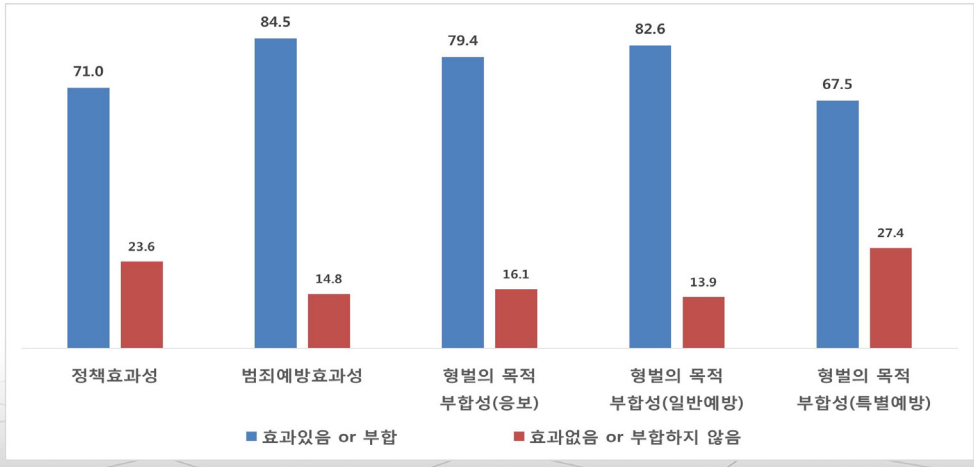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평가와 폐지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사형제도 의견별 정책효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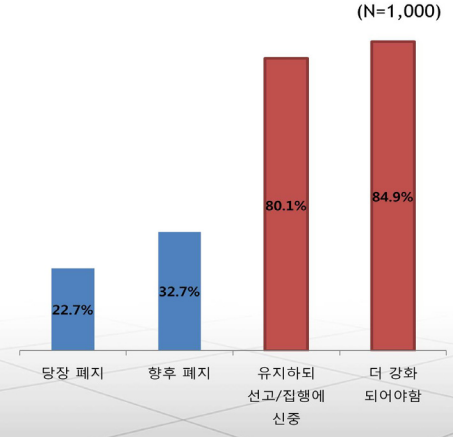

사형제도 의견별 범죄예방효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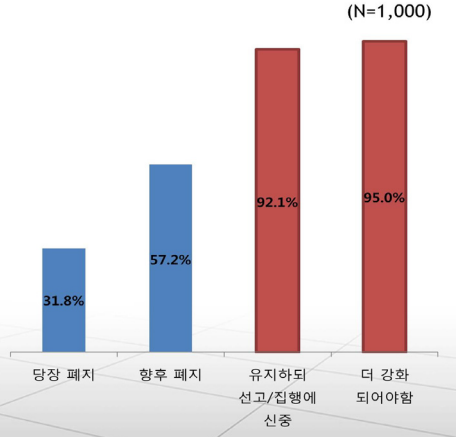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평가와 폐지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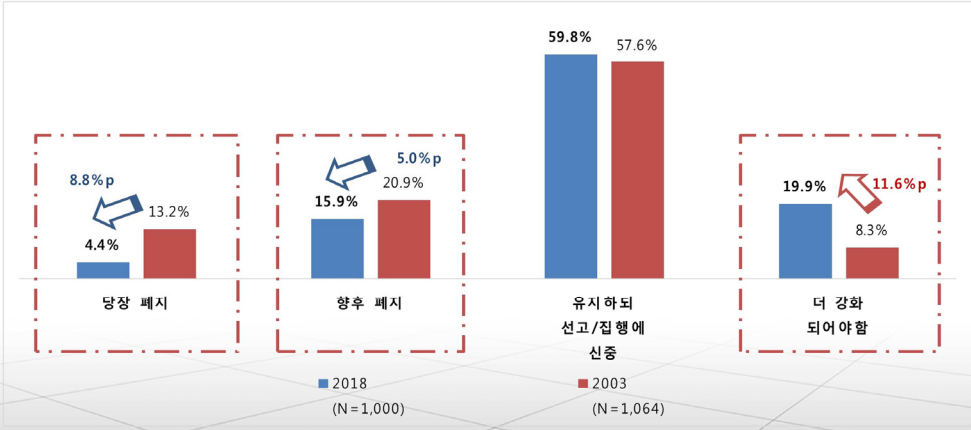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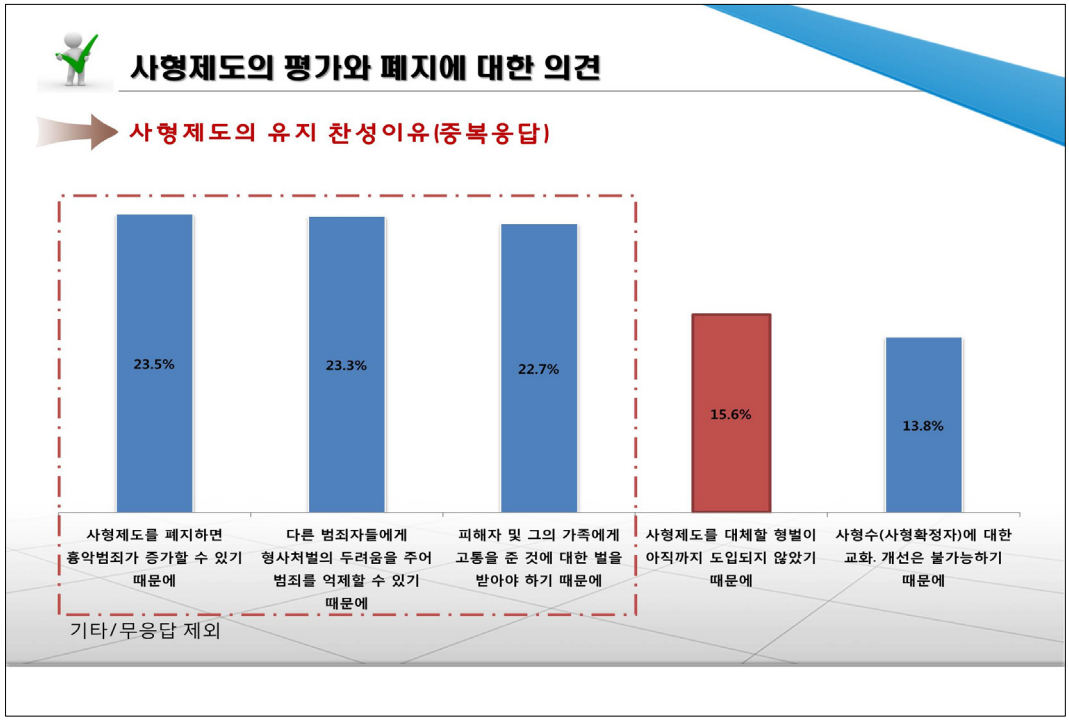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평가와 폐지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의 유지 찬성이유(중복응답)
23.5%
23.3%
22.7%
15.6%
13.8%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수(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 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타/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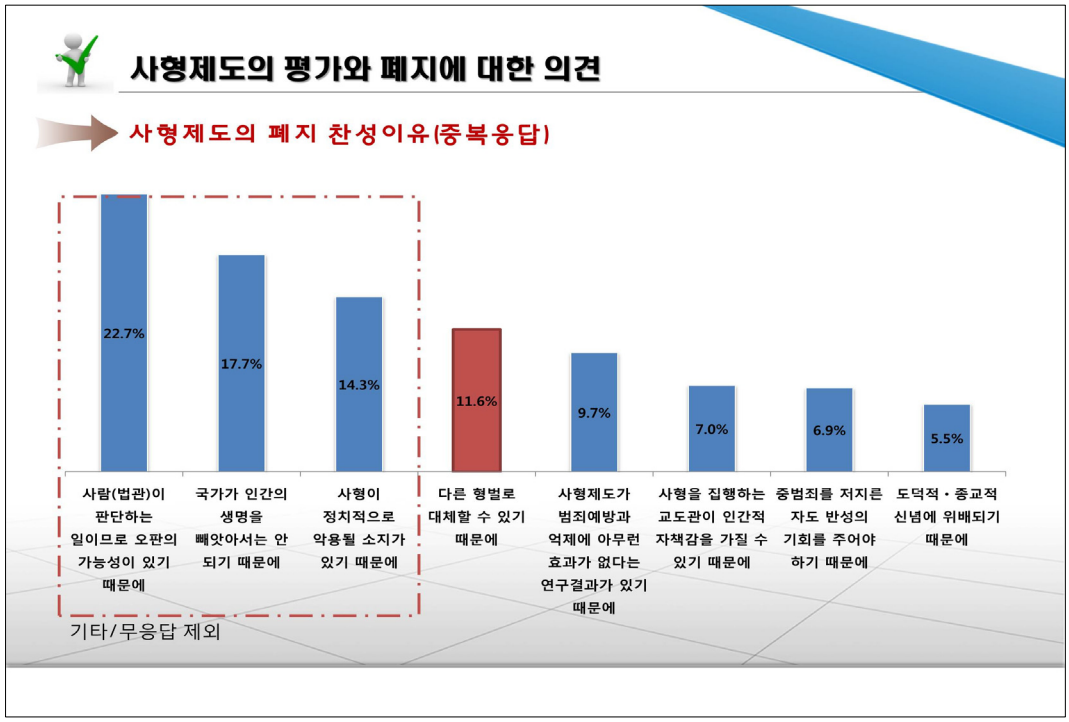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평가와 폐지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의 폐지 찬성이유(중복응답)
22.7%
17.7%
14.3%
11.6%
9.7%
7.0%
6.9%
5.5%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타/무응답 제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형제도의 평가와 폐지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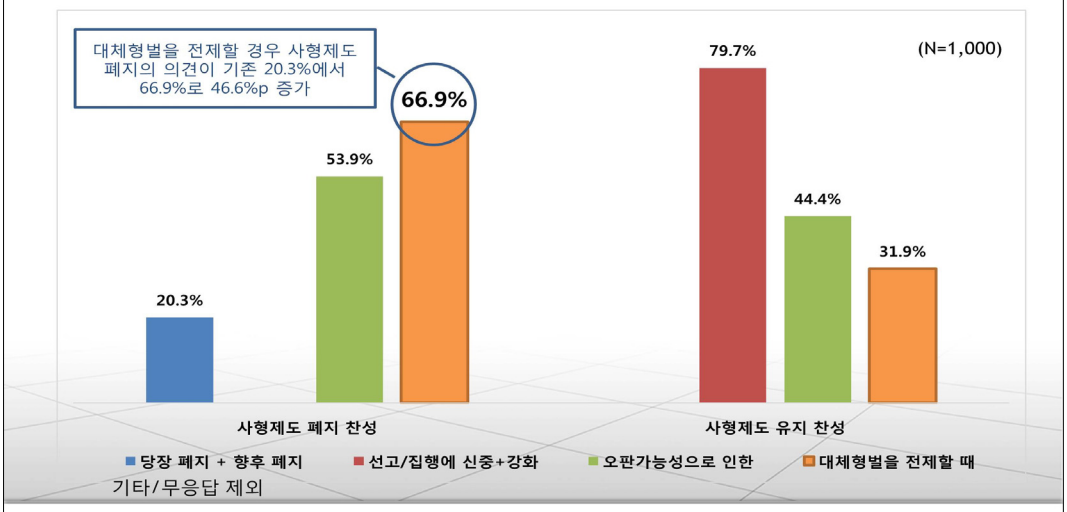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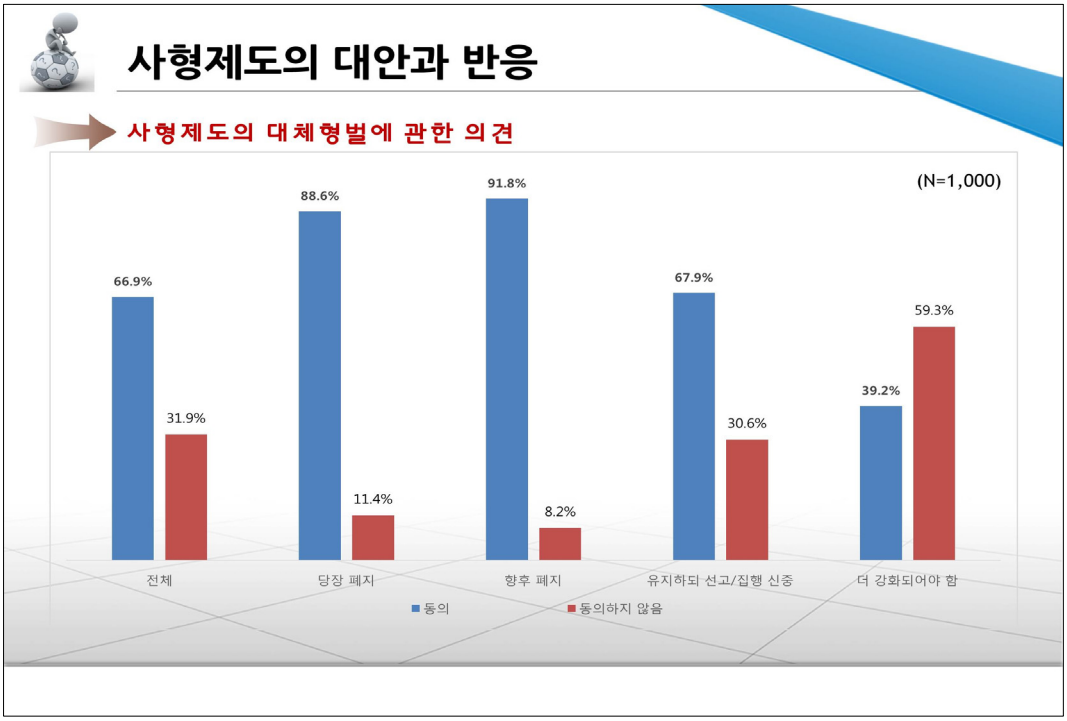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관한 의견
(N=1,000)
66.9%
31.9%
88.6%
11.4%
91.8%
8.2%
67.9%
30.6%
39.2%
59.3%
전체
당장 폐지
향후 폐지
유지하되 선고/집행 신중
더 강화되어야 함
동의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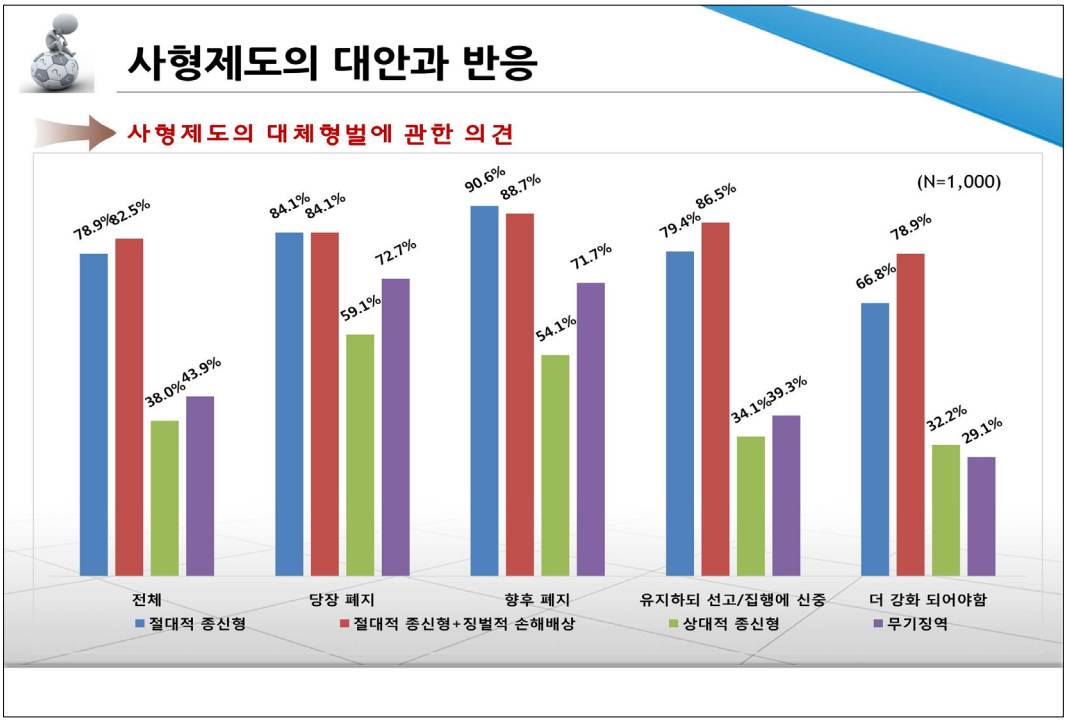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관한 의견
(N=1,000)
78.9%
82.5%
38.0%
43.9%
84.1%
84.1%
59.1%
72.7%
90.6%
88.7%
54.1%
71.7%
79.4%
86.5%
34.1%
39.3%
66.8%
78.9%
32.2%
29.1%
전체
당장 폐지
향후 폐지
유지하되 선고/집행에 신중
더 강화 되어야함
절대적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
상대적 종신형
무기징역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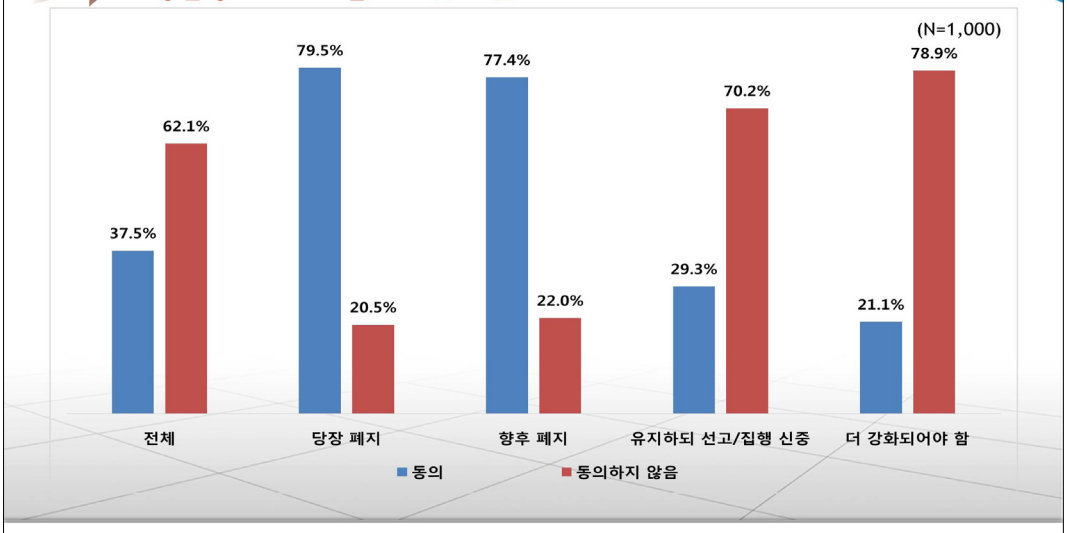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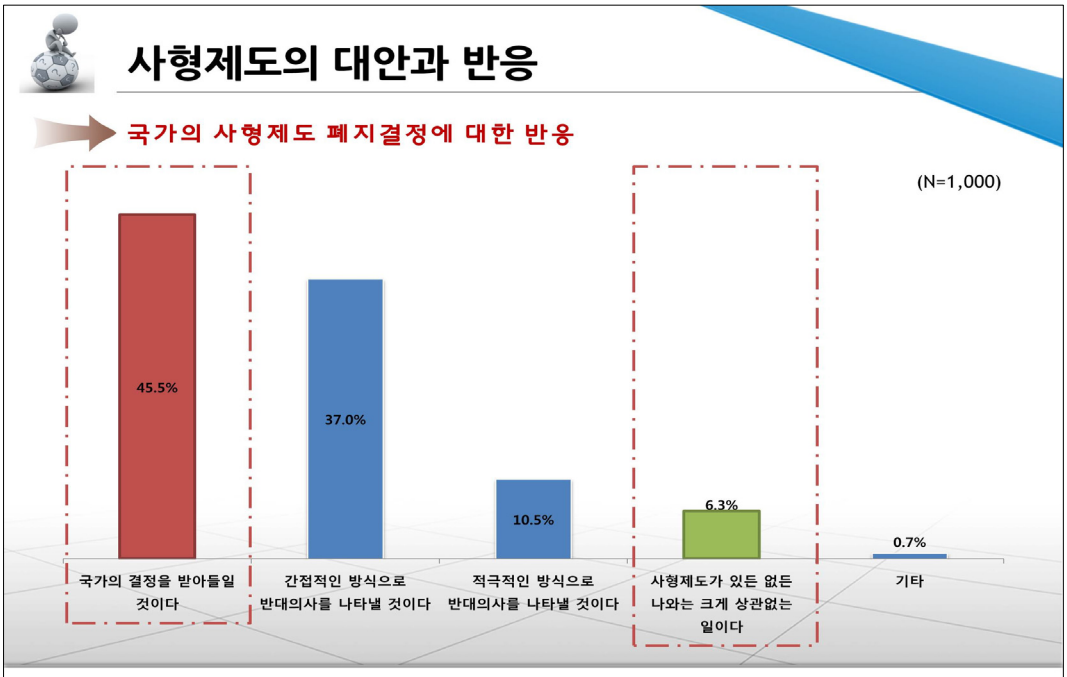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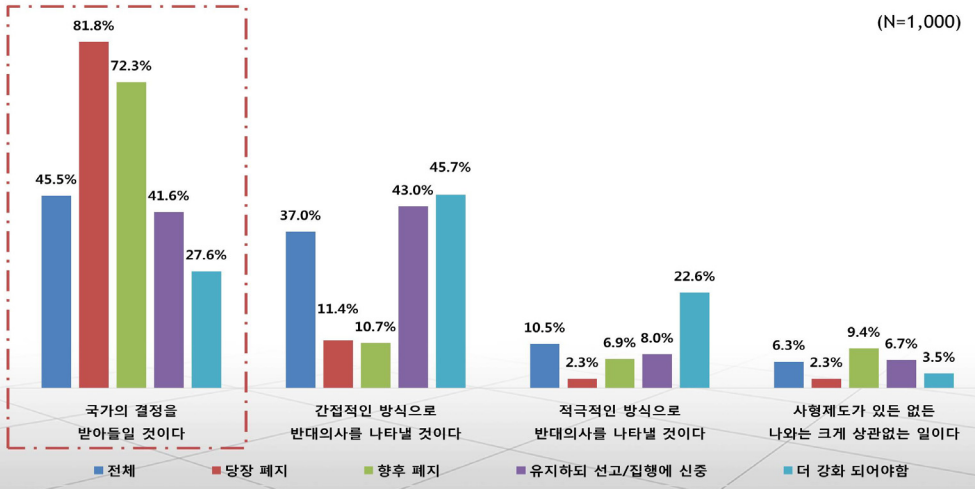

기타/무응답 제외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설문을 통한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정보습득 여부 | 새로운 정보습득 유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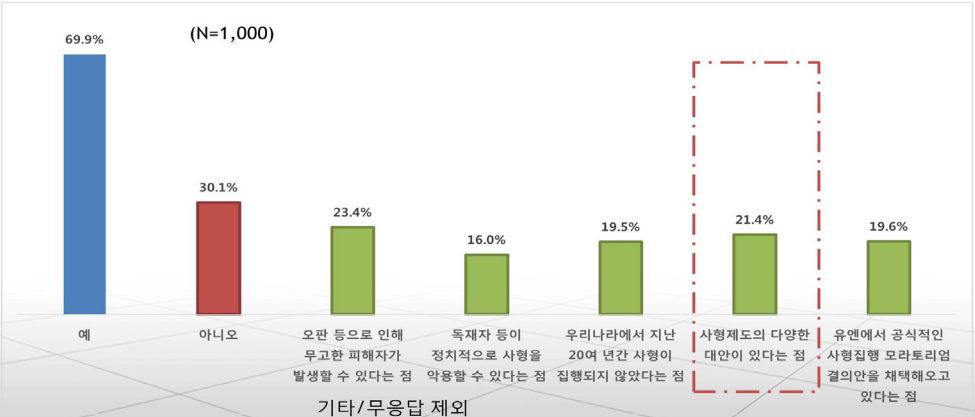

기타/무응답 제외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새로운 정보 습득 이후 인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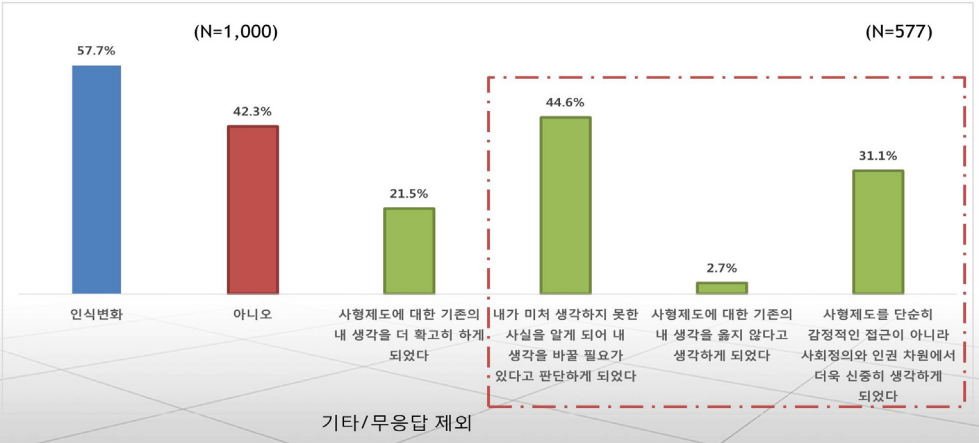

기타/무응답 제외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새로운 정보 습득 이후 인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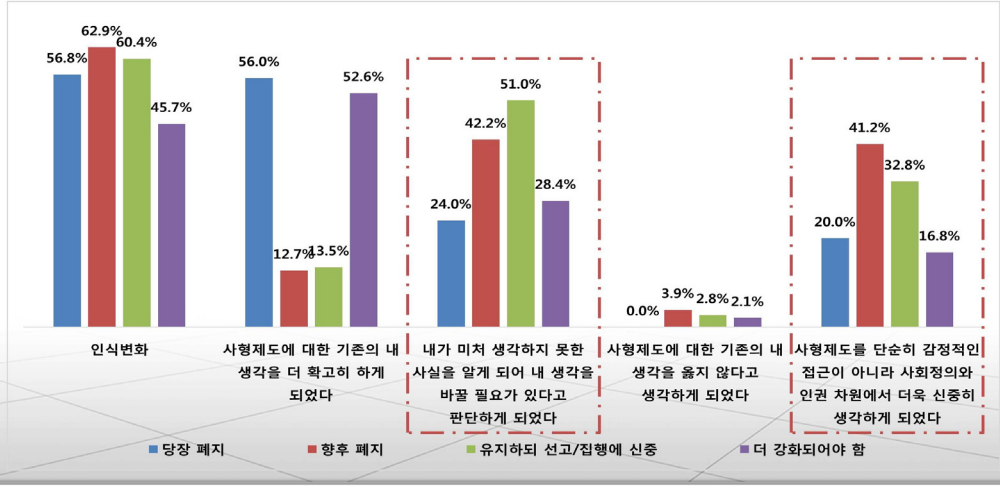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새로운 정보 습득 이후 인식변화 이유(당장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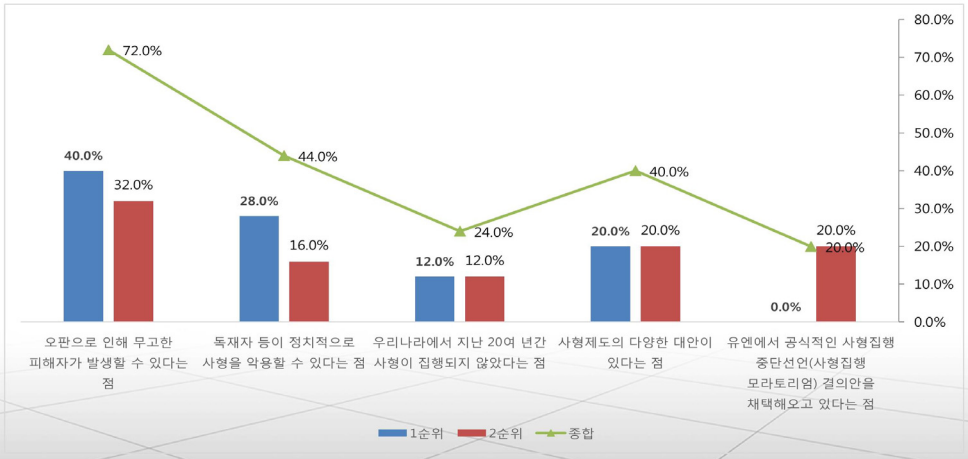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새로운 정보 습득 이후 인식변화 이유(향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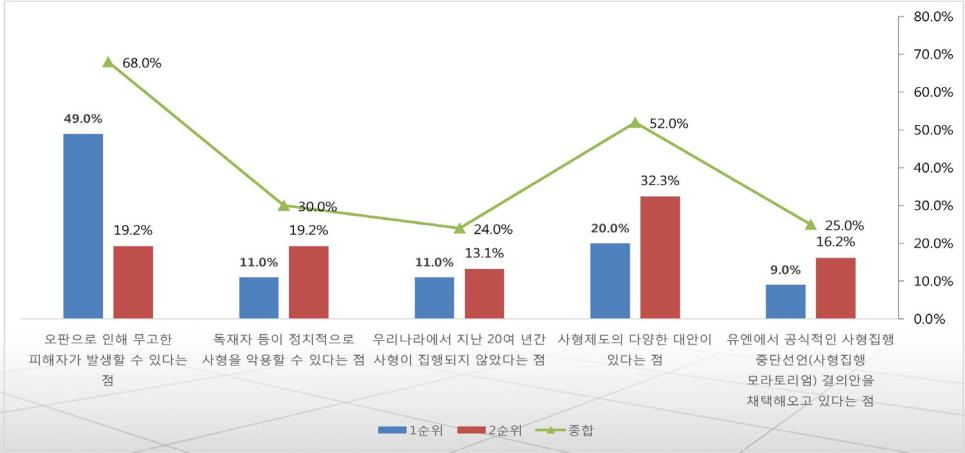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새로운 정보 습득 이후 인식변화 이유(유지하되 선고와 집행에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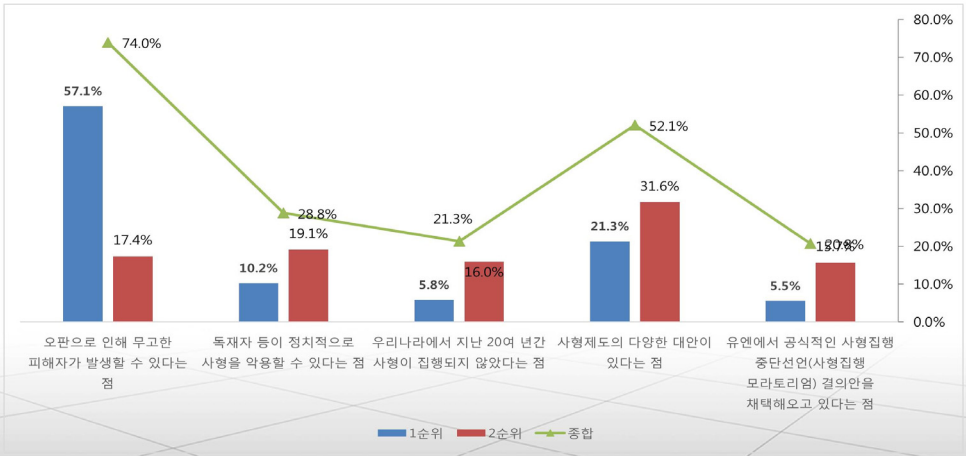

사형제도의 대안과 반응

새로운 정보 습득 이후 인식변화 이유(더 강화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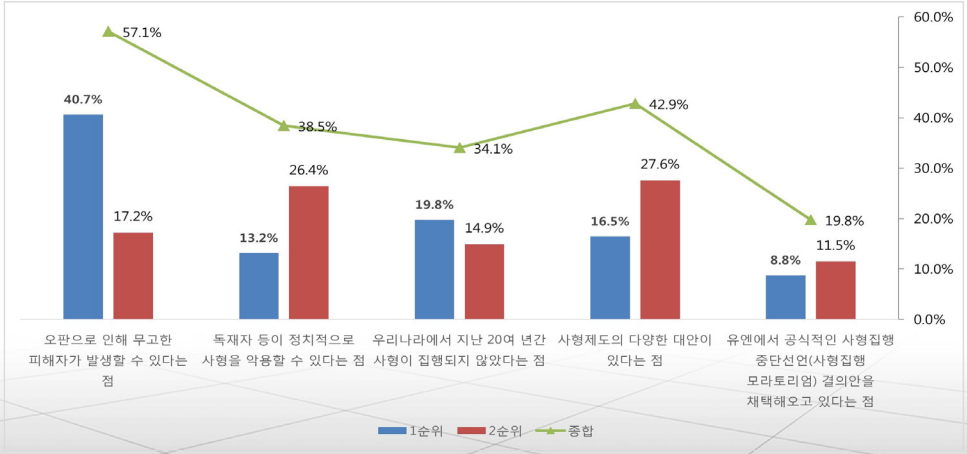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분석별과의 요약

•일반국민들의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률은 대체로 높은 편(67.9%)이나 이 중 대부분이 (82.5%) 언론보도를 통해 사형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카인즈 중앙지 및 방송 카테고리의 '사형' 검색결과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보도횟수	317	421	307	361	406	688	589	59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보도횟수	969	792	940	1,060	599	924	603	9,572 (연평균638)

• 2004년 이후 '사형' 이 언론에 보도된 횟수는 평균 638회이며, 대체로 2004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에 900여회 이상 보도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과거 2003년 조사에 비하여 '사형' 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사형' 관련 언론보도의 접촉기회도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됨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분석별과의 요약

•기본권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기본권으로 '자유권(36.6%)' 이라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생명권(27.7%)이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응답, 반면, 국가가 가장 중요시 해야되는 기본권으로 '생명권(35.2%)' 이라 응답하고, 다음으로 자유권(24.1%)이라 응답함. 이는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의 정책효과(71.0%)과 및 범죄예방효과(84.5%)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형벌목적에도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분석별과의 요약

•2003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증가한 반면, 폐지하자는 의견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도의 유지 찬성 이유로 '흉악범죄의 증가', '사형제도의 위하력', 그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응보적 입장' 순으로 조사. 반면,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로 '오판가능성(22.7%)', '국가의 생명권 박탈 부정(17.7%)', '정치적으로 악용 우려(14.3%)' 순으로 나타남.

•또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로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가 11.6%, 사형제도 유지 찬성의 이유로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가 15.6% 나타남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분석별과의 요약

•사형제도 폐지 의견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당장 폐지(4.4%), 향후 폐지(15.9%)였던 것이 오판 가능성으로 인한 사형폐지 53.9%,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폐지는 66.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의 상황 변화에 따른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 의견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사형제도 유지 찬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황변화에 따라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분석별과의 요약

• 한편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주로 '절대적 종신형' 과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 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많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행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는 전체의 37.5%가 동의하고 있으나. '사형제도의 당장 폐지 및 향후 폐지' 하자는 집단의 경우 각각 79.5%와 77.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선고/집행에 신중(29.3%)' 및 '사형제도가 더 강화 (21.1%)' 하자는 집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분석별과의 요약

•그리고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 결정시 일반국민들의 45.5%가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고 하고 있으며, '나와는 상관 없다' 는 응답도 6.3%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 폐지에 중립 혹은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소극적 반대 37.0%, 적극적 반대 10.5%로 조사됨.

•소극적 혹은 적극적 반대의사는 대부분 사형제도 유지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사형제도 유지를 찬성하는 집단에서도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이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선고/집행에 신중' 41.6%, '사형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함' 27.6%로 나타남.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분석별과의 요약

•마지막으로 설문을 통한 정보습득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9.9%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7.7%는 새로운 정보습득을 통하여 인식변화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사형제도의 당장 폐지' 와 '사형제도를 더 강화되어야 한다' 는 의견은 기존의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 '사형제도의 향후 폐지' 및 '선고와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는 의견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는 응답과 "감정적 접근이 아닌 사회정의와 인권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분석별과의 함의

이상의 조사결과로 볼 때

-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한 부정확하거나 단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설문 이후 새로운 정보 습득 및 인식변화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 특히,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전달이 부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책이 요구됨
- 생명권 존중에 대한 인식 및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 견해는 서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견해들은 시대적 상황변화 및 여건, 그 밖에 인권의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분석별과의 함의

- 사형제도의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 폐지에 보다 더 많이 찬성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 또한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 응답자의 66.9%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일반국민들의 3분의 2 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한 적절한 대체형벌의 마련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 결정에 일반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 또는 중립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 점은 향후 정책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Q & A
감사합니다

사형의 대체형벌 제도에 대한 논의와 도입가능성의 검토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 교수

Ⅰ. 들어가면서

지난해인 2017년 11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세 번째 한국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제시된 권고사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를 유월해서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완전한 사형폐지로 접어들어야 할 명백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법무부는 제3기 국가NAP의 설계과정에서 사형제도를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여 위헌성을 검토하고 개별 범죄구성요건에 존재하는 사형의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와 관련된 정책수립과 그 방향성을 더 이상 국민감정에 기대어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개선하는 미봉책으로 이끌어서는 안 되며, 제도 자체를 정확하게 통찰하는 인식의 변화와 폐지를 향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의식과 그에 기반을 둔 인권상황은 더 한층 증진될 수 있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생명권 존중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딛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아래 그동안 미루어 왔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의 가입과 사형제도의 법적인 폐지 및 대체형벌의 도입을 통한 사형제도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적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회적 논의의 진행과정에 하나의 준거기준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사형의 대체형벌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전제적 검토

1.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지 수준은 살펴보면 대체로 과반수 이상이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형이 어떠한 범죄와 법률에 근거하여 어떻게 선고되고 집행되는지,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의 사형집행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사형이 현존한다는 점과 간혹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지만, 과거 일정한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가 국민들이 인지하는 사형제도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사형의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관련된 인식의 오류 내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신뢰할 수 없는 사형의 집행통계: 공식통계의 부존재

가. 민간법원에 의한 사형집행의 부정확성

언론을 통하여 그간 알려진 정부수립 이후의 사형집행인원은 902명(중앙시사매거진, 2005), 998명(한국경제신문, 2006), 919명(경향신문, 2009), 920명(한겨레신문, 2012)등 제각각이었으며, 국정감사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로서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 언급되는 바에 의하면 923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정보들은 어느 것이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1950년 이후 1990년까지 사형집행인원 1,216명에, 1991년부터 1997년까지의 75명을 더하면 1,291명이 되는데,[1] 이를 법무부의 2009년 자료(923명)와 대조할 경우 368명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1990년까지의 통계가 참조하고 있는 법무연감에 따르면,[2] 1950년부터 1989년까지의 사형집행인원은 1,221명이며, 이에 의하더라도 그 결원은 378명이 된다.

---

1) 김용우, "사형제도 존속문제", 현안분석 제37호,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1, 16~17쪽; 법무연감, 법무부, 2008, 770쪽 참조.
2) 법무연감, 법무부, 1998, 94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형집행 인원[3)]

집행인원	출처	연도
1,216명	김용우, 현안분석보고서	1991.09.
902명	동아일보[4)]	1997.12.31.
1,287명	1998년 법무연감	1998.09.
1,601명	한용순, 석사학위논문[5)]	2002.02.
923명	국가인권위원회[6)]	2004.04.28.
998명	문화일보, 한겨레신문[7)]	2006.01.13.
900명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8)]	2006.11.13.
1,634명	배성범, 연구논문[9)]	2007.12.
1,596명	Johnson & Zimring	2008
1,476명	조균석, 연구논문[10)]	2009.02.
923명	18대 국회 국정감사자료[11)]	2009.10.11.
1,310명	19대 국회 사형폐지법안[12)]	2015.07.06.
919명	동아일보[13)]	2018.02.22.

3) 정부수립 이후 첫 사형집행은 1948년 8월 26일, 서울형무소 7명(강도살인 6명, 살인 1명), 대구형무소 1명(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8명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것이다. 이경열, "종극(終劇) 사법살인: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보론",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2015, 143쪽.

4) 1997년의 마지막 사형집행 직후의 이 수치는 1949년, 1950년의 국가보안법 사범 및 한국전쟁 당시 사형집행인원(특조령 위반)을 제외한 것이다. 이 통계의 수치는 대검찰청, "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존폐논쟁", 범죄분석 통권 제134호, 2001, 19쪽에서도 확인된다.

5) 이 논문에서는 통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현재 전남 순천지역의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연락한 결과, 2001년 당시 광주지검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무부 교정국의 도움을 받아 통계를 추산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6) 사형제도 개선 청문회 자료집, 2004.04.28.

7) 대검찰청 공법연구회에서 발제한 이헌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글 인용.

8) 법무부 용역연구로써 박상기,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06.13.~2006.11.13., 1쪽.

9) 통계의 출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배성범 검사는 우리나라의 사형집행인원을 제1공화국 1,103명, 제2공화국 62명, 제3공화국 173명, 제4공화국 139명, 제5공화국 61명, 제6화국 39명, 문민정부 5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성범,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790쪽; 이 수치는 정부수립 이후 일반법원의 사형선고에 의한 사형집행 920명에 군사법원에서의 사형집행인원(714명)을 합산한 것이라고 한다. 홍완식, 법과 사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3, 257쪽; 유영근,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억울한가, 타커스, 2016. 재인용.

10) 통계의 출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조균석,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사형집행", 법학논집 제13권제2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09, 63쪽.

11) 18대 국회의 2009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9월 25일, 당시 한나라당 소속 홍일표의원이 자

이러한 오차는 국내의 관련 통계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한 채 전시 등 비상사태에서 선포된 계엄 상황 아래의 민간인과 통상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 인원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아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통계들은 신뢰할 수 없으며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일제강점이 종료된 1945년부터 1997년까지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사형집행인원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외국문헌[14]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문헌[15]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미군정기(732명)를 제외하더라도 제1공화국 이래 1997년까지의 사형집행인원은 1,596명으로 확인되는데, 만일 이 자료에 근거한다면 법무부 공식통계와의 편차는 673명으로 더욱 늘어난다.

나 . 군사법원에 의한 사형집행의 불투명성

이와 같은 공백은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등 정부수립 전후의 국지적 혼란상황과

료를 요구한 1980년 이후 사형집행인원에 대해 10월 19일자로 검찰국 형사기획과가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사형집행인원(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reqdoc/2009/pdf/000611399.PDF)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13), 76쪽), 정부수립 이후 사형통계는 이보다 앞서 9월 11일(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reqdoc/2009/pdf/000611393.PDF)에 한나라당 소속 박민식 의원의 요구로 10월 10일, 제출되었으나, 해당 자료는 공백처리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되었다(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Ⅶ), 16쪽);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수립 이후 사형의 첫 집행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 확정자를 1949년 7월 14일에 집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약 1년간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970년 법무부 문서보관소 화재로 정부 공식문서가 소실된 점을 들고 있고, 923명이라는 통계는 이후 대검찰청과 각 교도소 등에 흩어져 있던 사형 관련 자료를 모아 복원한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이 통계는'공식기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추정통계에 불과한 것이다.

12) 통계의 출처 근거 제시 없으며 국회의안번호(1915958),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 의원 등 172인);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누적통계라는 이 자료 역시 정확하지 아니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안 원문 주1)에서 1980년 10명이 집행되었다고 하나 법무부 통계는 9명이며, 1982년의 경우 21명이라고 하나 역시 법무부 통계는 23명이고, 1985년은 1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법무부 통계는 11명이다. 아울러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집행인원을 111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법무부 통계는 같은 기간 101명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제시된 연도별 집행인원을 합산하면 1,238명으로 당초 1,310명이라고 제시한 결과와 대조할 때 72명의 인원에 차이가 나타난다.

13) 가장 최근의 1심 사형선고 후의 신문기사.

14) David T Johnson, Franklin E Zimring, The Next Frontier: 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Change, and the Death Penalty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160.

15) 한용순,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사형집행현황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7쪽. <표-1>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한국전쟁기간에 발생한 국가불법의 결과를 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 공식통계에서 빠트렸던 까닭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전쟁 초반 일반법원과 군법회의를 가리지 않고 사형선고를 남발한 후 집단처형의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표 2] 군사재판에 의한 민간인 등 사형집행 인원(제주4.3사건)

연도	집행인원(명)	비고
1949.02.27	39	제주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구)형법 제77조(내란) 적용]
1949.10.02	249	고등군법회의[국방경비법 제33조(적 구원 통신 등), 제34조(간첩) 적용][16]
합계		288명[17]

군사법원(군법회의)의 사형판결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은 불분명한 차원을 넘어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의 [표 2]와 아래의 [표 3]과 같이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에 대한 군사법원(군법회의)의 사형판결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은 최소 846명에 달한다.

[표 3]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집행 인원(여순사건)

연도	집행인원(명)	비고
1948.10.31	76	순천지역 군법회의
1948.11.14	46	고등군법회의
1948.11.16	12	제1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민간인)
1948.11.30	+300	제2차-제9차 고등군법회의(민간인)
1948.11.23	23	대전군법회의
1948.11.27	55	총10차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로 1차 집행(군인)
1949.01.17	69	총10차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로 2차 집행(군인)
합계		최소 558명

16)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편사연구사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62년까지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해 판결을 받은 피고인 23,000여명 가운데 약 30%인 7,300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김득중,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의 법-역사적 접근", 아세아연구 제53권 제4호, 2010, 32쪽.

17) 1949년 10월 2일, 집행된 인원 가운데 20명은 제주도 주둔 9연대 소속 군인임. KMAG, G-2 Periodic Report, No.192, October 6, 1949; Joint Week a, No.17, September 30-October 7, 1949.

[표 4] 한국전쟁기간 특조령 적용 부역자재판에 의한 사형집행 인원

기간	집행인원(명)	비고
1950.11.07	25	중앙고등군법회의 및 서울지구 고등군법회의
1950.11.24	242	서울지방법원(민간 법원재판)
1950.11.25	96	중앙고등군법회의
	65	서울지구 고등군법회의
1950.12.15	39	법무부?
합계		467명(+)

아울러 [표4] 한국전쟁기간 특조령이 적용되어 군사법원(군법회의)과 민간법원에 의한 사형판결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은 최소 467명에 이른다. 그런데 [표 6]에서와 같이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형선고의 인원은 한국전쟁의 발발 후 6개월간의 사형선고인원은 무려 1,90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사형집행 인원을 쉽게 가늠할 수 없게 한다.

[표 5] 1950-1955년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선고 인원

연도	육군본부(1956)[18]	육군본부(1998)[19]	(1956) : (1998) 비교
1950.06-1950.12	1,902	1,902	0
1951	1,132	925	-207
1952	559	136	-423
1953	29	62	+33
1954	54	58	+4
1955	42	42	0
합계	3,718명	3,125명	-593명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기간까지 확인된 통계만으로도 최소 1,313명이라는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형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성찰해 볼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형벌제도로서 사형에 내포되어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사회일반에 공지하려면 그 출발점은 공식적이면서 실증적인 통계자료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8) 육군본부(편),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육군본부 군사감실, 1956, 127-129쪽.
19) 육군본부, 법무50년사(1946-1998), 육군본부 법무감실, 1998, 173쪽.

정부수립 이후 민간법원의 사형선고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검증하는 작업과 군사법원의 사형선고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을 정리하여 특정하는 작업은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사형의 존치와 집행의 재개를 요청하는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여론 형성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통령긴급조치를 통한 사형선고와 집행의 위험성

현행 우리나라의 법질서 아래 사형대상범죄 규정이 드러내는 문제점은 인명침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도입되어 있고, 미수범과 결과적 가중범에게도 과도하게 사형이 허용될 수 있으며, 절대적 사형규정이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아니한 전시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가안으로써 존재하는 호수미기재의 대통령 긴급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한국전쟁 기간동안 이승만정권이 적 치하의 부역혐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대거 처형할 수 있도록 평시보다 과도한 형태의 가중된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단심재판과 군법회의를 통한 사형선고를 허용하기 위하여 급조한 법적 근거인 이른바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어떠한 비극을 가져왔는지 그 참혹한 결과를 과거사에 대한 조명 과정에서 목격한 바 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빚어진 참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통계를 어느 것 하나도 공식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게끔 만든 주된 원인으로 설명된다.

이 법령은 1960년 10월 13일, 폐지되었다가 박정희정권 시기인 1975년 5월 21일, 슬그머니 되살아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안)'과 '전시법원 조직 및 사법운영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등 두 개 전시대기법령(戰時待機法令) 형식의 대통령 긴급조치(안)으로 부활하였다. 이후 노태우정권 시기인 1989년 6월 8일, 3급 비밀로 지정된 이래 그 명칭이 '전시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및 '전시법원 검찰조직 및 사법운영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변경되어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 이 위헌적 법령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야기되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현존하는 위험이자 사형의 정치적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법살인의 도구이기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설령 평시가 아닌

20) 2017년 4월, 국민안전처의 용역연구보고에도 이 두 법령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융합형 위기관리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7.04.27., 60쪽.

국가비상사태에는 사법절차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논리에 근거하더라도 그 법령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사형의 대체 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1. 국내 논의의 동향

가. 개념

종신형(life imprisonment)은 수형자가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하는 자유형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용실태에 따라 가석방과 사면, 감형이 없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석방의 기회가 박탈되는 종신형일 수도 있고, '가석방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사면 또는 감형은 가능한'종신형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단 '가석방이 허용되는'경우를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할 때 그 외의 종신형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절대적 종신형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형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순위의 중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도 정해진 형기 없이 무기한의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종신형과 유사하지만,[21] 일정기간 복역 후에 가석방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는 상대적 종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판단할 때 상대적 종신형은 원칙적으로 일생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되 예외적으로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는 형벌임에 대하여 무기징역은 일정기간과 조건 아래 가석방을 전제로 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형 대체형벌의 도입에 관한 입법적 논의

(1) 국회

[표 6]과 같이 2004년, 17대 국회에서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처음으로 사형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이 등장하게 되었고, 연이어 2005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도입할 것을

21)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428판결.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2006년 법무부도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와 그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형폐지의 대체형벌이 제도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이 구체적인 논의를 촉발하지는 못하였고 이후로 19대 국회까지 5차례에 걸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될 때마다 종신형은 그 대안으로써 거론되어 왔다.

[표 6] 사형폐지법안의 발의와 제시된 대체형벌

	발의일	발의자	대체형벌
15대	1999.12.07	유재건의원 등 91인	무기징역
16대	2001.10.30	정대철의원 등 63인	무기징역(가석방 제한 15년)
17대	2004.12.09	유인태의원 등 175인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불가능)
18대	2008.09.12	박선영의원 등 39인	절대적 종신형(가석방・사면・감형 불가능)
	2009.10.08	김부겸의원 등 53인	절대적 종신형(가석방・사면・감형 불가능)
	2010.11.22	주성영의원 등 10인	절대적 종신형(가석방・사면・감형 불가능)
19대	2015.07.06	유인태의원 등 172인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불가능)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에 의한 실질적 위헌 심사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헌재는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태도를 굳건히 유지했으나 특히 2010년 결정에서 소수 위헌의견(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체계상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가석방 없는 무기자유형 등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아울러 국가가 범인을 교도소에 계속 수용하고 있는 한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목적은 사형과 똑같이 달성될 수 있으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절대적 종신형제도 또는 유기징역제도의 개선 등 사형을 대체할만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현행 무기징역형이 아닌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사형을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국제사면위원회의 여론조사

또한 1999년 10월,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여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형 찬성의견이 50%이고, 폐지의견이 43%였지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폐지의견은 61.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국민여론의 태도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단순하게 질문할 경우 존치의견이 우세했지만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대체형벌을 전제할 경우 사형폐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사형 대체형벌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입장

(1) 논의의 출발

우리나라에서 사형의 대체형벌이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199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23] 당시의 논의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우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나누어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사형폐지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형벌효과의 측면에서 사형을 그대로 존치시키되 집행유예제도를 두어 사형선고 뒤 정황을 참작하여 신설되는 종신형으로 '감형'을 하는, 일종의 사형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소개되었다.

비슷한 시기, 사형폐지와 대체형벌을 연계하는 형태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견에 따르면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형폐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황 아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의 평가가 있으면 그때 상대적 종신형을 인정하자는 것이다.[24] 이와 같이 단계적 구조의 종신형 제도를 제시했던 이유는 논의당시의 무기징역제도가 형법 개정 전의 상황이었던 까닭에 10년의 복역 후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 논의방향

사형을 폐지할 경우 도입해야 할 대체형벌과 관련된 국내 학계의 논의 방향은 크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 현행 무기징역제도의 보완 및 유지, 그리고 절충적인 입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대체형벌의 도입을 주장하더라도 일

---

22)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9.02.18., 17쪽.

23) 오선주/이병희, "사형존폐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청주법학 제15권,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51-52쪽

24)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234쪽

부의 견해는 사형폐지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지 않거나 사형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종신형은 병사 또는 자연사할 때까지 수형자를 수감시설에 감금하는 형벌을 의미하는데, 법률상의 용어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석방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그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하고, 허용되는 경우를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한다. 나아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가석방 뿐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에게 보장된 사면권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까지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25]

(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론

① 내용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제안되었던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들은 원칙적으로 사형폐지를 전제하면서 그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26] 이들에 의라면 절대적 종신형이 위헌적 요소를 띠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대안들이 우리 현실에서는 사형을 대체할만한 필요 충분한 형벌이 된다고 국민 대부분을 납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형폐지전략으로서 중간단계의 대체형벌은 절대적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27] 아울러 위헌성의 문제는 사면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28] 만일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게 되면 가석방이 허용되는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 이외에는 현행법상의 무기징역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국민감정, 피해자감정, 위하력 등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절대적 종신형의 타당성을 주장한다.[29]

이러한 입장은 절대적 종신형을 사회적 생존에 대한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날 사회가 생물적 생존을 박탈했던 전통 사형제도에서 사회적 생존을 박탈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

25)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소고", 277쪽;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140쪽 이하 참조.

26)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228쪽 이하 참조.

27) 김영옥, "사형폐지에 대한 대책", 비교법학 제2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2, 279쪽;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법학연구 제17권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141쪽 이하.

28)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법학연구 제13권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92쪽.

29) 김인선, "한국의 사형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재고",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199쪽.

있는 사저을 고려할 때 사형의 대체형벌로 적합하다거나,[30] 현행 무기형을 상대적 종신형의 일종으로 파악하면서도 무기형이 수형자의 복역 태도 등에 따라 감형이 되고 있어 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으며 특히 사면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전혀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31]

또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 20년 이상을 수감하면서 행형성적과 개전의 정, 재범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후, 피해자에게 20년 이상 동안 경제적으로 급부를 제공하고, 피해자측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32] 반인륜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응보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33]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황을 고려할 때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사면이나 감형은 허용하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형벌체계와의 균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견해[34]도 있다.

이외에도 중대범죄의 유형이나 성격, 정도에 따라 사형, 절대적 종신형, 무기형(상대적 종신형), 유기형의 형태로 다단계적 형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형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되 20년의 기간 수형생활 후 가석방이나 대통령의 일방적인 특별사면이 아닌 국회 동의를 거치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35]

더불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그것이 사형과 무기형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형벌이며, 사형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응보감정을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거나,[36]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여론과

---

30) 이보영/박봉진,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법학연구 제25호, 한국법학회, 2007, 367쪽.

31)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5호, 한양법학회, 2009, 351～352쪽.

32) 박성철,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21권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40～144쪽.

33) 송문호, "한국형사제재의 발전경향", 법학연구 제38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3쪽.

34) 이원경,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종신형제도에 관한 제 문제", 교정연구 제69호, 한국교정학회, 2015, 287쪽.

35) 김종덕,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호, 한국법학회, 2005, 38～40쪽; 현행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형으로 형기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20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은 물론이고 사면이나 감형에 의한 출소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자유형 가운데 최고의 형벌이며 사형폐지에 상응하는 대체형벌로 생명침해범 가운데 특히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중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형벌제도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형확정자 뿐 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교도관, 피해자, 사형확정자의 가족 등 관계되는 모든 이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는 상처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37] 국민 감정상 사형폐지의 수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38]

② 비판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이 완벽하게 사형을 대체하는 이상적인 형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망에 이를 때까지 수감시설에 수용된다는 것은 수형자에게는 허무감, 정신적 심리적 공황, 절망감 등에 빠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고,[39]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것은 재사회화의 형벌목적이 배제된 형벌이기에 사형제도와 별반의 차이가 없으며,[40]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41] 이것은 결국 사형보다 더 잔인하고 가혹하며 고통스러운 형벌일 수 있다.[42]

물론 생명을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에 비하여 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감성적인 수용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사형폐지를 우려하는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여타의 대체형벌보다 저항감이 덜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형의 존속으로부터 폐지로 급격히 변경할 수 없는 국가들이 선택지로 선호하는 과도기 단계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43] 그러나 국가에 의한 의도된 죽임은 회피되지만 자연사 혹은 병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

---

36)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42쪽
37) 이보영/박봉진,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촉구하며”, 법학연구 제25호, 한국법학회, 2007, 364쪽.
38)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140쪽
39) 김인선,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토론”, 411쪽;
40)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166쪽;
41)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소고”, 277쪽;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141쪽 이하; 이훈동, “전환기의 한국형법: 사형제도의 새로운 시작”, 「외법논집」 제2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5, 442쪽.
42) 손동권,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85쪽;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소고”, 277쪽;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142쪽.
43)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15쪽 이하;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92쪽; 이호중, “사형수의 인권과 처우의 방향”, 동아법학 제59호,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245쪽;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6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49쪽 이하;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232쪽.

다는 점에서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이고,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사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이를 도입한다면 사형에 가해졌던 인간존엄과 가치에 관련된 위헌성 비난은 절대적 종신형으로 옮겨갈 것이다. 오늘날 수형자를 일정한 기본권의 제약이 허용되는 특별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들도 엄연히 인간존엄과 가치의 주체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 절대적 종신형이 일생을 구금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격의 윤리성을 파괴하게 되어 인간존엄과 가치의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44]

이외에도 우리의 행형현실을 고려할 때 수용질서의 문란과 교정사고의 증가, 교정시설이나 행형예산의 부담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나) 상대적 종신형 도입론

절대적 종신형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위헌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아서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상대적 종신형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신형의 집행에서 가석방이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을 25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집행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45] 절대적 종신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46]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 현행 무기형과는 가석방 조건을 달리하는 상대적 종신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47] 사면과 감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되 수형자의 사회복귀는 형법상 가석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가석방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수형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48] 인간존엄성과 형벌목적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석방과 사면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49] 등이 논증되고 있으나 상대적 종신형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서와 무기징역형과의 양형적 측면에서의

---

44) 이상돈, “사형폐지론의 이론과 정책”,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심온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 박영사, 2006, 713-714쪽;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141쪽;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233쪽.

45) 이인영,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대체형으로서 종신형 도입에 관한 논의”, 한림법학 FORUM 제15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243～244쪽.

46)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고려법학, 제4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166～167쪽.

47) 신양균,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636쪽 이하.

48) 이승준, 앞의 논문, 145쪽.

49)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12권제3호, 중앙법학회, 2010, 278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차이를 준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작용하고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석방, 사면, 감형 또는 복권 등을 허용하는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한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종신형이 선고된 이후 수감시설에서 복역한 시간적 경과의 정도가 될 것이다.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은 범죄에 대한 형벌목적(응보와 예방)에 부합해야 하는데,[50] 우리나라 학자들은 15년,[51] 20년,[52] 20년 이상,[53] 25년,[54]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삼아 잔여수명이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기간[55] 등 그 기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다) 절충적 입장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이 모두 사형의 대체형벌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자를 모두 검토하여 절충하려는 견해도 나타난다. 즉, 과도적인 상황인 현 단계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되 그것은 한시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입법차원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거나,[56]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절대적 종신형을 과도기적으로 채택하되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형을 통한 교화, 사회복귀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종국적 사형폐지의 대안은 상대적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에 속한다.[57]

이외에 대체형벌을 일률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범죄의 행위태양과 책임의 정도, 사회적 비난의 강도, 형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이원체계로 정비하자는 견해도 있다.[58]

---

50)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22쪽; 이인영,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대체형으로서 종신형도입에 관한 논의”, 한림법학FORUM 제15권, 2004.12, 243쪽.
51) 제16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52)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소고”, 278쪽;
53) 주호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14쪽
54) 이인영, 앞의 논문, 243쪽
55) 이승준, 앞의 논문, 143쪽.
56) 유병철, “사형제도의 형사 사법적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60호, 한국교정학회, 2013, 175쪽;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권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5쪽 이하.
57) 조국, “사형폐지 소론”, 형사정책 제20권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317~318쪽.
58) 이덕인,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전망” 입법과 정책 제7권제2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5, 272쪽.

(라) 절대적 종신형 도입 반대론

사형의 대체형벌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되어 기본권 제한의 한계(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를 넘어서기 때문에 헌법가치에 위반되므로 그 도입에 반대하거나,[59]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대응책으로의 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수형자의 인권적 처우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의견도 나타난다.[60]

(마) 현행 무기징역형의 실무상 운용론

별도의 대체형벌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현행 무기징역형과 상대적 종신형과 비교할 때 운용현실에 있어서(즉 현행 형법상 유기자유형의 상한이 30년으로 되고, 무기징역형은 최장 50년으로 상향되어)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제도를 실무상 운용하자는 견해가 있다.[61]

라. 2005년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의 의견

지난 2005년, 법무부의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는 가석방이 불허 되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고, 위원회 구성원의 회의 결과, 전원 찬성의견으로 사형 존치를 전제로 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태도는 사형과 무기형과의 간극(대개 18년 내지 23년 복역)을 좁히기 위한 종신형 도입에 전원이 반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기형의 가석방 불허 기간에 대해서는 당시 10년으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위원회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렸으며 가석방 불허 기간을 법원이 선고하게 하는 등의 대안에 대하여도 다수 의견은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62]

---

59) 김종세,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17호, 한양법학회, 2005, 263～264쪽.

60) 이호중, "사형수의 인권과 처우의 방향", 동아법학 제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45쪽; 김창군, "특별형법의 속성과 문제점,", 법과정책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 연구소, 1999, 339쪽.

61) 주현경, 앞의 논문, 413쪽; 이경열, "종극 사법살인: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보론",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제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163～164쪽.

62) 연구총서 09-25-05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총칙 개정안: 죄수, 형벌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77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 2009년 형사법 개정 연구

2009년 법무부가 발간한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에서는 감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절대적 종신형제도 도입의 반대입장의 논거들이 제시되었다.[6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기간의 구금생활은 수형자에게 정신적 장애를 야기하고 인격의 퇴화, 유년단계로의 퇴고, 사회적응능력의 상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종신형의 집행은 '끝없는 공포의 연속(Schrecken ohne Ende)'이라는 점에서 '공포와 함께 끝(Ende mit Schrecken)'인 사형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197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종신형의 경우에도 가석방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독일 기본법에 상응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고,[64] 종신형 수형자도 다시금 자유를 부분적으로 향유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는 행형의 전제조건에 속하기 때문에 종신수형자에 대하여 특별사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치국가원칙은 종신형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과 이 경우 적용되어야 할 절차를 제정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1981년, 독일은 제19차 개정형법에서 제57a조(Aussetzung des Strafrestes bei lebenslaenger Freiheitsstrafe)를 신설하면서 종신형에 대하여도 가석방이 허용될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의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피해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지만 사형이 구형되더라도 무기징역이나 비교적 장기라고 할 수 있는 20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이 선고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족을 표시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측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에 들어선 현재의 상황에 극단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사형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수인하면서도 사형이 아니라면 또 다른 차선의 형벌이 존재해야 하고,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복역 후 가석방되는 형벌이 아니라야만 한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감성적 논리나 형이상학적인 이념의 차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사형의 대체형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65]

---

63) 법무부, 형사법개정 연구자료집, 2009, 444쪽; 손동권,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285면 각 참조.

64) BVerfG 45, 187.

65) 김은영, 공정식, "살인범죄 피해자들의 종결감과 사형선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찰학논총 제11권제3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151쪽 이하 참조

2. 종신형에 대한 국제적 동향

가. 서설

종신형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상황을 관찰해 보면, 개별국가에서의 심리적 효과와 사회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66] 크게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국가, 절대적 종신형 또는 상대적 종신형만 시행하고 있는 국가, 종신형 없이 유기의 징역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구별된다. 전 세계의 약 80여개 국가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혹은 사형을 존속하면서 상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을 모두 채용하거나 어느 하나를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약 30여개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 없이 유기의 징역형을 대체형벌로 두고 있다.

사형을 폐지한 유럽국가들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상대적 종신형으로 법정최고형을 대체하였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을 폐지하면서 당초에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마련해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이를 폐지한 후 상대적 종신형으로 일원화하였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는 유럽지역의 국가는 네덜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후 형량에 어떠한 변경도 가할 수 없는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사면이 허용되는데, 이를 통하여 스웨덴의 경우 15년에서 25년 사이의 유기징역으로, 네덜란드의 경우는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감형에 가까운 이와 같은 사면조치가 이루어지면 통상 형기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가석방도 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2009년 사형폐지와 동시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마련한 뉴멕시코 주를 제외한 대다수 주정부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와 무관하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형을 폐지한 유럽국가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현행 무기징역에 가까운 상대적 종신형을 취하고 있으며, 거의 예외 없이 가석방에 의한 사회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는 최소 복역기간은 벨기에의 경우 10년(재범에 있어서는 14년), 덴마크는 12년,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스)은 12년에서 30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15년, 헝가리(시효 없는 범죄의 경우 최장 30년)와 체코는 20년, 폴란드와 슬로베니아는 25년, 이탈리아는 26년 등이다.

그런데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등의 경우는 종신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페인은 1979년, 헌법개정과정에서 유기자유형만을 규정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는 사형폐

66) United Nations Office at Vienna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 Life Imprisonment, United Nations, 1994, pragraph.21～3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를 하면서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서 유기자유형의 상한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장기 20년(스페인은 재범의 경우 30년, 포르투갈은 재범의 경우 25년)이고, 노르웨이는 21년이며, 크로아티아의 경우 일반범죄의 유기자유형 장기는 15년이지만 중대범죄의 장기는 20년에서 40년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가운데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에 국한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유럽국가

(1) 일반적인 동향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종신형은 한 개인의 삶 전체에 대한 구금을 의미하지 않는다.[67] 왜냐하면 극소수의 예외를 상정하지 않는 한 유럽의 국가들은 저마다의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수형자가 가석방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68] 그러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종생(終生)의 기간을 수감시설에서 보내야만 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 종신형과 관련된 유럽국가들의 형사정책은 가장 가혹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인정사정없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의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69] 영국의 종신형은 사전에 최저구금기간(tariff)을 규정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위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시기를 결정한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의 위헌을 선언한 이래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1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종신형 자체를 폐지하고 유기징역을 최고형으로 법정한 국가들인 스페인은 30년, 포르투갈은 25년, 노르웨이는 21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경우는 40년을 구금시설에서 복역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유기징역만을 두고 있는 경우라도 극단적으로 병과주의를 취하면 10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종신형과 다르지 않은 형태가 된다. 또한 형의 집행 후 위험한 범죄자에게 보안구금의 부과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형벌정책은 결국 종신형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종신형을 '위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일생 동안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조치'라고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유럽에서 종신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70]

---

67) 유럽국가들의 종신형제도에 대해서는 Dirk van Zyl Smit, Catherine Appleton, Life Imprisonment and Human Rights, Bloomsbury Publishing, 2016 및 Kirstin Drenkhahn, Manuela Dudeck, Frieder Dünkel, Long-Term Imprisonment and Human Rights, Routledge, 2014을 주로 참조하였다.

68) 특히 이와 관련하여 Christopher Nuttall, Council of Europe,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Europe, Council of Europe, 2000, pp.109-120.

69) Jensen, Eric L., "Life Imprisonment as a Penal Policy," Riev. int. estud. vascos. 55, 1, 2010, p.116.

(2) 영국

(가) 종신형(Life Sentence)

① 필요적(Mandatory) 종신형

원래 영국에서 모살죄(Murder)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 유일했으나 1957년 제정된 Homicide Act에 의하여 모살행위가 일정한 중대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이외의 모살죄는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5년간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Murder(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ct가 196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을 당시 사형존치를 지지하는 측에서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자 종신형의 재량적 선택을 대신하여 필요적 종신형을 마련한 것이다.

② 재량적(Discretionary) 종신형

재량적 종신형은 모살죄 이외의 중대범죄(고살죄, 살인미수, 강간죄, 강도죄, 방화죄 등)에 대하여 공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선고된다.

③ 자동적(Automatic) 종신형

1997년에 도입된 자동적 종신형은 중대한 폭력 혹은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자동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고자 입안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영국에서 종신형 수형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나) 공공보호 종신구금형(Imprisonment for Public Protection: IPP)

전술한 자동적 종신형이 종신형 수형자의 양산을 불러온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이른바 공공보호 종신구금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종신형이라기보다 일종의 보안처분에 가까운 부정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제제의 부과대상은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지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최저구금기간(Tariff, Minimum term)은 종신형보다 짧으며 가석방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석방의 조건(License)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종신형과 구별된다.

이 유형의 형벌은 2005년, 24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2012년에 와서 6,02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최저 구금기간이 짧은 경미범죄자에게도 부과되자 교정시설 내의 수감인원이 과잉화되고 충분

---

70) Margaret E. Leigey, The Forgotten Men: Serving a Life without Parole Sentence, Rutgers University Press, 2015 참조.

한 개선 갱생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속출했기 때문에 시행 7년만인 2012년에 폐지되었다.[71]

(다) 모든 종신형, 부정기형에 대한 가석방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기까지의 최저 구금기간은 심리를 담당한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선고하고, 기간 경과 후의 가석방 허가 여부는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가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공에 대한 위험의 존재 여부라는 관점에서 결정한다. 2003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모살죄에 대하여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는 기간(Starting Point)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2명 이상의 모살죄에서 계획성, 유괴, 성적 또는 가학적 행위의 수반, 아동살해죄에서 납치, 성적 또는 가학적 행위의 수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교도관에 대한 살인죄,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교의를 추진하기 위한 살인죄 등에서 최저 구금기간이 30년(범죄시 18세 이상)인 경우는 화기, 폭발물을 사용한 살인죄, 이욕 목적의 살인죄(예를 들면, 강도살인죄), 형사사법을 방해하는 살인죄(예를 들면, 증인 살해), 성적 또는 가학적 행위를 수반하는 살인죄, 모살죄에 해당하지 않는 2명 이상에 대한 살인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한 살인죄 등에 부과되며, 25년(범죄시 18세 이상)의 경우는 나이프 등 흉기를 사용한 살인죄 등에 부과된다.[72]

(3) 프랑스

(가) 사형폐지법의 가결과 대체형벌의 도입

1981년 5월 25일, 대통령선거의 결과, 미테랑이 선출되고, 6월 14일과 21일의 국민의회 선거에서 사회당이 압승함에 따라 미테랑 대통령은 사형폐지론자인 로베르 바당테르(Robert Badinter)를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바당테르는 1981년 8월 29일, 의회에 '사형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1981년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의회에서 논의에 부쳐진 후 찬성 363 대 반대 117로 가결되었다. 9월 30일에는 상원(Sénat)의 표결이 이루어져 찬성 160 대 반대 126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 이후 "사형폐지에 관한 1981년 10월 9일의 법률 제1981-908호(Loi no. 1981-908 du 9 octobre 1981 portant abolition de la peine de mort)"로 정식 공포되었다.

법률의 요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결정적인 동시에 전반적인 형태로 사형

71) Great Britain. Parliament. House of Commons. Justice Committee, Towards Effective Sentencing: Report, Together with Formal Minutes, vol.1, The Stationery Office, 2008, pp.18.

72) Great Britain: Parliament: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HL 189, HC 1293 - Legislative Scrutiny: (1) Criminal Justice and Courts Bill and (2) Deregulation Bill, The Stationery Office, 2014., pp.10～12.

을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고(제1조), 둘째,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무기징역형 및 무기구금형을 취하는 것을 명기하였으며(제3조), 셋째, 군법 및 전시에 있어서도 사형의 폐지를 명문화하고 있다(제6조, 제7조).[73]

주목되는 점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프랑스의 종신형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전 생애를 구금당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종생이라고 하는 형기의 도중에 가석방에 의한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형벌을 의미하는데, 최저 구금기간은 20년이며, 기간의 경과 후 가석방의 신청이 가능하다.

(나) 종신형이 선고되는 범죄

프랑스에서 종신형은 가중살인죄, 반역죄, 테러행위, 마약조직의 중심인물 그리고 죽음을 초래하거나 고문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중죄 등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 매년 평균 25건의 종신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현재 약 550명이 종신형으로 수감되어 있으나 가중살인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종신형은 드물다. 종신형 수형자들은 가석방 대상이 되기 전까지 평균 18년에서 2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강간죄나 고문을 포함한 아동살해죄, 계획적인 공무원살해죄(2011년 이후), 그리고 죽음을 초래하는 테러의 경우, 법원은 최대 30년의 종신형 기간을 부과하거나 수형자가 가석방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법원이 수형자에게 남은 전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라고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재적응의 심각한 징조로 안전기간을 줄이거나 심각한 건강상 이유로 안전기간 전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4) 독일

(가) 사형폐지와 절대적 종신형 도입 후 상대적 종신형으로의 일원화

독일은 1949년 사형을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과도기적 대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약 30년 후인 1981년부터 현재까지 상대적 종신형으로 법정 최고형을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1949년 5월 24일, 독일기본법 제102조가 사형의 폐지(Die Todesstrafe ist abgeschaft)를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형법 제211조도 사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채택되었다.[74]

그러나 독일형법 제2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자 연방헌법재판소는 "모살에 대한 종

73) https://franceintheus.org/IMG/pdf/Death_penalty.pdf.

74) 이와 관련하여 특히 Yvonne Hötzel, Debatten um die Todesstra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1949 bis 1990, Walter de Gruyter, 2011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신형은 독일기본법의 정신에 합치되며, 종신형으로서의 형집행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정도의 심리적 신체적인 회복 불가능한 침해상태를 야기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종신형의 수형자도 다시금 자유를 부분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는 행형의 전제조건에 속하므로 특별사면의 가능성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종신형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과 이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절차를 제정법으로 규율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을 결정하였다.[75] 이 판결의 쟁점은 모든 수형자들이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형자들이 사회에 안전하다고 여겨진다면 궁극적으로 석방될 현실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수형자는 자신의 가석방에 동의해야 하며(§57a I Nr. 3 StGB), 반성의 표시나 자비를 호소하는 것은 그러한 가석방의 조건이 아니다.

이에 따라 1981년 제20차 형법개정을 통하여 상대적 종신형이 채택되는데, ① 15년을 복역한 경우,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특히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③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동의한 경우 등 모든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무기자유형의 남은 잔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나) 종신형이 선고되는 범죄

따라서 독일에서 종신형(lebenslange Freiheitsstrafe)이 선고되는 수형자는 일반적으로 15년을 복역한 후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 독일형법상 살인죄, 대량학살죄, 반인륜 범죄, 일부 전쟁범죄에 대해서 종신형은 의무적으로 선고되며, 침략전쟁 음모, 대역죄, 반역죄, 아동 학대치사, 강간치사, 강도치사, 방화치사, 갈취 목적의 약취유인치사, 인질납치치사, 핵폭발로 인한 치사, 폭발물 치사, 전리 방사선의 오남용으로 인한 치사, 강도치사를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 공격행위,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항공 또는 해상교통의 공격행위 등에 대해서도 종신형의 선고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종신형은 살인죄에 대하여 내려진다.[76]

(다) 가석방

법원이 가석방 신청을 거부할 경우 수감자는 2년 이하로 결정된 법원의 차단기간 후에 재심을

75) BVerfGE 45, 187

76) Ulrike Grasberger,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en der Höchststrafen in den USA u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odesstrafe und lebenslange Freiheitsstrafe, Forum-Verlag Godesberg, 1996, S.49～50.

청구할 수 있다(§57a IV StGB). 만일 법원이 '중한 범죄의 심각성'이 존재한다고 판결하면 가석방은 15년 이상 비특정기간 동안 연기된다(§57a StGB). 수형자가 신청한 첫 번째 가석방을 거부하면서 법원은 범죄의 극단적인 심각성과 더불어 수감된 수형자의 발전(혹은 그것의 부족)에 근거하여 적합성의 결여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수형자가 몇 년 더 복역해야 다시 조기석방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포함한다. 비록 평균적인 기간이 약 5년이고 더 긴 기간은 드물지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라) 예방구금

독일에서는 수형자가 사회에 명백하고 현재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실제 형량이 충족된 후에도 예방구금(Sicherungsverwahrung)을 부과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방구금은 형벌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러한 예방구금은 수형자가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사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2년마다 계속될 수 있다. 2004년 이후로 범죄자가 석방될 때 제기되는 위험이 그들의 구금기간 동안에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법원은 원래의 판결 이후에 예방구금을 명령할 수 있었다. 비록 그것의 비징벌적 상태와 잠재적 적용의 넓은 범위에도 불구하고 예방구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된다. 가석방된 수형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석방기간 동안 민간인인 '가석방 도우미'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며, 종신형의 경우 가석방기간은 5년이다.

(5) 중간요약

유럽국가들의 종신형은 해당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전통과 형사사법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수립된 범죄정책이 결합되어 있으며 중대범죄에 대한 범죄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유럽의 국가인 벨기에와 스웨덴의 종신형은 유럽에서도 가장 관대한 편이다. 이들 두 국가에서 종신형에 복역하는 사람들은 10년이 경과한 뒤에 가석방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와 핀란드는 종신형 수형자가 12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청문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종신형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10년을 복역하면 교도소 밖에서 일할 권리와 집에서 1년에 최대 45일을 보낼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지만 최소 26년을 복역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가석방이 허락되지 않으며, 처벌되는 사례가 극히 적지만 비협조적인 마피아 관련자나 테러리스트들을 평생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종신형 수형자들이 가석방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앞의

나라들보다 좀 더 긴 기간을 구금되어야 한다. 절대적 종신형이 금지된 독일에서 종신형에 복역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5년이 경과한 후에 가석방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대기기간은 중대범죄의 경우 18년, 테러리즘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26년으로 한층 더 늘어난다. 영국에서도 종신형 수형자는 구금 뒤 1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의 기회를 제공 받지만 인종적인 동기가 부여된 다수의 살인사건이나 특별히 사법당국을 겨냥한 살인사건의 경우 그 대기 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나고, 성폭행, 납치 또는 테러와 관련된 다수의 살인범죄에는 가석방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도 복역 15년 후 가석방 청문회를 보장하지만 국가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대부분의 종신형 수형자에게 가석방 청문회 전까지 18년의 복역을 요구하지만 아동살해죄의 경우 가석방 청문을 요청하려면 그 최소기간은 30년까지로 연장되며 최근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동유럽국가들에서는 종신형에 대한 최초의 가석방 청문이 열릴 때까지 서유럽국가들보다 더 오래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청문회 전까지 최소 20년의 복역을 요구하거나(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이보다 긴 25년의 복역을 요구하면서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고(폴란드), 범죄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20년에서 30년까지로 기간을 차등하여 설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극단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에 허용(헝가리)하기도 한다.

가장 가혹하지 않은 처벌형식의 끝에 위치한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최대 2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모든 수형자들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후에 주말을 자택에서 보낼 수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최대 25년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는 16년간 복역한 뒤 가석방 청문회를 보장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징역형의 일반적인 상한은 20년이지만 2007년, 최고 형량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법변화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국제적인 테러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신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스펙트럼의 극단적인 끝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등 세 나라가 있다. 아일랜드에서 살인이나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자동적으로 최소 40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네덜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에스토니아와 함께 가장 가혹한 형태의 종신형을 보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론적으로 왕실에 의한 사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종신형이 훨씬 더 흔해짐에 따라 사면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고, 에스토니아의 경우는 3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다. 미국

(1) 종신형제도의 개괄적 연혁

미국은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을 모두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연방정부와 33개주, 1개 특별구에서 절대적 종신형을, 14개주는 상대적 종신형을 법정하고 있는데, 주에 따라서는 절대적 종신형이라도 20년 내지 25년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상대적 종신형과 동등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형정책은 20년 내지 2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하더라도 종신형 수형자의 대다수가 고령화로 인하여 흉악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전무하게 될 것이라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하여 또 다른 사형의 형태라는 견해도 있으나,[77] 미국의 사형제도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988년에 사형법령을 부활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Without Parole: LWOP) 선고의 선택가능성을 포함하였다.[78] 1994년, 사형이 가능한 범죄목록을 늘리면서 LWOP 선고의 선택가능성은 더욱 늘어났다. 주정부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1974년 이후부터이다. 1972년, Furman사건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이 사형선고의 여부를 배심원에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조지아의 주법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결과가 종신형 도입에 있어 크게 작용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1976년까지 미국 전역에서는 사형집행이 일시 정지되었으며, 특히 종신형을 도입한 49개 주 가운데 21개 주는 1990년대에 종신형을 도입했는데 이 시기는 3회의 중죄 혹은 살인을 반복하면 일생을 구금시설에서 복역하며 사회로 되돌아 올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이른바 삼진아웃법(three strike out law)이 몇몇 주에서 도입되었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2) 주정부별 종신형제도의 운용 경향

종신형제도를 도입한 주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어떠한 종신형도 존재하지 않는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연방정부를 비롯한 애리조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등 6개주에서는 절대적 종신형만(Life Without Parole)을 채용하고 있으며, 24개의 주(앨라배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77) Robert Johnson, “Life Without Parole, America’s Other Death Penalty Notes on Life Under Sentence of Death by Incarceration,”The Prison Journal Volume 88 Number 2, 2008, pp.328 이하 참조.
78) 미국의 종신형 가운데 특히 절대적 종신형은 ‘Death-in-prison-sentence’라고 명명될 만큼 사형 이외의 가장 가혹한 형벌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harles J. Ogletree, Jr., Austin Sarat, Life without Parole: America's New Death Penalty?, NYU Press, 2012, pp.66 이하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는 상대적 종신형(Life With Parole)과 절대적 종신형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11개의 주(캘리포니아, 조지아, 캔자스, 켄터키, 뉴저지, 뉴욕, 미네소타, 미시시피, 로드아일랜드, 와이오밍, 텍사스)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상대적 종신형이 선고되고 있고, 상대적 종신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4개의 주(앨라배마, 인디애나,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절대적 종신형의 선고가 우위에 있는 2개의 주(미시건, 네브래스카), 상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이 비교적 균형 있게 선고되고 있는 3개의 주(아칸소, 매사추세츠, 웨스트버지니아)들이 있다.[79)]

(3) 여론조사와 사형폐지를 위한 대체형벌의 결정

미국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형벌형식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켄터키와 같이 사형, 절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주정부가 있고, 둘째,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네바다, 몬태나, 워싱턴과 같이 사형, 최저 10년까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주정부가 있으며, 셋째,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등 16개주에서는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 가운데에서 선택한다. 넷째, 애리조나, 콜로라도, 오하이오, 오리건 등과 같이 사형과 연령제한이 부가되어 있는 종신형 가운데 선택을 하고, 다섯째, 사형을 폐지한 주인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메인 등의 경우는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 가운데 선택하는 주정부가 있으며, 여섯째로는 사형을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만을 법정하고 있는 하와이,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미시건 등이 있다.

특히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지 않았던 오클라호마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의 여론조사에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사형폐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과반을 넘었다. 1991년 네브래스카주에서도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① 25년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② 40년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③ 절대적 종신형, ④ 절대적 종신형에 피해자유족에 대한 배상을 부가하는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①의 경우 사형폐지 찬성 31.1% 사형 지지 51.6% 모름 13.0%, ②의 경우 사형폐지 찬성 39.7% 사형 지지 46.4% 모름 10.7%, ③의 경우 사형폐지 찬성 46.0% 사형지지 42.9% 모름 8.9%, ④의 경우 사형폐지 찬성 64.2% 사형 지지 26.1% 모름 7.3%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

79) Ashley Nellis, Life Goes On: The Historic Rise In Life Sentence In America, The Sentencing Project, 2013, pp.25～30.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주의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과 감형이 허용되지 않으며 생명을 마칠 때까지 수감시설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며, 사우스타고타주에서는 감형위원회 또는 주지사에게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감형의 권한이 주어져 있으나 1974년 이래로 감형된 사례는 없었다. 특히 네브래스카 주는 1991년의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에 절대적 종신형에 손해배상을 부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주민투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부결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2010년, 여론조사기관인 Lake Research Partners에 의하여 1,5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살인죄에 대한 사형 이외의 형벌 선택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과반수를 넘어선 응답자(61%)들이 고무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응답자의 표본은 사형이 존재하는 주에 거주하는 유권자 1,144명과 사형이 폐지된 주에 거주하는 유권자 356명을 더한 것으로 응답하지 아니한 6%와 대체형벌이 아닌 사형을 고수하려는 응답자 33%를 제외하고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택한 경우는 13%,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을 선택한 경우는 9%에 그쳤으나 절대적 종신형에 손해배상을 부가하는 방식은 39%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80]

(4) 사례: 텍사스주의 절대적 종신형 도입

미국에서도 특히 사형집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텍사스주는 2005년 9월에 와서야 비로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는데, 이는 알래스카주를 제외하고 49개의 미국 주정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사형을 유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 이래로 도입 이전과 비교할 때 사형선고를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텍사스주에서의 사형선고 감소가 오직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영향을 미친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평가는 가능하다.[81]

미국의 경우 오판에 의하여 무고하게 사형이 선고된 후 집행된 사례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1973년 이후 미국 전역에서 142명이 오판에 의하여 사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텍사스주에서의 사례였다. 텍사스주에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기 1년 전인 2004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도에 75%가 찬성의 의견을 표시하였고 이 가운데 76%는 절대적 종신형이 마련되더라도 사형에 찬성한다는 보수적 응답을 하였으며,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에는 78%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70%가 그렇다고 하는 응답을 했

80) https://deathpenaltyinfo.org/documents/FactSheet.pdf.
81) https://txparolelaw.com/what-is-life-without-parole-in-texa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고 한다.

텍사스주의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는 민주당 소속의 주의회 상원의원의 활동이 주도적이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에디 루시오 주니어(Eddie Lucio Junior) 상원의원은 199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종신형 법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하려 했지만 실패하였고, 네 번째인 2005년, 간신히 그 법안은 가결될 수 있었다.[82] 실패로 돌아간 가결 이전의 법률안은 40년간을 복역조건으로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이었으나 가결된 법률안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종신형이었다. 루시오 의원은 종신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살인피해자의 유족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석방이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가장 위험한 범죄자가 두 번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유족들의 확신에 응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83] 텍사스주의 절대적 종신형법안은 네 번째 시도로 성립되었으나 실제로 법안을 제안했던 루시오 의원은 세 가지의 선택지, 즉 사형은 물론이고 가석방 있는 상대적 종신형도 존치하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려 하였다.

텍사스주 검찰은 최후까지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보안상 위험이 증대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방의 여타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하여 사형이 선고되는 텍사스 주는 분명히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과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심원에게는 적당한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2005년 법안에서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은 형벌목록에서 배제되었다. 그런데 검사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전 같으면 예를 들어 징역 20년이나 30년 정도가 선고되었을 피고인들에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과도하게 절대적 종신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잦아졌던 것이다. 텍사스주에서 2005년, 절대적 종심형을 도입할 당시에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절대적 종신형이 선고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한 범죄에도 절대적 종신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주의회에 의하여 거의 2년에 1회 정도로 법안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는 과정에서 절대적 종신형이 선고되는 대상범죄의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82) https://senate.texas.gov/press.php?id=27-20030203a; https://senate.texas.gov/press.php?-id=27-20050315b.
83) Brandon L. Garrett, End of Its Rope: How Killing the Death Penalty Can Revive Criminal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pp.167～168.

라. 일본

(1) 사형의 대체형벌로써 중무기형제도

미국과 함께 일본도 현재, 사형을 선고하면서 매년 일정한 사형의 집행을 이어 오고 있는 존치국가이지만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로 중무기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무기형은 무기형 가운데 형기 도중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수형자는 사망할 때까지 형사시설에 구금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용어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무기형 또는 절대적 종신형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84)]

일본에서의 무기형이란 형기에 기한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형기를 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 상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절대적 부정기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기의 끝이 없는, 즉 이 형벌을 선고 받은 수형자에게는 형기가 평생에 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생 동안을 구금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형이 가진 원래의 명목상 성질인 형법에 가석방이나 사면의 규정이 없으면 실제로도 평생 구금되지만 무기형과 같이 가석방의 규정이 있다면 실제로 평생 구금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현행 형법상 무기형제도는 반드시 수형자를 평생 구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무기형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85)]

(2) 중무기형제도 도입의 추진 경과

이와 관련하여 대체형벌의 창설을 주장하는 관점은 크게 사형을 폐지하기 전이라도 사형에는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없으나 현행 형벌제도 아래에서 무기형에는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형벌로서 사회복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형을 폐지한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2003년,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은 가석방 없는 중무기징역형 및 중무기금고형을 도입하는 동시에 사형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고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사형제도 조사회를 설치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중무기형의 창설 및 사형제도 조사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하였으나 그 절차는 중단되어 버렸다. 이후 2008년 4월, 사형폐지 추진 의원연맹은 다시 '중무기형의 창설 및 사형평결 전원일치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5월, 이 의원연맹과 사형 존속의 입장에서

84) 일본에서 사형을 대체할 형벌의 방식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第59回 人権擁護大会 シンポジウム 第３分科会 基調報告書, 死刑廃止と拘禁刑の改革を考える-寛容と共生の社会をめざして-, 日本弁護士連合会, 2016.10.6., 173頁 이하.

85) 이와 관련하여 Mai Sato, The Death Penalty in Japan: Will the Public Tolerate Aboliti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3, pp.158 이하 참조.

중무기형의 창설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초당파 의원연맹인 '양형제도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중무기형의 창설을 시도했으나 국회 다수파의 찬성과 지지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3) 제도의 장단점

중무기형은 재범의 방지와 중대범죄자를 형사시설에서 평생 격리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한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보증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차단된 수형자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어 인격의 붕괴가 우려되고, 이러한 사정 아래 수형자의 처우 역시 어렵게 된다는 단점도 공존한다. 이렇듯 중무기형의 도입을 둘러싸고 전술한 긍정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으나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사형과 마찬가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과 사형존치를 지지하는 일각에서도 사람을 평생 교정시설에 가두는 형벌은 사형보다 잔인하다는 의견이나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과다한 수용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에 의문을 표명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형법 제28조에 따르면 무기형에 처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복역하고, '개전의 상태가 있을 때'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가석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그칠 뿐이지 반드시 장래적인 가석방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석방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전의 상태가 있을 때'라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무성이 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 및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 제5관 허가기준'제28조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현행 제도상의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이 손쉽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4) 무기형제도의 실제 운용 상황에 대한 오인

일본에서 무기형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제도의 실제 운용 상황이 오인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오류에 바탕을 둔 논의가 중무기형의 도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무기형 수형자들에게 10여년간의 복역기간을 경과한 다음 가석방이 허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존재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점차 가석방의 운용이 강화되어 왔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가석방이 허가된 자는 최소한 20년이 넘는 기간을 형사시설에서 복역한 이후였다. 즉, 1980년대까지 가석방 허가자의 평균 복역기간은 15년~18년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20년, 23년으로 점증했다가 2004년 이후로는 25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2004년, 25년 10개월, 2005년, 27년 2개월, 2006년, 25년 1개월, 2007년, 31년 10개월, 2008년 28년 7개월, 2009년 30년 2개월, 2010년 35년 3개월, 2011년 35년 2개월, 2012년 31년 8개월, 2013년 31년 2개월, 2014년

31년 4개월 등으로 최근에 와서는 수감기간이 최소한 30년 이상 되어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다. 최근까지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못한 까닭에 무기형에 처해진 자라도 10여년 혹은 길어야 20년 정도의 복역 끝에 가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오류 있는 인식이 사회에 널리 자리 잡혔고, 이러한 오인에 근거하여 사형폐지와는 별개로 기존의 무기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무기형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무기형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중심으로 무기형의 가석방에 대한 곤란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타난다. 가령 교정시설에는 1천8여명을 넘는 무기형 수형자가 존재하지만 가석방은 연간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석방률은 0%대에 가깝고, 대부분의 재소자에게 가석방은 절망적이라든가, 2005년의 일본형법 개정에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20년에서부터 30년으로 상향된 덕분에 무기형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30년 이상의 복역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5)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의 추진

일본은 아직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되지 못한 상황에 있으며 대체형벌과 관련된 논의 역시 다양한 논점과 결합하여 이를 전개하는 시도가 진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치밀한 검증과 정확한 인식 아래 국민 여론과 현장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각적이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사회적으로 타당한 형벌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사형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 2016년 10월 7일, 사형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형벌제도 전체의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에서 사형제도와 그 대체형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일본에서 2020년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유엔 범죄방지 형사사법회의 이전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형의 선고 시에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제도 혹은 기존의 무기형이 가석방의 허용시기를 10년으로 하고 있는 요건을 가중하여 20년 또는 25년 등으로 미루는 중무기형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종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수감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본인의 갱생이 진척된 때에는 법원 등의 새로운 판단에 따라 현행의 '무기형으로의 감형'이나 사면 등의 적용에 의한 '형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설계도 검토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Ⅳ.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 가능성 검토

1. 절대적 종신형의 논거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형을 폐지하고 기존의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의 응보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형을 대체할 중한 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사회방위적 기능(무해화)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절대적 종신형 역시 잔혹한 형벌로서 인권에 반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형제도에 비하면 분명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생명권을 보호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궁극적으로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 사형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피해자 측의 피해감정을 회복시키고 정신적·경제적 보상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도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형폐지의 대체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또는 더 나아가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이나 감형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비판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가. 위헌성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가장 중대한 비판은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본질적 내용(헌법 제37조 제2항)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86] 그런데 절대적 종신형이 헌법 제10조에 규정

86) 주현경,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6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인권보장 사이의 적절한 비례관계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거나,[87]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88]

나. 형벌목적과의 관계

절대적 종신형은 재사회화나 사회복귀라는 특별예방의 목적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만일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형벌을 상대적 종신형으로 규정할 경우 형벌의 목적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응보감정은 국가형벌권을 불신할 소지가 크다. 소극적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범죄자에 대한 무해화 시도를 통한 사회방위의 관점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해당 범죄자를 사회로부터의 영구 퇴출한다는 의식이 사회 일반의 관념 속에 자리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일반예방의 적극적인 측면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의 엄중함과 처벌의 확실성, 공평한 법집행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사회 일반이 그동안 가져왔던 사형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사회화의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절대적 종신형이 특별예방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고 수형자를 개선시켜 사회에 복귀시킨다고 하는 행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시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89]

다. 교정처우상의 문제

이외에도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들을 실제로 감호하는 현장에서 행형성적이 아무리 양호해져도 혜택이 없으며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까닭에 갱생의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90]

2013, 397쪽; 신양균, 앞의 논문, 638쪽; 이승준, 앞의 논문, 141쪽.

87)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006, 58쪽.

88)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권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6쪽.

89) 박찬걸, 앞의 논문, 18쪽; 신양균, 앞의 논문, 638쪽; 주현경, 앞의 논문, 407쪽.

90) 박찬걸, 앞의 논문, 19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소결: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

사형이라는 극단의 형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보면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은 전술한 비판을 근거로 살필 때 또 다른 인권침해로 평가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수형자를 절망에 빠트리게 되어 또 다른 형태의 '사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형의 존치 또는 폐지들 둘러싸고 그 방향점을 '인권'에 두는 한 사형을 대체할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점에서 적어도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사형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상대적 종신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상대적 종신형의 본질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가석방, 사면, 감형 또는 복권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이후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복역한 시간적 경과의 정도이다. 학계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에 대하여 15년, 20년, 25년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점, 사형폐지에 따른 대체형벌은 현행 형법상 무기형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어느 정도 위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Ⅴ. 상대적 종신형 도입시 범죄피해자(유가족) 지원 등 보완방안

1. 서설

종래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의는 범죄인, 즉 사형확정자의 인권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형과 범죄피해자(유가족)의 관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사형을 포함한 형벌들이 역사적으로 국가의 공형벌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기는 했어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범죄피해자(유족)의 의사 또는 응보욕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관념이 깔려있기도 하다. 특히 살인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의 경우 피살자의 유가족은 국가형벌권이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

고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원은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유가족의 응보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법원의 사형선고만이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줄 수는 없으며, 심지어 살인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가족도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종래 사형대상범죄에 해당하는 피해자나 유가족의 안정감이나 응보욕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만족했던 피해자나 유가족이 이제는 사형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상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형을 폐지하되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일정하게 만족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보상방안이다.

상대적 종신형제도와 피해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을 연계시키는 방식은 이미 미국의 설문조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91년 네브래스카주에서 실시한 사형의 대체형벌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사형을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되 피해자유족에 대한 배상을 부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형폐지에 찬성한 응답자가 64.2% 사형존치를 지지한 응답자가 26.1%, '모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7.3%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상대적 종신형과 경제적 보상방안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에 관해서는 범죄자에게 배상을 위한 자력이 있는 경우와 자력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의 도입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으나 이를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강제로라도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그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로 이어져 민법 제750조 소정의 '권리침해'가 되고, 이는 곧 민사상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 그러나 민•형 분리사상이 비교적 강하게 지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구조와 문화 속에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오로지 민사법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문제는 범죄자가 범행 후 민사상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과거 용산 초등생 강간살인 사건[91]과 학교폭력 거액 배상 사건[92]

91) 용산 초등생 강간살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2006. 2.경 초등학생 피해자(여, 10세)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태워 유기한 후 2006. 4. 가해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을 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등 두 건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형 분리사상이 엄격하게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사상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범죄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검찰)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재산을 임시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이른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는 검사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줌으로써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장래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점에서 범죄인 재산의 일시적 처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는 외형상 몰수•추징 보전제도와 유사하다. 몰수•추징 보전도 장래에 행해질 몰수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말하기 때문이다. 범죄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와 몰수•추징 보전제도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와 현행법상의 몰수•추징 보전제도는 그 성격이나 내용면에서 매우 상이하다. 우선, 제도의 성질 면에서 보면, 몰수•추징 보전제도는 형벌의 한 종류인 몰수의 대상에 대한 몰수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한 추징을 미리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피의자의 재산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이 점에서 몰수•추징 보전제도는 국가형벌권 행사와 직결되어 있지만,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는 오로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의 관점이 전면에 등장한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몰수•추징 보전제도는 몰수대상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즉, 몰수의 대상은 당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이나 권리[93]이어야 하므로 범죄와 관련 없는 물건

가(1억 1,300만원)에 매각•도피해버렸다. 2006. 6. 20. 한국일보, 2008. 6. 30. 서울신문

92) 학교폭력 거액 배상 사건에서는 2007. 3.경 피해자(남, 9세)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 충격으로 뇌병변 1급 장애 및 반신마비 언어장애가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2010. 8.경 법원으로부터 4억3,000여만원의 배상명령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재산명시신청 등 가해자 부모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가해자가 2011. 5. 가해자 부모 소유 부동산(공시지가 1억 9,300만원)을 자신의 가족(누나) 명의로 변경하여 은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 간호에 전념하고 아버지는 실명으로 그가 운영하던 빵집은 폐업하여 배상금을 못 받으면 피해자의 치료는 물론 생계유지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012. 9. 6. 동아일보 보도

93) 대법원 1976.9.28. 선고 75도3607 판결

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94] 이에 반해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는 당해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당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이나 권리가 아닌 경우에도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가 범죄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가 민사상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를 도입할 경우 범죄인 재산 전부를 보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범죄인의 재산 중 특정된 재산만을 보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 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달려있다.

다만, 범죄인재산에 대하여 긴급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기관인 검사가 피해자를 대행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전절차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몰수•추징 보전절차가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자력이 있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그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재산을 도피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경제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범죄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자에게 피해자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범죄사건에서 자력을 갖춘 범죄자들은 많지 않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자나 그 유족을 위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피해자기금모델과 재사회화기금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95]

우선 피해자기금모델은 국가가 벌금액이나 과태료 중 일정비율을 특별재산으로 구성한 피해자기금을 설치하여 범죄자가 무자력이어서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사정이 되지 못할 때 피해자기금에서 직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범죄피해구조금과 유사하고,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피해자기금모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기금에서 피해를 회복을 받는 것이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회복받는 것보다 한층 더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자와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게

94) 대법원 1967.2.7. 선고 66오2 결정

95) 물론 이러한 기금모델 이외에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피해자의 유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피해자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지급액수가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보호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되어, 결국 피해자나 그 유족의 민사청구권만을 충족시키게 된다.

이에 반해 재사회화기금모델은 피해자기금의 재원을 벌금액이나 과태료 등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피해자기금모델과 동일하지만, 피해자나 그 유족이 피해자기금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기금이 범죄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을 통하여 범죄자가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도록 의도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한편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특별예방적 관점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나 그 유족의 피해회복 이익을 강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기금모델보다 한층 발전된 형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재사회화기금모델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대여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한 범죄자의 재사회화 이익 및 이에 기초한 가석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재사회화기금모델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Ⅵ. 맺음말

우리 사회에서 사형의 존폐에 관한 논의는 그 역사가 짧지않다. 사형이 주는 민감성 때문인지 사형의 존폐에 관한 결론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일관되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폐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학계에서는 사형폐지에 관하여 다양하고 많은 논의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사형을 폐지하되 그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다. 사형의 존폐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외국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면서 사형과 사형폐지를 바라보는 나름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첫째,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적어도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사형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사형을 폐지하되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일정하게 만족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으나 이를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강제로라도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국가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한 후 피의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줌으로써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국가가 피해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범죄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을 통하여 피해자유족 등에게 배상할 수 있는 재사회화기금모델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 신설의 검토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형의 폐지와 그 대안의 필요성

사형의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현재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남은 과제는 입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일입니다. 헌법이나 법률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 중 여론의 찬성을 받아 사형을 폐지한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정부와 국회의 규범적 결단을 통해 현 상태에서 대안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사형폐지의 입법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형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이덕인 교수님의 발표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논거와 같은 내용이긴 해도,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사형폐지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사형폐지를 위한 전제로서, 또는 그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에서 현행 형법의 사형 규정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과 달리 일부위헌 또는 위헌의 의견을 표시한 4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재판관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종대 재판관은 1) 사형에 버금가는 최고 형벌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폐지하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결함이 생길 수 있고, 2) 현행 형법의 무기징역형은 사형이 갖는 최고형으로서의 효력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사형 폐지의 조건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목영준 재판관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사형제도를 유지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기징역과는 달리 가석방 등에 의해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는 무기징역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야 하며, 절대적 종신형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1) 대안 없는 사형폐지보다는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형벌이 필요하며, 2) 절대적 종신형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단계적 대안이라는 우리 사회의 규범적•현실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의 폐지와 동시에, 또는 사형폐지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종신형 도입 후 사형폐지를 논하는 것은 전체적인 형벌제도가 더욱 가중되어 중벌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절대적 종신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는 그 또한 사형 못지않게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형벌로서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덕인 교수님 발표문에서 제시된 반론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 갖는 문제 중 가장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즉 1) 오판의 가능성과 2) 생명권을 침해하는 살인을 처벌하는 국가가 스스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문제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은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폐지의 단계적 대안으로 기능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사형보다는 덜 위헌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1] 위헌이냐 아니냐, 인간의 존엄에 반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헌법적 가치질서 내에서 가능할 것인데, 헌법적 가치질서의 기준을 최종적으로 설정하는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에 대해서도 합헌이라는 의견을 유지하는 현실[2]을 고려하면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성에 대한 염려는 독일 등 다른 국가의 헌법질서나 학문적 기준에 의한 평가일 것입니다. 나아가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다는 비판은 주관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보다 잔인한 형벌은 없다는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사회화의 형벌 목적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자유형인 절대적 종신형의 집행방법, 즉 행형의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형벌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타당합니다. 이덕인 교수님은 그 방법으로서 사면의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사면은 행형의 과정 중 하나라 할 수 없으므로, 발표문의 내용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토론자는 절대적 종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1) 이는 위에서 언급한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2) 위의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과 헌재 1996. 11. 28. 95헌바1 결정 등에서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한 행형으로 개방적 행형의 확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종신형 뿐만 아니라 무기징역 및 유기징역의 집행에서 누진제도를 현실적으로 시행하여 형 집행의 후반부에 개방적 행형을 시행한다면 종신형이 갖는 사회복귀의 절대적 불가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신형 수형자에게 가석방은 허락되지 않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행형의 성과 여부에 따라 주말의 정기적 귀휴 또는 더 나아가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되 사회로 출퇴근하는 형태의 작업 등이 가능하다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헌적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절대적 종신형과 무기징역 또는 상대적 종신형의 관계

이덕인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아쉬운 부분은 절대적 종신형을 비판하는 의견에 대한 반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셨으면서도 결론에서는 상대적 정기형을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주장하셨다는 점입니다.

학술적 논의에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서도 상대적 종신형은 무기징역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한다는 것은 대체형벌의 도입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의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제도의 운영 여하에 따라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가능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각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3]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사이에 질적·양적인 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무기징역형의 체계가 유기징역형의 체계와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4] 즉,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이 확대되면서 최장 50년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한데, 형을 선고받은 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중장년 이상의 피고인이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종신형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90% 이상의 형기를 이수해야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 가석방이 되는 경우와 3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이 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거나, 형법 제55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경우 무기징역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데, 유기징역형을 감경하면 12년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자는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는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할 경우 무기징역 및 유기징역과의 구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의 신설을 계기로 형벌체계의 재

3)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에서 다수의견의 내용입니다.
4)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에서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기징역형의 상한선 확대는 법정형에 징역형의 상한선이 없는 범죄와 상한선 있는 범죄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유발하였습니다. 즉, 법정형이 '10년 이하' 등으로 규정된 범죄는 상한선을 아무리 확대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중벌주의에 따라 확대된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은 무기징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낮춰져야 합니다.

또한 무기징역형은 절대적 종신형보다 낮은 단계의 형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부분의 무기징역형 수형자가 가석방을 받지 못한다면 절대적 종신형과의 구별이 애매해 집니다. 따라서 무기징역형 수형자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필요적으로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가석방의 허용의 비율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은 불가능하지만 사면과 감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형법이 사형에 대해서도 사면과 감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4. 사형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과 개헌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이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헌법 제110조 4항[5]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형폐지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헌법적 차원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사형폐지를 지체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법의 사형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법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는 법해석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한 법해석 또는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1)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군사재판에 관한 것이므로 군형법에 한해 사형을 존치하는 방법과, 2)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그 도입 배경이나 규정의 맥락을 고려할 때, 법률상 존재하는 사형의 선고를 억제하여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사형의 선고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불복절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일 뿐, 사형제도를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해석[6]에 따라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사형을 전면 폐지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후자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5)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의 반대의견 중 재판관 김희옥, 목영준의 의견입니다.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에 관한 토론문

이인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는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및 국민인식조사결과, 대체형벌제도의 논의와 도입가능성을 검토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발표자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적 자극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덕인 교수의 발표문의 결론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몇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형 법정형 범죄 수 및 대체형벌시의 대상범위 축소 검토

1) 사형 선고현황

지난 10년간 사형선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사형선고가 6건이었으며 2007년의 경우 1건도 없을 정도로 사형 선고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9년, 2010년 6건과 5건이었다가 2015년, 2016년에는 사형선고건수가 없다. 무기징역은 2007년 96명으로 최고점을 달성한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27명이었으나 이후 2014년 31명, 2015년 42명, 2016년 4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형이 선고된 범죄는 살인죄의 경우가 많으며, 2016년의 무기징역·무기금고형 선고 범죄는 전체 43명 중 20명이 살인, 13명이 절도·강도, 5명이 성폭력, 3명이 특별법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제1심 형사공판 선고건수	241,486	268,572	281,495	277,400	278,169	287,883	260,155	267,077	257,984	268,510
사형 선고	0	3	6	5	1	2	2	1	0	0
무기형	96	58	70	70	32	23	27	31	42	43

출처 : 2017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332면.

2) 사형 입법현황

현행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형법에서는 내란죄, 여적죄, 간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살인죄, 해상강도살인죄 등이며, 국가보안법 9개의 죄, 군형법 63개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형법 제93조)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법관의 재량으로 무기징역 등과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다.

3) 사형 대체형벌 도입시 상대적 종신형 부과 범위에 대한 검토

현행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사형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범죄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살인, 내란목적 살인, 특수강도살인, 특수강간살인 등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범죄유형에 한정되어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사형의 대체형벌인 종신형 도입이 단순히 법정형인 사형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범죄의 수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사형제도 자체의 합헌성을 전제로 사형이 허용되는 범죄유형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형벌조항의 위헌성 여부의 판단하여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1]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개별 범죄유형별로 죄질이나 행위방법의 위험성, 침해법익과 형벌목적의 균형성 등과 비례하여 상대적 종신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대해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 및 대체형벌시의 처우 문제

1) 사형, 무기징역 수형인원 구성비율

2017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유기징역형 수형자가 전체수형자 중 9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기징역형 수형자는 3.7%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0년 이상의 장기형은 2007년 581명(1.8%)에서 2011년 455명(1.5%)으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이후 증가하여 2016년 550명(1.7%)을 차지하고 있다. 무기징역은 2007년 1,105명(3.5%)에서 2016년 1,345명(3.7%)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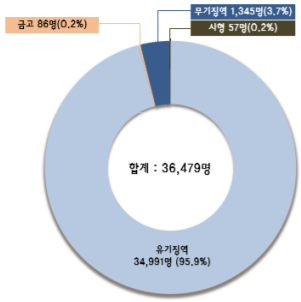

수형자 형명별 인원 구성비 (2016년)

1)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합헌,각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사형확정자의 미결구금 수용

2016년 말 기준으로 57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2006년 이후 자살자도 8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사형집행을 장기간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오히려 법적인 근거 없이 대다수의 사형확정자를 장기적인 수용상태에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종신형 집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확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2006년 이후 상당수의 자살자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자 장기간 집행대기상태에 있는 사형확정자의 수용처우에 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독거수용하였던 사형확정자를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법 제89조)[3]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데, 실상은 교정시설의 공간부족이나 자살 등의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혼거수용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서 사형확정자에 대한 특수한 처우를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범죄백서에 의하면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으며,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4] 그러나 실제 출역하는 인원도 적을 뿐 아니라 교도작업을 부과하여 근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5] 사형확정자를 일반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우를 하는 것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형확정자의 노령화, 자살 등의 심리적 압박 등의 문제발생이 일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구금의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들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3) 대체형벌 도입시의 수용처우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65조에서는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

2) 신양균, 사형확정자의 처우, 법조 통권 제670호, 2012, 152면.

3)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은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17 범죄백서, 444면.

5) 사형확정자 중에서 출역하는 인원은 사형확자중 출역인원은 24명이고, 이 가운데 1일 8시간의 집중 근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덕인, 양형으로서 사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2008, 200면.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8조에 의하면 "가능한 한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에는 별개의 시설 또는 시설내의 별개의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종신형 수형자들이 중경비처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일반수형자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일반수형자보다 징벌되는 비율이 종신형의 수형자에게 적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6)]

연쇄살인범 등의 사형을 부과할 범죄자들에게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종신형에 내재되어 있는 장기간의 구금이 가지는 효과가 그리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석방에 대한 시기나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 또는 상대적 종신형 수형자들이 그들의 시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리적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신형 수형자 집단내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시설과 처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처우의 개별화 원칙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맞춘 처우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의 대체형벌을 논의하고 도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종신형 수형자에게 어떠한 처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향후 준비되어야 할 행형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입법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

2004년의 유영철 사건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면서 "유씨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다만 유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감옥에서 7년을 복역한 후 사회에 반감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구형 의견 중 마지막 구절에서 범죄, 범죄자와 사회공동체의 연대의식을 새겨볼 수 있다. 사회의 공동체의 공존자로서 범죄자를 다루고 그들의 인격의 고유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형벌 중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7)] 2003년 5월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일환으로

6) Joseph F. Sheley, Criminology, 2000, p. 634.
7)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사형존치 응답이 44.9%, 사형폐지 응답은 49.5%이었지만 유영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의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유지가 66.3%, 종신형 대체가 30.9%로 나타났다.[8] 이는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판단은 국민여론에 기초하여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사형제도, 그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본질에 대해 숙고하였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제도를 존치 또는 폐지할 지를 국가와 입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도조사〉

구 분		비율(%)
일반국민설문조사(2003, 5)	유지	44.9
	폐지	49.5
	모르겠다	5.6
	합계	100.0
일반국민 설문조사(갤럽)(2003, 9)	유지	52.3
	폐지	40.1
	모르겠다	7.6
	합계	100.0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2003, 10)	유지	65.9
	폐지	34.1
	합계	100.0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조사(2004, 7)	유지	66.3
	종신형으로 대체	30.9
	합계	100.0

8) 이인영,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대체형으로서 종신형 도입에 관한 논의, 한림법학포럼 제15권, 2004, 225-229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에 관한 토론문

홍성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자유권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오랜 숙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특히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이 특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을 꾸준히 받았으나 미처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다. 그 중 양심적 병역거부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 다음 순서는 사형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의정서 가입을 권고 했고, 12월에는 폐지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운동 당시 사형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2010년에는 위헌의견이 4명까지 확대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9명 중 7명의 헌법재판관이 폐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6명의 재판관 5명(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이 인사청문회에서 폐지 입장을 밝혔고, 헌재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김기영, 이영진)이 폐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만약 사형제가 헌재에서 다뤄질 수 있다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형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1년 3월 10일 국회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그리고 그 11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1조 (사형):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의 법에 의해서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나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는 사형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임을 믿기에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인도청구는 거절될 수 있다.

또한 '협약 가입시 선언 및 유보사항'에는 "대한민국이 제11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 대한민

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사형집행을 유보한다는 보증이 없이는 유럽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국회 논의에서도 고려된 점이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사보고서"(2010.12)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0. 11)에는, 1) 사형을 명시한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고, 2) 사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의지/권한을 제할 수 있으며, 3) 유럽에서 인도된 범죄자는 사형집행을 면하고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인도되거나 국내에서 체포된 중범죄자에게만 사형이 집행된다면 불공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하면서, 유럽연합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다수의 범죄자 인도 불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토론했으며[1)]

---

1) 이 점은 국회 회의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29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제14차 (2010년 11월 29일)]

유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약이 국회에서 비준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은 범인이 유럽에 있는 나라로 도피를 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범죄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에, 집행도 가능한 반면에 유럽으로 도망가면 사형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는....**

외교통상부국제법률국장 이기철: 예,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9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제16차 (2010년 12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장 유기준: 셋째,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동의안 및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형불집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사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유럽 측과의 사법공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반드시 사형불집행을 보증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의 실현의 이익 및 우리나라와 유럽 협약 당사국 간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에의 가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9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10년 12월 7일)]

외교통상부제2차관 민동석: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국내법과의 상충 문제, 형평성 문제 등에서는 첫째로는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1997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미 16개 국가하고 같은 조건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선례가 있다는 것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범죄자가 유럽으로 도망가 가지고 사형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하고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럴 경우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범죄인을 인도받는다는 그 실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사형 불집행과 관련한 유보조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조약이 맺어지더라도 사안별로 보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법무부국제형사과장 권정훈: 예, 그렇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증을 제출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그러면 **제출 안 하면 유럽에서 인도 안 하겠네요?**

법무부국제형사과장 권정훈: **인도를 안 합니다.** 그건 지금 조약이 없어도 유럽에서는 인도를 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결국 비준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국내 범죄자와 유럽 이외 국가에서 인도한 범죄자에게만 사형을 집행한다면 형평성에 크게 벗어난 처사가 될 것이며, 결국 이 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해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못지 않게,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도 적극적인 토론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형제 폐지는 중범죄자들 무죄방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벌로 '대체'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대체형벌은 발표문에 잘 정리되어 있듯이, 가석방, 사면, 감형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할 것인가가 대립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상대적 종신형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사형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결국 인간존엄에 반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인데, 또다른 차원의 인간존엄의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수는 없다.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그 제도 자체의 폐지를 넘어 인간존엄의 이념을 구현하자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종신형이 의미가 있다면, 과도기적 필요악으로서,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형제 폐지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형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폐지 입법 또는 위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제안하는 것이 과연 정말 '불가피'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제시해야만 사형제 폐지가 가능할까? 사형제 폐지까지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절대적 종신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그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점이 충분히 확증될 때에만 필요악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과도기적 절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형제 존폐의 논쟁은 절대적 종신형이냐 상대적 종신형이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왔다. 절대적 종신형이 대체형벌로 제시된다고 해서 논쟁의 찬반 대립 구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 종신형이 필요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법무부국제형사과장 권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약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 범죄인도 인도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꾸로 사형제에 대한 대체형벌로서의 상대적 종신형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들도 적극 고민해 봐야 한다. 최소복역기간을 현재 무기징역의 20년보다 높게 상향 조정하거나, 가석방제도를 사법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운영하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화해의 노력과 피해자 의사 등을 가석방 심사에 반영한다던가, 사면권의 오남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기제들을 논의하여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제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하다면 대안은 상대적 종신형일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에 관한 토론문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1. 발제문에 관한 약평

가.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관한 약평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이하 조사결과)에서 일차적으로 확인한 것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하여 항상/아직 국민들 다수는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가 여전히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 그러나 금 번 조사결과만을 두고 '사형제도 폐지'가 국민정서상 어렵다고'만' 파악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예단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결과에서 사용된 문항 등이 사형제 전반에 관한 섬세한 논의지형과 세부쟁점이 충분히 살펴지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사형제 제도에 관한 논쟁지형을 (1) 대체형벌도입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와 (2) 사형제 현행유지라는 찬반구도로 이원화될 수 없는데 반하여, 이번 조사에 활용된 문항은 실질적으로 찬반 구도에 가깝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구진에서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을 했을 때 적극적인 반대파와 소극적인 반대파 등으로 나누어서 살피고자 한 점이 주는 시사점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 그러나 토론자의 졸견으로는 적어도 사형제 논의에 관한 국민의 여론지형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뤄진 실태조사라면 문항 설계 작업 단계에서부터 사형제 존폐에 관한 논쟁지형과 다양한 대안적 방법론과 담론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사회 쟁점과 이슈에 관해서 행해지고 있는 공론화 방식이 제기된 이유 중에 하나도 설문조사가 자칫 단순 찬반이슈로 논쟁지형을 좁히는 효과를 창출하는 점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칠게만 제안하더라도 사형제를 유지하되 현재 사형제를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 가짓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설문항을 추가했다면 그 결과는 또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설문조사는 사형제 단계적 축소라는 단순한 정책대안조차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형제 축소에 관한 고민이 설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셈입니다.

○ 동일한 맥락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10여년간 사형제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변화가 담겨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가 유럽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로 사형제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이미 몇 개의 사형제 규정이 계속해서 축소되어온 점, 문재인 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점, 19대 국회에서 유인태 의원의 사형제 폐지특별법안도 17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함께했었다는 점, 프란체스코 교황이 사형제 절대폐지로 입장을 천명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설문조사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문조사의 현실정합성을 높이는 맥락에서 반드시 이뤄졌어야 하는 사항이리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난 10여년간 사형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궤적들과 문제의식이 담겨지지 않은 채, 예전의 통상적인 설문조사 문항과 거의 질적으로 유사한 궤로 설문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우며 이후 연구 등에서는 이러한 점이 풍부하게 담겨지길 기대해봅니다.

나 <사형의 대체형벌제도에 대한 논의와 도입가능성의 검토>에 관한 평가

○ 〈사형의 대체형벌제도에 대한 논의와 도입가능성의 검토〉는 사형제 존폐 및 사형의 대체형벌제도에 대한 관하여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발제문에서 제기된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발제문에서 1)'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한 점 2) 사형제도의 법적인 폐지 및 대체형벌의 도입을 통한 사형 제도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점, 3)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사형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큰 이견이 없습니다.

○ 특히 대체형벌로서 이른바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 사이에서 헌법이론적으로는 후자가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 종신형을

제기하는 분들도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과 현실에 맞선 절충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순수하게 이론적 당위성을 놓고 토론할 대상이라고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마도 발제문은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어느 정도 위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긋 보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부분도 보완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 상대적 종신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대개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수감기간에 관해서 학계의 다수의견은 20년 정도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30년 정도로 확장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소 기간이 길기 때문에 30년을 원칙으로 하되 가석방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를 함께 고민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일보 전진을 바라며

○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체형벌 도입 논의가 동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만 과잉된다면 자칫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접근조차 가로막히는 왜곡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외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위해 필요한 수순에 관해서 몇 가지 첨언만 하고자 합니다.

○ 사형제 폐지에 관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치적 역사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국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리더쉽에 기댄 정치적 결단을 마냥 촉구하는 점에 대해서 토론자는 다소 유보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가능한 변화와 실천부터 촉구하는 단계적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형이 범죄형으로 규정된 범죄수를 줄이거나, 사형만 규정되어있는 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등을 포함시키는 형법 및 각종 특별형법 개정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오판이 가장 많았던 이른바 정치사범에 대한 사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에 대한 접근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군부 권위주의 독재

시대의 잔재 청산이라는 점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됩니다. 사법연감의 통계상으로도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형이 선고된 바가 없는 국가보안법의 사형조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 사형제가 다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결단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다음으로 사형집행과 관련해서 사형 판결확정시로부터 6월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65조의 경우도 법의 형해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라도 현실적으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후로 하여야 한다.'형태로의 개정 내지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형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이 개정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깝습니다. 실제 이는 사형제 폐지라기보다는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른 시기 안에 빠르게 결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에 국회에 비준을 권고한 UN「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제2선택의정서」의 경우에도 비준시 일부 유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접근으로 이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여기에서 비준 가능한 차원에서 사형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결어

비록 해외에서는 사형제 폐지가 정치적 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해서 이뤄졌지만 한국에서 그런 사례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172인의 의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주체별(청와대, 국회,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등)로 , 시기별•단계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서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사형제가 차근차근 역사의 기록으로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붙임

▸ 사형제 폐지
  – 각국의 29개 사례 연구

사형제 폐지

각국의 29개 사례 연구

제 2판

2018년 5월

The translation of this publication was produced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European Union under the 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ts contents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European Union.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목차

용어집 ····· 114
메시지 : 나비 필레이(Navi Pillay) ICDP 대표 ····· 115
서론 ····· 117
국가별 사례연구 ····· 120
- 아르헨티나 ····· 120
- 호주 ····· 121
- 베냉 ····· 122
- 캄보디아 ····· 125
- 콩고 공화국 ····· 127
- 피지 ····· 128
- 프랑스 ····· 129
- 독일 ····· 131
- 과테말라 ····· 133
- 기니 ····· 136
- 아이티 ····· 137
- 카자흐스탄 ····· 138
- 키르기스스탄 ····· 139
- 마다가스카르 ····· 140
- 멕시코 ····· 142
- 몽골 ····· 144
- 뉴질랜드 ····· 146
- 필리핀 ····· 147
- 포르투갈 ····· 149
- 르완다 ····· 150
- 세네갈 ····· 152
- 남아프리카 ····· 154
- 스페인 ····· 156
- 수리남 ····· 158
- 토고 ····· 159
- 터키 ····· 160
- 미국 ····· 163
  - 코네티컷 주 ····· 164
  - 메릴랜드 주 ····· 165
  - 뉴멕시코 주 ····· 167
- 우즈베키스탄 ····· 168

사형 폐지국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교훈 ····· 170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 173
참고자료 및 감사의 글 ····· 175

용어집

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U	아프리카 연합 African Union
CSO	시민 사회 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
ECHR	유럽 인권 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OWA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
HRC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ICCP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2OP (제 2 선택의정서)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CCPR의 제2선택의정서
ICDP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ICTR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NGO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UN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HRC	유엔 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
UNGA	유엔 총회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Resolution oe A/RES/ 62/149	사형집행 중단을 촉구하며 2007년 12월 18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UPR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개념 및 정의]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 :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법률상 사형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국제 엠네스티)

일반적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 :
군법 또는 전시 상황에서의 범죄와 같은 예외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법률상 사형을 허용하는 국가(국제 엠네스티)

사실상 사형 폐지국 :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사형 유지국 :
평시를 포함하여 항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하여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공식 사형집행 중단 :
사형의 집행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는 최고 권력 기관의 공개적 약속

메시지

나비 필레이(NAVI PILLAY)
ICDP 대표

나는 사형 폐지를 강력히 지지한다. 그것이 내가 ICDP에 참여하여 이러한 대의를 공유하고 자국과 전세계에서 사형 폐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이다. 2017년 10월부터 ICDP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쁨이요 영광이다.

ICDP는 전직 대통령, 총리, 정부 각료, 유엔 고위 인사, 미국 주지사, 판사, 국제 사법재판소장, 학자 등 21명의 고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은 세계 모든 지역을 대표하며 사형 폐지가 특정 지역, 특정 정치 체제, 종교, 문화 또는 전통이 원인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위원은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한다. 모든 위원들은 공공 부문과 인권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유명 인사로서 사형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하는 데에 깊은 열정을 갖고 있다. 위원들의 경험과 지식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고위 관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위원회는 사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 각 지역 19개 국가와 3개 옵서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ICDP 지원 그룹은 정회원 국가인 알제리, 아르헨티나,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몽골,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위스, 토고, 터키, 영국이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3개 국가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ICDP는 사형 폐지에 있어 정치적인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들의 개별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ICDP의 일원이 된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 전 몽골 대통령은 뛰어난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주었으며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몽골을 사형 폐지를 향해 이끌어 나갔다. 그보다 앞서 위원이 된 호베르 바뎅데흐(Robert Badinter),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빌 리처드슨(Bill Richardson), 이브라힘 나자르(Ibrahim Najjar),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등도 자신의 국가에서 사형 폐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세계 무대에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인 나는 유엔 사무부총장 이반 시모노비치(Ivan Simonovic) 교수와 함께 유엔에서 사형 폐지에 대한 담론을 주도했다. 마크 바론 보수이트(Marc Baron Bossuyt) 위원이 작성하여 유엔 총회에서 1989년 12월 15일 채택된 ICCPR의 제 2 선택의정서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한 세계 유일의 조약으로서 현재 85개 당사국과 2개 서명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세계적

인 사형 폐지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나는 남아공의 변호사,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이자 판사, 국제 형사재판소 판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으로 활동하며 사형 제도의 사용에 맞서 싸워 왔다. 지금까지 나는 비인간적인 끔찍한 범죄 다수를 마주하고 그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해도 사형은 답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어떠한 형태의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이다. 사형을 폐지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ICDP에서 2013년 발간한 보고서의 확장판인 본 보고서에 일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제 1판은 2012년 7월 뉴욕에서 유엔이 주최한 패널 토론회에서 나온 각국의 사형 폐지 양상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3년 2월 ICDP는 제네바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사형 폐지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26개 국가와 미국 3개 주의 사형 폐지 사례에 대해 검토한다. 그러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의 사형 폐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는 이러한 작업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형의 폐지를 촉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제 1판 보고서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벨라루스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사형 폐지를 위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 여러 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유용한 지침으로 인정 받고 있다.

ICDP 위원들은 2017년 10월 열린 회의를 통해 제 1판에서 언급된 여러 나라들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음에 주목하고 보다 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포함시켜 사형 제도에 관한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ICDP의 초대 대표인 페데리코 마요르(Federico Mayor)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본 보고서의 제 1판을 통해 건넨 메시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ICDP의 목표는 사형의 보편적인 폐지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다. 본 보고서는 궁극적인 목표인 사형 없는 세계를 촉진하고 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비 필레이(Navi Pillay) 판사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대표

서론

본 보고서는 26개 국가와 미국 3개 주의 사형 폐지를 향한 노력과 경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29개 사례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형 폐지를 위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에는 사형 폐지를 향한 걸음이 더디었지만 199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빨라졌다. 1945년 UN이 창설되었을 때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8개에 불과했다. 20년 후인 1965년에는 11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해, 14개 국가가 평시의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여 총 25개 국이 사형을 폐지했다. 1998년에는 약 60개 국가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이 범죄를 끝내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20년 후인 2018년 5월, 부르키나파소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107번째 국가가 되었다.

사형의 차별적 사용, 무고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자백 강요, 사형의 억제 효과 부족 등 국가에 의한 살해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침해한다고 인식하는 나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체제, 종교, 문화 또는 전통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형 폐지를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UN에 따르면 약 160개 국가에서 사형을 폐지했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23개 국가에서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사형 폐지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이 세계인권선언 제 3조에 명시된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형을 폐지한 국가 중 일부에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여러 나라들이 사형 폐지를 달성하는 데 채택한 서로 다른 방법들을 보여준다.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아이티의 뒤발리에 체제 종결, 독일의 나치 체제 종결, 르완다 인종 학살의 영향,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막대한 인권 침해에 이은 종전과 평화 협정 등 일부 국가에서 사형의 폐지는 억압적인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터키는 계엄을 종식시키거나 법령에서 군사재판을 제외함으로써 사형 폐지를 달성했다.

사형 폐지에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형 폐지에 반대하는 이러한 리더십은 정치 지도자, 국회, 판사, 종교 인사, 시민 사회의 개인으로부터 올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은 국가적 반대를 극복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몽골, 필리핀, 세네갈, 토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가 그러했으며, 미국에서는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멕시코 주지사의 리더십이 사형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도

자들의 개인적 경험도 이에 일조한다. 예를 들어 남아공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이 직접 사형의 가능성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프랑스, 카자흐스탄, 멕시코, 몽골,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이 사면권을 사용하거나 사형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한 조치들은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한 사형 폐지를 향한 초석이 되었다. 국회의원 등 다른 정치 지도자들 또한 여론의 방향이 사형 유지를 향하고 있을 때에도 사형 폐지를 위한 행동을 주도했다.

헌법적 사형 폐지는 확실한 폐지를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된다. 캄보디아,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콩고 공화국, 터키 등의 국가들은 헌법 개정에 의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생명권 관련 조항을 개정한 후 형법 및 기타 법률의 후속 개정으로 이어졌다. 피지, 프랑스, 멕시코, 수리남 등의 국가들은 헌법을 통한 사형 폐지를 실현하기 전 법제 개혁을 먼저 실시했다.

최근에는 초기 조치로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약속을 선택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몽골과 베냉은 국내법에서 사형을 폐지하기 전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사형 폐지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남아공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형 폐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사형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저열한 형태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과테말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과 2017년 판결을 통해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게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사형 제도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개별 주들이 사형 폐지를 위한 조치들을 밟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19개 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호주에서는 개별 주들에 의해 폐지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연방 법률을 통해 각 주별로 확립한 폐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했다.

아르헨티나, 피지, 기니,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등과 같은 일부 국가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과 과테말라의 현 상황도 마찬가지다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기 위하여 군사재판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우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많은 국가에서 전문인 조직, 특히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 사법 조직들이 사형 폐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가 인권 기관 또한 마찬가지다. 미주, 필리핀, 남아프리카 등에서는 종교 기관들이 사형 폐지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국제적인 압박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엔 총회와 UNHRC에서 채택한 결의들은 사형 폐지를 위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UNHRC는 UPR을 통해 인권에 관한 국가별 검토에서 사형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인 사형 폐지를 요구하는 유럽 평의회, 유럽연합, UN 및 개별 회원국 등의 권위있는 성명 또한 중요하며 설득력을 갖는다.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국제 기준의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사형에 관한 보호조치와 사형 부과에 대한 제한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적 인권 기구의 발전과 이에 따른 인권의 역할에 대한 법제 연구 또한 사형 폐지를 한층 촉진했다. ICCPR에는 생명권과 자유의 박탈, 공정한 재판의 보장에 대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가 사형제의 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ICCPR의 실행을 감시하는 HRC의 법제 연구는 조항의 이해와 존중을 담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HRC는 국가별 ICCPR 준수를 검토한 후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다.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의 제 2 선택의정서 또한 사형 폐지를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전이다.

지역의 인권 기준 또한 사형 폐지에 영향을 주었다. 미주 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의 25개 주는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사형의 재도입을 금지하는 미주 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비준했다. 유럽에서는 평시에 사형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 6 의정서를 46개 국가가 비준했으며, 유예 또는 특례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 폐지를 요구하는 협약 제 13 의정서는 44개 국가가 비준했다. 유럽평의회의 47개 회원국 모두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의 중단을 개시했다.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사형 폐지를 회원 가입 조건으로 삼고 있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f Human and People's Rights)는 1999년과 2008년, 2017년 세 차례 걸쳐 아프리카 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당사국이 사형 중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사형 유지국들은 법률상 사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이 사형을 선호한다는 생각 또는 사형의 억제 효과 등을 비롯한 그러한 주장들은 사형의 폐지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형이 억제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점과 사형의 자의적, 차별적 사용에 관한 상세하고 공정한 연구들은 몽골, 필리핀, 남아프리카,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사형의 폐지에 이바지했다.

따라서 사형 유지국들이 사형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를 가진 대중의 의견조차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고 언론에서 그러한 범죄를 보도하는 것에 반응하여 극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 사형에 관한 대중의 견해도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여론이 사형을 선호할 때조차 사형이 폐지되어 왔다는 것을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사형을 폐지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19개 주의 경우가 그러하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사형이 폐지된 후 대부분의 대중은 그러한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사형 폐지를 받아들이려는 의향을 보여주었다.

ICDP는 전세계 사형 폐지를 위하 노력하고 있다. 26개 국가와 미국 3개 주에 대한 29건의 사례 연구는 세계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제 1판과 마찬가지로, 본 보고서 또한 이러한 사례연구에서 얻은 경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보고서의 끝에는 ICDP와 위원에 대한 소개가 실려있다.

국가별 사례연구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사형 폐지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1916년이며 1921년에 이루어진 사형의 완전 폐지는 1970년대 군사정권이 사형을 재도입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984년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2008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가 이루어졌다. 1994년에는 헌법에 정치 범죄에 대한 사형 금지가 규정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921년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나 1950년과 1951년에 통과한 법률에서는 정치 관련 범죄인 간첩과 방해공작, 반군 지도자 재판을 위한 군사재판법 조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했다. 이러한 법률은 후안 페론(Juan Perón) 대통령의 첫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군사정권(1966-1973년)이 1970년 정치적 범죄에 대해, 1971년에는 형법상 사형을 재도입했다. 이러한 법률적 변화는 법학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라누세(Lanusse) 장군은 1972년 군형법을 제외한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게 되었다.

이사벨 마르티네즈 페론(Isabel Martínez de Perón)을 물러나게 만든 1976년 3월 24일의 군사 쿠데타 이후 소위 "전복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 폭력 범죄와 공공 시설물 공격에 대한 사형이 다시금 도입되었다. 16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든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이어진 군부 독재 기간 동안 재판에 의한 사형 선고는 내려진 적이 없으나 군사 정권은 대규모의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 고문, 강제 실종 등을 비롯한 인권에 대한 폭력을 자행했다.

1983년 12월, 적법하게 대통령이 된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이 아르헨티나의 법치를 되살렸다. 정부는 군사 정권의 억압적 정책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독재 정권 하에서 행해진 인권에 대한 만연한 폭력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알폰신 정부는 사형을 부활시킨 긴급 명령의 폐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 개혁을 시행했다. 1984년 8월 아르헨티나 의회는 일반적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법률 제 23077호를 통과시켰다.

1984년 3월, 아르헨티나는 한번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이를 "재도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미주 인권협약을 비준했다.

특별법 하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1951년 군사재판법이 여전히 발효 중

이며 군사 법원에서는 무장 분쟁 중, 또는 평시의 반역, 간첩, 반란, 폭동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군사재판법 제 759조는 전시 상황에서의 탈영에 대해 사형을 도입했고, 제 131조와 132조는 긴급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인과 군인 모두 약식 처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4년 도입된 법률로 인해 군사재판법의 범위가 축소되어 연방 항소 법원이 군사 법원의 모든 결정을 검토하는 의무적 중재가 도입되었다.

1994년에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헌법에 국제 인권 조약을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제 18조에서는 "정치적 사유의 사형[은] […] 영원히 폐지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8년 8월 군사재판법이 법률에 의해 폐기되어 군사 법원이 폐지되었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되었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아르헨티나는 사형 폐지를 위한 전세계적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A/RES/62/149)에 찬성표를 던졌고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채택된 사형에 관한 결의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완전한 폐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2008년 5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2OP를 비준했으며, 2008년 6월에는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 인권협약 의정서를 비준했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 유엔 결의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국가들의 공동 대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는 EU, 몽골과 함께 사형과 고문에 사용되는 물품의 거래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문 없는 무역을 위한 연대(Alliance for Torture-free Trade)를 결성했다. 이 연대는 2017년 9월 18일 출범했으며, 출범식에서 58개 국가가 정치적 선언을 채택했다.

아르헨티나는 ICDP 지원 그룹의 창설 회원국이다.

호주

호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탈출하는 도중에 간수를 쏜 로널드 라이언(Ronald Ryan)이 교수형을 당한 1967년 2월의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1984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호주의 브렌다 호지(Brenda Hodge)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1973년의 연방 사형폐지법은 1922년 퀸즐랜드주와 1968년 태즈매니아주가 이끈 사형 폐지 추세를 한층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1985년 뉴사우스웨일즈주가 호주의 모든 주 중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호주에서 사형 제도가 법률로 공식 도입된 것은 영국 식민지 시절의 일(1788년)이지만, 그 전에도 일부 원주민 집단에서 관습법적 사형이 존재했다. 영국 식민 통치 기간 중에는 양 절도, 위조, 강도, 살인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국가에 의한 사형

집행이 적용되었다. 1820년부터 1900년까지 1,500명 이상의 사람이 교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01년 호주 독립 이후 1967년 마지막 사형 집행까지 호주의 주들은 114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연방 설립 초기 20년 내에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1973년 연방 사형 폐지법에 따라 연방과 속령의 법률 하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사형이 폐지되었다. 당시 이미 사형을 폐지한 상태였던 주는 두 곳으로, 퀸즐랜드주는 1922년, 태즈매니아주는 1968년 각각 사형을 폐지했다. 이어 빅토리아주가 1975년, 남호주가 1976년, 서호주가 1984년 사형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1985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는데, 이곳에서도 살인죄에 대한 사형은 1955년 이미 폐지된 상태였다.

1990년 10월 2일, 호주는 사형 폐지를 위한 ICCPR 제 2 선택의정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에는 사형 폐지를 위한 전세계적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첫 번째 유엔 총회 결의에 찬성했고, 이어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모든 후속 결의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2010년 3월 11일, 호주 연방 의회는 형법 개정안(고문 금지와 사형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1973년 사형 폐지법을 개정한 것으로 연방 차원의 사형 금지를 모든 주와 속령으로 확대했으며 개별 주에서 사형을 재도입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호주는 해당 범죄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국가로 개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나 요청하는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근 호주인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해 해외에서 사형을 당한 사례는 호주 내에서 상당한 우려를 야기했다.

호주는 ICDP 지원 그룹의 옵서버 국가이다.

베냉

베냉 공화국(베냉)은 2012년 7월 5일 ICCPR 제 2 선택의정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아프리카에서 사형을 폐지한 16번째 국가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국가 법제에서 사형 관련 규정을 없애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알려진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 시기는 1987년이다.

1877년 서아프리카 식민지에 도입된 형법인 부베네법(Code Bouvenet)에 사형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베냉의 형사절차법은 1967년 발효되었으나, 형법은 베냉의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 부베네법은 악질적 살인(302조, 304조), 사망을 초래하지 아니한 강도(381조), 사망을 초래하지 아니한 방화(95조, 434조, 435조), 부패(182조), 재범(56조)

등 여러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2001년 베냉 정부는 최신 법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는 않고 있다.

1990년 발효되어 현재의 대통령제 민주 공화국을 이룬 헌법에는 제 15조, 40조, 114조, 117조, 147조 등 인권 보호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베냉의 민주적 재탄생의 핵심적인 초석이 되었다.

사형 폐지를 개시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자문기구인 국가 인권 자문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Advisory Board)가 마티외 케레쿠(Mathieu Kerekeu) 대통령의 동의와 시민 사회 조직 및 법무부의 인권 담당 조직인 인권 및 법제부의 지지를 얻어 2004년 설립되었다. 국가 인권 자문위원회는 2004년 2월 회의를 개최해 사형에 관한 사안들을 조사하고 베냉의 사형 폐지에 관한 논쟁을 펼쳤다.

베냉이 198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무장 강도를 포함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비판을 받아 왔다. 2004년 12월 1일 ICCPR의 시행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제 82차 회의(CCPR/CO/82/BEN)에서 베냉이 사형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제한하여야 하며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사형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사형을 징역으로 감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사형의 선고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2006년 2월에는 궐석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기까지 했다.

베냉의 사형 폐지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07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사형제의 사용의 세계적 중단에 관한 결의에 찬성한 일이었다. 2008년 제 1차 UPR에서 베냉은 폐지 절차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HRC/8/39, A/HRC/WG.6/2/BEN/1). 정부는 2008년 1990년 12월 11일 헌법의 검토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모리스 글레레 아한한조(Maurice Glèlè Ahanhanzo) 교수를 수장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 기술 위원회, 일명 아한한조 글레레 위원회를 설립했다(2008년 2월 18일 명령 제 N º 2008- 52호, 2008년 10월 22일 명령 제 N º 2008-597호). 특별 기술 위원회의 11명 구성원들이 2008년 12월 31일 내놓은 (발표는 2009년 2월 28일) 최종 보고서에서는 사형의 폐지를 권고했다.

2009년 11월에는 정부가 토마스 보니 야이(Thomas Boni Yayi) 대통령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사형의 헌법적 폐지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2009년 최소 5명 이상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2010년에는 최소 한 명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사형 문제에 관한 제 2차 북서아프리카 회의(Conference for North and West Africa on the Question of the Death Penalty in Africa)가 2010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베냉의 수도 코토누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산하 아프리카 사형 및 비사법적, 약

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실무그룹에 의해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는 당시 베냉 법무인권부 장관이던 빅토르 프루덴트 토파노우(Victor Prudent Topanou)를 포함한 세 명의 연사가 초청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사형 폐지를 위한 세부 전략을 규정한 코토노우 체계(Cotonou Framework)의 초안이 성공적으로 마련되었다.

2010년에는 베냉 헌법 개정이 지속되었으며 ICCPR 제 2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2011년 8월 18일, 국회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찬성 54표, 반대 5표, 기권 6표). 마투린 코피 나고(Mathurin Coffi Nago) 국회의장은 "베냉은 인간의 존엄을 증진하고 인권의 진보적 발전을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2012년 7월 5일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2012년 10월 5일 발효됨에 따라 베냉은 전세계에서 75번째, 아프리카에서 16번째로 ICCPR-2OP 당사국이 됨으로써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2012년 3월 새로운 형법이 채택되었다. 여전히 2개 조항에는 사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제 685조와 793조). 이어 2012년 8월 4일 베냉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DCC 12-153). 의회는 2012년 12월 17일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여기에서는 사형에 관해 위헌으로 간주된 형법 조항이 삭제되었다. 베냉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14일 새로운 형사절차법 제 2012-15호가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2017년 말 현재 의회는 국가 법제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법률을 아직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와 베냉 정부, 사형 반대 단체인 핸즈 오프 카인(Hands off Cain)이 주관한 사형에 관한 아프리카 대륙회의(African Continental Conference on the Death Penalty)가 2014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코토노우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형의 폐지를 촉진하는 코토노우 선언(Declaration of Cotonou)(2014)이 채택되었다.

2016년 5월 법무부 장관은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베냉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ICCPR-2OP 하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에 확언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노력이 "재판관에 의해, 또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Living in Limbo: Benin's last death row prisoners, AI Index: ACT50/4980/2017). 법무부에 따르면 "베냉 헌법재판소는 2016년의 판결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2017년 말 현재 "국회는 국가 법제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법률을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16년 3월, 토마스 보니 야이 대통령의 뒤를 이어 파트리스 탈론(Patrice Talon)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대통령은 아직 사형의 폐지와 국가 법제에서의 사형 폐지, 사형의 징역으로의 감형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베냉이 2017년 11월 UPR 평가에서 폐지 절차를 완수하고 법제에

서 사형을 최종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법을 도입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감형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지지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베냉은 유엔 총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전 세계적 사형 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다.2008년에 이어 2012년과 2014년,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2010년에는 결석을 통보했다. 베냉은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유엔 총회 초안의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2018년 2월 21일 베냉 정부는 사형 선고를 받은 14명 전원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실시했다. 이들은 18년 넘게 사형수로 지내고 있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형 폐지의 역사가 가장 긴 나라이다. ASEAN 국가 중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캄보디아와 필리핀뿐이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1981년 헌법이 1989년에 개정되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이 금지되었다. 이후 유엔 감독 하에서 1992년 통과된 경과 법률에 사형의 폐지가 실제적으로 포함되었으며 1991년 파리에서 국제적인 후원에 따라 합의에 도달한 캄푸치아(Kampuchea) 분쟁 해결을 바탕으로 한 1993년의 새로운 헌법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립되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백만 명 이상, 혹자의 추산으로는 2백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인들이 폴 포트(Pol Pot)의 민주 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정부에 의해 체포, 고문, 처형을 당하거나 교외 강제 이주 정책 하에서 아사했다.

폴 포트는 "크메르 루즈(Khmer Rouge)"로 알려진 캄푸치아 공산당을 이끌었다. 폴 포트 정부가 무너진 후 통과된 1979년의 훈령에서는 학살에 대한 사형이 규정되었으며 1980년 긴급명령 제 2호에서는 혁명에 대한 반역, 공공의 재산 절도, 살인, 강간을 포함한 범죄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학살 또는 반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도 새로운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정부에 정치적 충성을 맹세한 사람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았다.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하에서 최소 다섯 명이 학살과 반역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들 중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 포트를 포함한 세 명에게는 궐석재판에서 선고가 이루어졌다.

캄보디아에서 사형은 1989년 4월 헌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개정 헌법 제 35조는 폴 포트 체제, 뒤이은 훈 센(Hun Sen)의 캄푸치아 인민공화국과 민주 캄푸치아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 반대 세력 간의 싸움이 종식된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연립정부는 이후 캄보디아 민족정부(National Government of Cambodia)로 이름을 변경한다. 이에 반대하는 연합은 "크메르 루즈(당

시 민주 캄푸치아당으로 불림)"와 노로돔 시아누크(Norodom Sihanouk) 왕자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캄보디아를 위한 민족 연합 전선(National United 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 FUNCINPEC)으로 구성되었다.

국제적 압력과 지원 또한 사형 폐지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국제적 NGO들은 사형 폐지를 향한 노력으로 파리 협약과 새 헌법에 강력한 인권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예를 들어 국제 앰네스티는 1988년 월과 9월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사형의 사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국제 인권 기준의 존중이 사형 폐지를 포함한 정치적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 앰네스티는 담화에 참여한 3개 야당 세력에 대해서도 협상 초기 단계부터 이를 압박했는데, 반대 세력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노로돔 시하누크 왕자는 1988년 9월과 10월 캄보디아에서의 사형 종식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오랫동안 지속된 캄푸치아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1991년 마침내 정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1991년 10월 훈 센의 캄보디아 정부, 3개 야당 세력인 크메르 루즈, FUNCINPEC, 크메르 인민 민족 자유 전선(Khmer People's National Liberation Front)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기타 국가 13개 정부가 파리 평화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서는 제 15(2)조를 통해 캄보디아가 "캄보디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담보"하고 "관련 국제 인권 조치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의 부속서 5는 인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새로운 헌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원칙,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에 대한 헌법적 선포, 헌법 조항과 세계인권선언의 합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가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촉진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정전과 법 집행, 사법 절차를 감독하기 위해 유엔 캄보디아 잠정 통치기구(UN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가 설립되었다.

캄보디아 잠정 통치기구는 1992년 배치되었고 1992년 3월에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이 기구는 민법과 형법에 관한 법 조문 초안 작성을 지원했다. 1992년 9월 적법한 과도기 기구인 최고 국가 위원회(Supreme National Council)가 사법부와 형법에 관한 규정 및 경과 기간 중에 캄보디아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채택했다. 캄보디아 잠정 통치기구의 지원으로 작성된 이 과도기 법률의 제 67조에서는 "캄보디아에서는 사형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3년 9월 24일, 캄보디아는 파리 평화 협약에서 강조한 인권 조항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유엔의 법률 지원으로 작성된 헌법 제 32조는 "모든 크메르 시민은 생명, 개인적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사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인권 조항에서 "크메르 시민"이 아닌 자를 제외했

다는 점이 비판을 받았다. 2010년 12월에 새 형법이 발효될 때까지는 잠정 형법과 형사절차가 적용되었는데, 새 형법에도 사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캄보디아는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전세계적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으며, 이어서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모든 후속 결의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캄보디아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캄보디아는 2014년 UPR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고,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제 2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ICCPR의 두 가지 선택 의정서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콩고 공화국

콩고 공화국(브라자빌 콩고)은 2015년 11월 6일 새로운 헌법을 반포하면서 사형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1982년이다. 사형 선고 건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사형이 폐지될 때까지 살인 위주로 계속해서 선고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응게소(Nguesso)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이 콩고의 사형 폐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콩고 는 1982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형 집행 중단국이었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이후 1997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맡고 있는 사수-응게소(Sassou Nguesso)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형 폐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91년 법률 개정으로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콩고 공화국의 사형에 대한 태도는 2000년대 들어 변화했다. 2007년 8월 15일 콩고 독립 기념일을 기념하여 사형수 17명에 대해 대통령령에 의해 노역을 포함한 종신형으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유엔 총회에서 콩고는 사형 폐지를 위한 전세계적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고, 이어서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후속 결의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형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에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다.

콩고는 2009년과 2013년 UPR의 평가를 받았다. 두 차례 모두 정부가 사형 폐지를 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형 폐지 권고를 지지했으나 아직까지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 사회 조직은 사형 폐지를 위해 콩고 당국에 로비 활동을 펼쳤으며, 콩고 인권 감시기구(Observatoire Congolais des Droits de l'Homme)와 고문에 반대하는 기독교인 행동(Action des Chrétiens pour l'Abolition de la Torture)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응게소 대통령이 2015년 10월 주최하기로 한 회의와 관련하여 정부 관리들을 만났을 때 사형 폐지

라는 아이디어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 회의는 헌법 개정을 이유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개헌의 주된 목적은 사수-응게소 대통령의 2016년 재선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 헌법은 2015년 10월 25일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되었다. 헌법은 2015년 11월 6일 선포되었으며, 여기에 사형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피지

피지 공화국에서는 1979년 일반적 범죄에 대해, 2002년 반역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되었다. 2015년 2월 법률 개정으로 군사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면서 피지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피지가 1970년 독립하기 6년 전인 1964년이었다. 1964년 이후에는 모든 사형 선고가 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피지는 1970년 독립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경우처럼 피지의 사형 폐지 과정 또한 사형의 사용에 관한 점진적 제한 이후에 성취된 것이다. 1964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범죄가 점차적으로 제한되었고 1972년에는 악질적인 살인죄만 사형으로 처벌되었다.

1973년 법원이 살인에 대해 반드시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다 큰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해에 사형의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형을 향한 움직임의 초석이 된 해는 1979년으로, 피지는 그 해에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그러나 학살 등을 비롯한 특정 군사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유지되었다.

2000년 5월 쿠데타를 주도한 조지 스페이트(George Speight)에게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된 일로 사형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1] 그러나 그의 사형 선고는 정부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조지 스페이트의 사형이 집행된다면 정치적으로 불안이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법률은 사형 집행 절차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지 의회는 반역을 포함한 모든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전시 군법 하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유지했다. 형사명령(Crimes Decree)으로 형법에 남아 있던 마지막 사형 관련 조항이 사라지면서 반역, 외세의 군사 침공 선동, 학살을 포함한 죄에 대하여 사형이 폐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같은 죄에 대하여 군사법에는 사형 관련 조항이 13년 동안 유지되었다.

군사법의 사형 조항은 1955년 영국의 육군형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영국에서는 이미

1) 2000년 5월 조지 스페이트는 의회에 난입해 대통령과 35명의 국회의원을 56일 동안 납치했다.

오래 전에 폐지된 것이었다. 비록 적용된 적은 없었으나, 피지에는 이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10년과 2014년의 UPR 검토를 통해 사형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5년 2월 10일 의회는 아이야즈 사예드-카이윰(Aiyaz Sayed-Khaiyum) 법무장관이 제출한 군사법의 사형 조항 폐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찬성 29표, 반대 1표, 기권 9표, 결석 11표로 통과되었다. 피지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이 되었으며 군사법의 사형 조항은 무기징역으로 대체되었다.

피지는 2014년과 2016년 사형의 사용에 대한 보편적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 찬성했다. 그 전까지는 투표에서 기권했다.

프랑스

프랑스는 1981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이미 사형 폐지를 달성한 다른 13개 유럽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사형 폐지에는 오랜 공개 토론, 대통령의 사면, 정당간 공동 연구, 법정에서의 법적 조치 등이 뒤따랐으며, 프랑스 대중의 과반수가 사형에 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폐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미테랑(Mitterrand)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7년 사형 폐지는 헌법에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해는 1977년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도입된 프랑스 최초의 형법(1791년)은 참수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사형은 항상 기요틴(guillotine)에 의해 집행되었다. 1848년 발표되고 1853년 확정된 명령에 의해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다. 19세기에는 학계와 법학자, 정치인, 문인들 사이에서 사형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사형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사형수의 마지막 날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다.

마지막 공개 사형은 1939년 베르사이유에서 이루어졌다. 결함 있는 기요틴이 사용된 처형 사진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면서 사형 제도에 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부는 즉시 약식 사령을 제외한 공개 처형을 금지했다. 그때부터는 사형 집행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던 시기에는 특별 법원이 내린 사형 판결을 기요틴으로 집행하는 일이 종종 이루어졌으며,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높은 사형 집행률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1959년부터 1979년 사이에 일반적 범죄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51명 중 14명에 대해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고, 준군사조직인 비밀군사대(Organisation Armée Secrète) 구성원 두 명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었다. 프랑스의 문학과 영화계에서는 강력한 사형 폐지의 전통이 나타났다. 작가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1957년 발표한 책에서 기요틴에 대해 회고하는 글을

썼고, 아서 쾨슬러(Arthur Koestler) 역시 사형 폐지를 호소하는 글을 썼다. 이 시기에는 프랑스 영화도 사형의 비인간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대통령들은 사법부 및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면권을 보다 자주 행사했으며, 재판관 또한 사형 판결을 내리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사형에 찬성하는 여론이 굳어졌는데, 인구의 65%가 사형 유지에 찬성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던 시기인 1972년의 사형 집행은 국제적 비판을 초래했다. 그러나 1960년대의 비교적 낮은 사형 집행률과 사형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들이 밝힌 견해와 여론에 상반되는 조치들로 인해 사형에 대한 대중의 논쟁이 확대되었다.

1974년 대통령 후보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텡(Valéry Giscard d'Estaing)이 사형에 대한 '깊은 반감'을 표명했으나 이 사안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깊은 감정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더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는 세 차례의 사형 집행을 허용했다. 그가 사면 허용을 하지 않음에 따라 1976년 7월 언론에서 부정적인 비평을 내놓았고, 사형에 대한 대중의 논쟁이 다시 점화되었다.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은 사형 집행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여러 전문 조직들이 사형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1976년 치안판사 협회(Syndicat de la Magistrature)는 큰 차이로 사형 폐지에 찬성하는 표결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정당간 공동 연구 그룹을 조직했고, 형법 개정 위원회는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독교와 가톨릭 교회들 역시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법원에서도 사형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사이자 사회당 정치인인 로베르 바댕테(Robert Badinter)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여섯 차례나 사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을 납득시킴으로써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1981년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미테랑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당 정부에서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새로운 정부가 처음 취한 조치들 중 하나는 1981년 5월 세 건의 사형 선고에 대해 감형을 실시한 것과 9월 바댕테 법무장관을 통해 국회에 사형 폐지 법안을 제출하여 신속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중도우파 정당들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1981년 10월 9일, 하원(363대 117)과 상원(160대 26)의 투표를 통과한 법률 제 81-809호 1조에 따라 모든 민간 및 군사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되었다. 프랑스 국민의 60-65%가 사형에 찬성하고 있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형 반대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보장을 위한 마지막 조치로, 시락(Chirac)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007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형 폐지가 헌법에 명시되었다. 헌법 제 66-1조는 "누구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입장은 1986년 2월 평시 사형 폐지를 규정하는 유럽 인권 조약 제 6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한층 더 강조되었다.

2007년 10월에는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조약의 제 13 의정서에도 가입했다.

프랑스는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채택된 모든 후속 결의에도 찬성했다. 2007년 10월, 프랑스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한 ICCPR 제 2 선택의정서 당사국이 되었다.
프랑스는 ICDP 지원 그룹의 창설 구성원이다.

독일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두 나라로 갈라졌고(독일 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그 결과 각 영토에서 사형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서독은 1949년, 동독은 1990년 통일 전인 1987년에 각각 사형을 폐지했다. 통일 독일은 지금도 사형 폐지국이다.

1871년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가 이끄는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 19세기 독일에서는 1848년 3월 혁명을 이어 통일 독일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한 시도에서 프랑크푸르트 헌법 초안이 1849년 만들어졌고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1849년 3월 27일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한달 후인 1849년 4월 프레데릭 빌리암 4세(Frederick William IV)의 결정으로 의회가 해산된다.

해산되기 전인 1848년 12월 21일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독일 인민의 기본권에 관한 제국법을 채택했는데, 이 법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과 시민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은 권리에는 만인의 법 앞의 평등, 모든 신분제 특권의 폐지, 개인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즉, 언론, 표현, 집회, 직업, 이동의 자유), 사형의 폐지 등이 있었다. 이 제국법은 독일의 후속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독일 제국 시기(1871-1918년)에 사형은 주로 대역죄, 살인, 주권자 살해 또는 살해 시도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집행은 기요틴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치 정권이 자행한 국가적 폭력은 사형의 미래를 결정지었다. 나치는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사형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사형 적용이 가능한 범죄의 수가 증가했다. 알려지기로는 3만 명이 넘는, 수만의 사람들이 약식 판결 후에 기요틴에 의해 처형되었다. 1936년 기요틴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공식 사형 집행 수단이 되었다. 1942년부터는 교수형이 이루어졌다. 군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 총살형이 이루어졌다.

수용소와 학살의 잔학성은 독일 사회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고 국가의 폭력과 국가에 의한 처형을 용인하는 독일인의 포용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서독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46년의 교수형이다.

1949년 5월, "그룬트게제츠(Grundgesezt)"라 불리는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이 채택되었고,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되었다. 새로운 기본법 제 102조는 "사형은 폐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사형 폐지 발의를 한 것이 헌법 제정 회의에 참가한 극우 정당 대표였다는 점인데, 알려진 바로는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나치 간부가 처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이 발의는 역사적으로 사형 폐지에 찬성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사형 폐지를 요구한 바 있던 사민당의 지지를 얻었다. 사민당은 나치 체제에 의해 행해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중단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마침내 기독교민주연합이 사형 폐지를 지지하도록 설득시켰다.

기본법은 1949년 5월 23일 도입되었으며 바바리아주를 제외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모든 주에서 비준되었다. 연방의 각 주는 자체 법률을 갖고 있었고 이들 중 몇몇이 여전히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헌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사형이 완전히 폐지되고 기타의 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1951년 1월 20일 형법이 개정되어 모든 사형이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살인에 대해 사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국내의 압박이 있었고, 이듬해 사형을 재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수 차례 있었으나 헌법 개정에는 의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했고, 사형 유지 법안이 이 수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뒤를 이은 기민당 정부는 사형 문제를 놓고 갈라졌다. 아데나워(Adenauer) 수상조차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지지했으나, 사형을 재도입할 경우 기본법이 약화되어 독일의 안정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여 사형 재도입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59년 형법 개정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압도적 다수 표결로 사형 폐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위원회에서 작성해 1960년 의회에 제출된 형법 초안도 사형 폐지를 유지했다.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동독에서는 사형이 특히 정치범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사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에는 반역, 간첩, 살인, 방해 공작 등이 있었다. 동독은 나치 전범들을 열성적으로 기소했다.

1956년 이후에는 사형의 사용이 감소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의 소련이 탈스탈린화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4년 이후에도 강간 살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위주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968년 반포된 형법에도 사형의 적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5년 이후에는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형 선고는 체계적으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1년이며 같은 해 사형

의 적용 범위는 군사 범죄로 제한되었다. 동독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되었다.

1987년 정치국은 동독에서의 사형 폐지 고려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은 1987년 7월 14일 사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3일 후인 7월 17일에 당국은 사형 폐지 결정을 발표했다. 사형 폐지는 국가에 의한 진보의 상징으로, 또한 더 이상 폭력 범죄와 나치의 유물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제시되었다. 독일 민주공화국은 동유럽에서 최초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 사형 폐지는 서독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독일 통일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의 사형제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다. 동독과 서독 모두에서 사형이 폐지된 상태였다. 서독은 1949년, 동독은 1987년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이 헌법과 연방 수준에서 폐지되었으나, 일부 속령의 법률에는 비록 적용은 되지 않고 있었으나 사형에 대한 언급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서베를린 법률에는 1990년까지 사형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헤세주 헌법에는 2016년 3월 17일까지 사형이 사라지지 않았다.

유럽 인권 재판소 판결(즉, 소어링(Soering) 대 영국 및 독일, 1989년) 이후 독일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 함께 수감자가 사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독일은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고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모든 후속 결의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1992년 8월 독일은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한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독일 민주공화국은 해당 의정서를 1990년 8월에 이미 비준한 바 있었다.

독일은 ICDP 지원 그룹의 일원이다.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2017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반적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사형을 재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2000년 이후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의 1973년 형법은 부친 살해, 악질적 살인, 대통령 또는 부통령 암살에 대해 사형을 규정했다.

강간 살해의 경우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사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12세 미만이거나 60세를 넘는 경우로서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영구적인 정신적 충격을 입은 납치의 경우에도 사형이 적용 가능했다.

과테말라의 현행 헌법인 1985년 헌법은 여성, 60세 이상, 정치범 또는 관련 일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사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인도된 사람, 정황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또한 모든 항소 절차가 끝난 후에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회에 사형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이 사면 허가를 중단한 이후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대법원에게 부여된 것으로 알려진다.

과테말라는 높은 범죄율을 경험하고 있으며 교외 지역에서는 범죄자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헌법이 발효되기 전, 과테말라는 1978년 누구도 임의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미주 인권협약을 비준했다. 과테말라 의회는 1994년, 1995년과 1996년에 사형 적용의 범위를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지 아니한 납치, 강제 실종, 비사법적 처형으로 확대하는 훈령을 승인했다. 사형의 범위 확대는 미주 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이 사형의 확대가 미주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1983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과테말라에서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6년 9월 두 명의 수감자가 총살되면서 집행이 재개되었다. 두 수감자 모두 모든 항소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과테말라 대법원은 사형 집행의 예방과 중지를 요구한 미주 인권법원의 청원을 기각했다.

다음으로 이루어진 사형 집행은 약물 주사에 의한 최초의 사형 집행으로 1998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번에도 미주 인권법원의 집행 중단 청원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과테말라는 1996년 이루어진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강력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후 1996년 법률에 의해 집행 방식을 변경했다. 1996년과 1998년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사형 집행은 TV를 통해 방송되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사형을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0년 7월에 두 차례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TV로 방송되었다. 두 건 중 한 건은 사형수가 세 차례 치사량의 약물을 주입하고 18분 후 고통스러운 죽임을 맞이하면서 엉망이 되고 말았다.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 두 건이 마지막이다.

2000년에는 대통령에 의한 사면 청원의 고려를 위한 절차를 수립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미주 인권협약 하에서 사형 집행을 불법으로 만들 수 있었던 법률상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과테말라를 방문해 사형 폐지를 요청했다. 교황 방문 이후 알폰소 포르티요(Alfonso Portillo) 대통령은 사형의 사용을 사실상 중단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혔으며 의회에 사형 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안했으나 2002년 8월 기각되었다.

2003년 대법원이 의회에 사형 폐지안을 보냈으나 무시되었다. 이 사형 폐지안은 2005년 5월 3일 의회에 다시 제출되었으나 표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스카르 베르헤르(Oscar Berger) 대통령(2004-2007년)과 알바로 콜롬(Alvaro Colom) 대통령(2008-2011년)은 수 차례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에서 베르헤르 대통령은 사형의 억제 효과가 없음을 강조하며 사형 폐지를 약속했다.

2008년과 2010년 콜롬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사면 또는 사형의 감형 권한이 주어지는 국가에서 사형의 사용을 허용하는 의회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령 제 06-2008호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사면 허가 기준을 언급하거나 정의하지 않았고, 이는 미주 인권법원의 2005년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콜롬 대통령은 대통령이 타인의 생명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사형에 억제 효과가 없다는 점을 천명했다. 2010년 명령을 통해 미주 인권법원의 판결에 부합하는 대통령 사면 허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다.

2012년 1월 23일, 대법원 형사부는 국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수감자의 사건을 검토했고 53명의 과테말라 수감자의 사형을 50년 징역형으로 감형했으며, 한 명만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 형사부 의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이 충분한 변호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두 달 후인 2012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감형과 2000년 이후 과테말라에서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으나 집행 재개를 위해 도입된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UPR의 제 2차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던 2012년 10월, 과테말라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없으며 납치, 살인, 강간에 대해 내려진 사형 선고가 형사 변호 연구소의 사법 검토의 특별 적용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고 발표했다. 과테말라는 법률에 의한 폐지를 고려하고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2016년 3월 22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악질적 살인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필수적 사형 선고를 규정한 형법 제 132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24일 형법과 마약금지법에서 사형을 허용하는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조항들이 사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주 인권협약 제 4.2조에 따른 법률 엄수와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 두 법률 모두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가해자의 "위험성"을 포함시켰는데, 법원은 이를 법률 엄수의 원칙 위반으로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과테말라는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 폐지국이 되었으나 군사법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사형 집행 재개를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2016년 의회

에 두 가지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하나는 사형 집행 재개 촉진을, 다른 하나(7월에 제출된 법안 5100호)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후자는 의회 인권, 사법 개혁, 법률 및 헌법 위원회의 공동 승인을 받았다. 법안 5100호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과테말라는 사형의 사용에 관한 보편적 중단을 촉구하는 2008년 유엔 총회 결의 표결에는 기권했으나 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결의에는 찬성했다.

기니

2016년 7월 4일, 기니 의회는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개정 형법을 승인했고 알파 콩데(Alpha Condé) 대통령이 이를 2016년 10월 26일 공표했다. 2017년 6월 의회는 새로운 군사법을 승인했고 2017년 12월 발효되었다.

기니는 1958년 10월 2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했고, 아메드 세쿠 투레(Ahmed Sékou Touré)가 대통령이 되어 1984년 사망할 때까지 독재했다. 이 기간 동안 정치범 다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수많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1984년 쿠데타 이후에는 2001년에 사형 집행이 실시되었는데, 이 때 많은 사형수들이 총살되었다. 2002년부터 기니는 사형 집행 중단을 준수하기 시작했으나 사형 선고는 지속했다.

보고에 따르면 2008년에는 세 명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2011년에는 16명, 2012년에는 두 명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 예상 밖으로 2011년 7월 알파 콩데 대통령은 기니에 사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기니는 2010년 헌법을 채택했는데, 제 6조에서는 모든 인간이 "생명권과 신체적, 정신적 무결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기니에 대해 UPR의 제 1차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니는 사형 집행을 공식 중단하고 사형의 종국적 폐지를 고려하라는 권고를 거절했다.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UPR의 2차 검토에서도 기니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사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거절했다.

2016년 7월 4일, 의회는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형법은 알파 콩데 대통령에 의해 2016년 10월 26일 공포되어 해당 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새 형법에서는 사형이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무기징역으로 대체되었다. 당시 법무 담당 국무장관이자 현 법무장관인 셰이크 사코(Cheick Sako)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 기니가 비준한 국제 조약에 부합하는 새 형법의 통과를 위해 분투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들이 존재했다. 군사법에서는 반역, 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의 탈영, 항복, 선박 또는 항공기 파괴, 전쟁 또는 비상 사태에서의 반란 등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2017년 5월 31일 의회에서 새로운 군사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군사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되었는데, 이 법률은 2017년 12월 발효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기니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2017년 말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1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12월 기니는 사형의 사용에 대한 전 세계적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의 결의에 대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앞선 유엔 총회 결의 표결에서는 기권한 바 있다.

아이티

아이티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사법적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72년으로 알려져 있다.

1804년 프랑스 식민 통치가 끝난 이후 1853년 형법에는 사형제는 유지되었다.

1953년 형법 조항에는 형사 및 정치법에 대한 사형 적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57년부터 1971년까지 프랑수아 뒤발리에(Dr. François Duvalier) 대통령 치하에서는 약식 재판에 이어 사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으며 종종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1969년 반공산주의 특별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5년 정부령에 따라 대역죄를 제외한 정치적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되었다. 인권 유린을 자행한 장-클로드 뒤발리에(Jean-Claude Duvalier) 정권이 1986년 2월 무너진 이후에는 인권 침해 혐의로 전 정부 관료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1987년 사형 폐지를 규정한 새 헌법에 따라 당시의 모든 사형 선고에 대해 감형이 이루어졌다. 새 헌법은 앙리 남피(Henri Namphy) 대통령 정부에서 1987년 3월 29일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되었다. 헌법 제 20조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듬해 군사 쿠데타 이후 1987년 헌법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당시 대통령이던 레슬리 마니가(Leslie Manigat)가 1988년 7월 12일 사형의 폐지를 재확인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아이티는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고,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모든 후속 결의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아이티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와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 인권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아이티는 2016년 11월 ICCPR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는 UPR의 권고를 지지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3년 5월 12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12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사형 집행을 무기한 중단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후 2004년 1월 1일 사형의 대안으로 종신형이 도입되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은 두 가지 범주의 범죄, 즉 사망을 수반한 테러 행위와 전시의 중죄에 대해 예외적인 처벌로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에트 연합 시절 카자흐스탄 사회주의공화국은 1922년, 1926년, 1959년에 각각 서로 다른 형법을 승인했다. 마지막 형법에서는 국가에 대한 범죄, 살인 및 기타 범죄(주로 전시에 적용)를 포함한 25가지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했다. 그러나 1959년 형법 제 22조에서는 사형을 예외적 처벌로 정의했으며 향후 폐지를 계획하고 있었다.

1991년 12월 카자흐스탄의 독립 선언 이후에도 이 형법이 효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4년부터 1997년 사이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승인한 1994년 사법 개혁에 따른 진전이었다.

1995년 8월, 카자흐스탄은 헌법을 승인했고 새 형법이 1998년 1월 발효되어 평시에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수가 18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고 (계획적 살인, 악질적 살인, 학살) 전시의 반역죄와 8가지 군사 범죄가 추가되었다. 당시 형법은 18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1999년 대법원이 사형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결의를 발표했으며 이는 대안으로 종신형이 도입된 2004년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2004년 사형 집행 중단이 발효되기 전 2002년 22건, 2003년 초 최소 3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12월 대통령은 "사형의 완전한 폐지가 해결될 때까지" 사형 집행의 무기한 중단을 실시했다.

헌법과 형법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2002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미성년자와 여성, 65세 이상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는 두 건의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2007년 카자흐스탄은 헌법을 개정하여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을 제한했다. 사망을 초래한 테러 행위 및 전시에 이루어진 특히 중한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되었다.

UN과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일반적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이다. 그러나 OSCE와 국제 형사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는 카자흐스탄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11일 퇴행적 조치가 취해졌다. 형법이 개정되어 사형을 규정한 두 조항이 폐지된 반면 사형을 규정하는 세 조항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의 수는 18가지에서 19가지로 늘어났다. 이 형법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국제 사회에서 카자흐스탄은 2012년과 2014년, 2016년에 사형의 사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를 지지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ICDP 지원 그룹의 창설 회원국으로, 이는 사형의 종국적 폐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7년 말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테러 관련 혐의로 2016년 사형이 언도된 수감자 한 명이 있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2006년 헌법 개정과 뒤이은 2007년의 형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이 폐지된 이후 대통령령에 의해 1998년부터 이루어진 사형의 집행 중단이 실시되었고,

2002년의 정책과 2004년 형법 개정으로 사형 처벌 대상 범죄의 수가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해는 1998년이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키르기스스탄 헌법 제 18조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사형을 허용했다. 2000년 7월 발표된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사형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1997년 법안을 통해 경제범을 포함한 일부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되었으나 사망을 초래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유지되었다. 이 법안을 지지한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대통령은 1998년 2년 간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러한 집행 중단은 쿠르만벡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대통령이 2005년 무기한 집행 중단을 선언할 때가지 네 차례 연장되었다. 집행 중단 기간 동안 법원은 사형 선고를 계속했는데, 사형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형 집행 중단 이전에 이루어진 사형 선고의 숫자는 국가 기밀로 간주되며 친지들에게는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라는 국제 공동체와 시민 사회의 압박이 존재했다. EU는 계속해서 키르기스스탄에 사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고 OSCE 인권 실현 회의(Human Dimension Implementation Meetings)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루어졌다. 2002년 12월 키르기스스탄 인권법치국(Kyrgyz Bureau on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키르기스스탄 인권위원회(Kyrgyz Committee for Human Rights)를

비롯한 키르기스스탄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사형 집행 중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아카예프 대통령에게 사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2002년 키르기스스탄의 목표 중 하나가 사형 적용의 점진적 감소와 종국적 폐지임을 천명하는 훈령이 발표되었다. 다음 단계는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 적용 대상 범죄를 6가지에서 3가지로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 의회는 법무부와 헌법위원회가 작성한 헌법 개정안과 법안,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제 2 선택의정서 가입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5년 8월 취임한 바키예프 대통령은 취임 전 헌법에서 사형을 없애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듬해인 2006년 11월 바키예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모든 사람은 빼앗을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누구의 생명도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새로운 헌법에 서명했다. 2007년 6월 27일 바키예프 대통령은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사형 폐지 이후 대법원은 사형 선고를 받은 133명의 사건을 검토하여 자동적으로 선고를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사형을 금지하는 새로운 헌법은 이후 2010년 6월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되었다.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옴부즈만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사형 폐지를 굳건히 지지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안적 처벌을 제시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이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고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과 2016년의 모든 후속 결의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키르기스스탄은 2016년의 집행 중단에 관한 결의에 대해서는 앞선 결의처럼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지 않았다. 2010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은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한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독립 직전인 1958년이다. 사형 폐지는 2014년 12월 10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라조엘리나(Rajoelina) 대통령의 2012년 9월 ICCPR 제 2 선택의정서 가입, 정부 부처와 협력한 인권 단체와 국제 기구의 압박과 캠페인, 정치적 기조, 의회의 적극적 참여,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등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마다가스카르가 비록 집행은 하지 않았으나 독립 이후 55년 이상 사형을 유지한 이유 중 한 가지는 국가 기반시설의 취약성이었는데, 특히 남쪽 지역이 더욱 그러했다. 남부 교외 지역에서 정부는 독립 이후 오랫동안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해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사형은 국가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형 폐지 전에는 살인과 강도, 방화, 납치, 고문 등 사망을 초래하지 않은 기타 범죄에 대하여 사형으로 처벌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역, 간첩, 탈영, 방해 공작, 전시 반란 등 여러 가지 특수 및 군사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규정되었다.

한편 법원은 계속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형법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처벌인 노역이 따르는 종신형으로 체계적인 감형이 이루어졌다.

2005년 상원에서 법안이 발의되었고 2006년에는 법무부에서도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본회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7년 마다가스카르는 보편적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 찬성했다.

2009년 쿠데타와 잠정 대통령인 안드리 라조엘리나(Andry Rajoelina)의 의회 해산으로 마다가스카르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법무부를 비롯한 부처에서 정부가 사형을 폭넓게 지지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폐지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교외 지역의 높은 범죄율과 정치적 불안정이 주된 걸림돌이었다.

보고에 따르면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정부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 원조와 경제 협력 중단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제적 차원에서 사형 폐지를 고려할 의향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첫 번째 UPR이 시행되는 동안 대표단은 사형 집행의 공식 중단과 사형 폐지 권고에 대해 상반되는 의사를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대표단은 "*사형의 즉각 폐지를 위한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의 대다수와 국회의원 과반수가 사형 유지의 억제 효과가 여전히 불안에 맞서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다(A/HRC/14/13/Add.1). 대표단은 정부가 새 법안을 발의하기 전 사형 폐지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12월 11일 마다가스카르의 새 헌법이 발효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다가스카르는 처음으로 사형의 사용에 관한 세계적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다. 마다가스카르는 2007년 첫 번째 결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찬성표를 던졌고, 2010년 결의부터는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계속해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58명의 사형수가 존재했다.

2012년 9월 24일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서명하며 마다가스카르가 국제법에 따라 사형 집행을 삼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형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ICCPR-2OP는 2017년 비준되었다.

여러 인권 단체와 기구들이 사형 폐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예를 들어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사형 폐지법 초안 작

성을 위해 마다가스카르 법무부 및 국회의장과 긴밀히 협력했다.

2013년 선거 후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Hery Rajaonarimampianina)가 2014년 1월 라조엘리나의 뒤를 이어 쿠데타 이후 최초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14년 10월 1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맞아 하루 동안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인권 활동가, 법무장관, 40명이 넘는 국회의원, 종교 지도자와 스위스, 프랑스 정부 대표, 유럽연합 및 아프리카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평화, 연대, 조화, 인간의 존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다가스카르 문화의 중심인 "피하바나나(fihavanana)"라는 개념을 빌어 사법은 인간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행사의 백미는 사형의 법적 폐지를 목표로 한 로드맵인 안타나나리보 선언(Antananarivo Declaration)이었다. 많은 이들은 안타나나리보 선언은 하나의 이정표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사형 폐지 표결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행사 10일 후 사형 폐지를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었다. 동시에 마다가스카르는 UPR의 2차 평가를 받았으며, 사형을 폐지하고 2012년에 이미 서명한 바 있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2014년 12월 10일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사형을 폐지하고 노역이 따르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장 막스 라코토마모이(Jean Max Rakotomamojy)가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부는 사형 폐지 법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마다가스카르는 2015년 1월 사형 폐지법을 공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ICCPR 제 2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압박을 계속했다. 마다가스카르는 2017년 9월 21일 ICCPR-2OP를 비준했다.

멕시코

멕시코는 2005년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같은 해 멕시코는 헌법 개정으로 사형을 폐지했다. 일반적 범죄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37년 푸에블라주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은 군인으로 군사법에 따라 1961년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사형 폐지를 향한 움직임은 19세기 중남미의 강력한 사형 폐지 추세에서 기인한 것이다. 1857년 헌법은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구체적으로 금지했는데, 당시 언론은 사형에 대한 비판과 성토로 가득했다.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해 사형을 이용한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헌법은 오랫동안 일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을 유지했다. 1917년 통일 멕시코 정치 헌법 제 22조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금지했으나 살인과 기타 범죄, 일부 군사 범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지했다.

1871년 형법에 포함되었던 사형은 1930년 연방 형법과 후속 형법에서는 삭제되었다. 대부분의 멕시코 주에서는 19세기 말 사형을 폐지했다.

그러나 군사법에서는 여전히 특정 범죄에 대해 사형을 유지했으며 그러한 조항에 따라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대통령은 종종 헌법상의 권한을 사용해 사형을 장기 징역형으로 감형했다. 군사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내린 2003년 11월까지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었다.

1988년 4월에 한 대통령 후보자가 사형제 부활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대중과 가톨릭 사제, 정치 지도자, 상원의원과 저명한 변호사의 반대에 직면했고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않았다.

멕시코 국내외의 인권 단체들은 계속해서 멕시코 정부가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2005년은 사형 폐지에서 결정적인 해였다. 2005년 4월 21일 멕시코 형법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형을 허용하는 조항이 폐지되었다. 멕시코 하원은 군형법 개혁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사형을 30-60년의 징역으로 대체했다.

헌법 수준에서 사형 폐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멕시코 하원은 2005년 6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41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비센테 폭스(Vicente Fox) 대통령은 멕시코 헌법 제 14조와 22조를 변경하는 안에 서명했고 2005년 12월 9일 발효되었다. 다음날 폭스 대통령은 공보를 통해 헌법 개정이 "역사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멕시코는 사형이 인권 침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늘어나는 폭력과 납치에 맞서 사형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2008년 12월 북부 코아우일라주 주지사가 살인을 저지른 납치범에 대한 사형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멕시코 의회에 제출했다.

한 정당은 모든 살인 사건에서 사형을 허용할 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사형 부활을 위한 움직임은 인권 활동가, 로마가톨릭 교회, 일부 정치인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00년부터 정부는 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수백 명의 멕시코인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04년 미국이 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51명의 멕시코인들에게 영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주선하지 않음으로써 1963년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을 위반했다며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달라는 멕시코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멕시코는 사형 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에 범죄 용의자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1981년 멕시코는 미주 인권협약에 가입했는데, 이 협약은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이를 재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 9월 멕시코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와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 인권협약 의정서에 가입했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멕시코는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으며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모든 후속 결의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멕시코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ICDP 지원 그룹의 회원국이 되었다.

몽골

2010년 1월 당시 대통령이던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는 사형 폐지를 향한 세계적인 추세를 강조하며 사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감형을 실시하고 집행 중단을 선언했다. 몽골은 2012년 3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2017년 7월 법률상 사형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해는 2008년이다.

사형은 몽골 최초의 형법인 1926년 형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1961년 형법은 8가지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허용했고,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71명의 사람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이 중 118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소련의 붕괴는 1990년 민주 개혁의 시작을 알렸고, 다당제가 시작되었다. 1992년 공포된 새 헌법 제 16(1)조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2002년 제정된 새 형법은 59가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유지했으나 여성과 60세 이상의 남성,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했다. 새 헌법 공포 후 사형 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있었던 2008년까지는 주기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사형 집행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가족들에게 사전 통보 또는 사형 집행 후 어디에 매장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2009년 6월 당선된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에 대해 체계적인 감형을 개시했다.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한 모든 사형수의 형을 30년 징역형으로 감형한 2010년 1월 14일의 조치는 사형 폐지를 향한 중요한 계기였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사형 폐지 추세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형 폐지를 선택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야 한다.”

사형을 향한 움직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했다. 역사적인 이정표가 된 2010년 1월 의회 연설에서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공적 오류의 속성,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사형이 이용된 역사, 국제 사회의 보편적 사형 폐지 요구, 사형의 억제 효과 입증 실패 등 법적으로 사형에 반대해야 하는 8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실제 범인이 아닌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이 언도된 경우가 있다.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형태의 처벌에 대하여 사법의 실패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새로

운 정책의 신호로, 몽골은 이전까지는 반대해 왔던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해 2010년 12월 21일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몽골의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피해자 단체를 포함한 NGO 등은 사형에 대해 폭넓은 논쟁을 펼쳤다. 몽골 국가 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한 국제 앰네스티 몽골지부와 공동으로 사형의 사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일관되게 사형 폐지를 옹호했으며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이 2005년 몽골 방문 이후 내놓은 보고서와 유엔 인권 조약 기구의 사형 폐지 요구를 언급했다. 2011년 1월 페데리코 마요르 ICDP 대표는 국회 외교안보위원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몽골의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 비준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궁가 바야스갈란(Gungaa Bayasgalan) 법무내무부 장관은 2011년 3월 21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우리는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문화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일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2012년 10월 12일 대통령 법률정책자문은 사형을 규탄하며 다른 국가들이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입법부의 상당한 반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012년 1월 5일 몽골 의회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결정을 승인함으로써 사형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몽골은 2012년 3월 13일 유보조항 없이 제 2 선택의정서를 받아들였다.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2015년 6월 16일 유럽 의회 연설에서 "*사법의 기초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이며, 이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의 핵심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은 용인되지 않는다 (…) 사형은 효과적이지 않고 야만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몽골은 2015년 5월 초 UPR의 평가를 받았으며 (A/HRC/WG.6/22/L.4) 2015년 9월 사형의 법적 폐지를 완료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5년 12월 3일, 몽골 의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새로운 형법을 채택했다. 새 형법은 2017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사형을 언급하는 모든 조항이 삭제되었다. 몽골은 2010년 시작된 과정을 완성함으로써 사형 폐지를 달성한 105번째 국가가 되었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몽골은 사형 폐지를 위한 전세계적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A/RES/62/149)에 반대했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으나 2010년과 2012년, 2014년, 2016년의 사형 집행 중단 결의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몽골은 2012년 12월 20일, 2014년 12월 18일, 2016년 12월 19일 유엔 총회의 사형의 사용의 중단에 대한 결의에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다.

몽골은 2016년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는 국가 그룹을 공동으로 창설했다.

몽골은 아르헨티나, EU와 함께 사형과 고문에 사용되는 물품의 거래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문 없는 무역을 위한 연대에 가입했다. 이 연대는 2017년 9월 18일 출범했으며, 출범식에서 58개 국가가 정치적 선언을 채택했다.

몽골은 ICDP 지원 그룹의 창설 회원국이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961년 살인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1989년 사형폐지법 제정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당시까지 적용되던 반역과 일부 군사 범죄에 대한 사형까지 폐지되었다.

뉴질랜드에 성문법 형태의 사형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뉴질랜드가 영국령이 된 1840년이며, 첫 번째 사형 집행은 1842년 이루어졌다. 이후 1957까지 총 85건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모든 사형 집행은 교수형으로 시행되었으며 1862년까지는 공개적으로 시행되었다.

사형을 당한 85명 중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이었다. 유일한 여성인 미니 딘(Minnie Dean)은 1895년 아동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하미오라 페레(Hamiora Pere)만이 1869년 반역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은 아내 독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월터 제임스 볼튼(Walter James Bolton)으로, 1957년 2월 18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1935년 정권을 잡은 노동당은 사형에 반대하고 모든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1941년 살인에 대한 필수적 사형 선고가 노역을 포함한 종신형으로 변경되었다. 반역과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이 적용되었다.

1949년 정권을 잡은 국민당은 살인에 대해 사형을 부활시켰다. 1951년부터 1957년까지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8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해리 화이트랜드(Harry Whiteland)(1953년)와 에드워드 테 휘우(Edward Te Whiu)(1955년)의 사형 집행은 논란이 되었는데, 그들이 전후의 트라우마와 지적 장애, 발달 장애를 이유로 관용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1957년 재선된 노동당은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종신형으로 감형을 실시했으나 사형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사형 폐지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가 1956년 11월 설립되어 오클랜드와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두네딘에 사무소를 두었다.

1960년 선거에서 국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랄프 해넌(Ralph Hanan) 법무장관은 사형 반대자였던 반면 당시 부총리였던 잭 마셜(Jack Marshall)은 사형 유지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1961년 의회는 사형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 투표

를 실시했다. 국민당 소속 의원 10명이 노동당에 찬성하는 입장의 투표를 함으로써 사형 폐지 개정안은 41대 30으로 통과되었다. 반역에 대한 사형은 1989년 사형폐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뉴질랜드는 2007년 모든 사형 집행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한 9개 국가 중 하나였다. 이에 뉴질랜드는 사형의 사용 중단에 관한 제 3 위원회의 격년 결의를 위한 범지역 태스크포스의 창설국이 되었으며, 이 결의는 유엔 총회에서 격년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에 대한 사형 사용 종식과 같은 사안의 변호를 포함, 세계적인 사형 중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사형과 관련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1990년 2월 22일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뉴질랜드는 ICDP 지원 그룹의 옵서버 국가이다.

필리핀

필리핀은 2006년 6월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대통령과 필리핀 의회의 조치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이다. 1987년 헌법에서 사형이 폐지되었으나 1993년 12월에 재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2000년이다.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정권 축출 이후 새롭게 대통령이 된 라존 아퀴노(Corazon Aquino)는 민주주의를 공식으로 부활시켰다.

1987년 공포된 새 헌법은 사형이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사형을 폐지했다. 이러한 조치로 필리핀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어서 코라존 아퀴노 대통령은 1987년 사형의 대규모 감형을 실시했다. 모든 사형 선고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새 헌법 제 9장 III조에서는 "극악한 범죄와 관련된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의회가 사형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치솟는 범죄율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늘어가는 사형 부활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피델 라모스(Fidel Ramos) 대통령과 필리핀 의회는 1993년 12월 "공화국 법률 제 7659호"에 서명하여 1994년 1월 1일 발효함으로써 사형을 재도입했다. 이 법률에서는 비폭력 범죄를 포함한 46개 죄목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23개 범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2002년에는 52개 범죄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이 가능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사형 선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1999년 약 900명에게 사형이 언도되었고, 그 해에 사형 집행이 23년만에 재개되었다.

1997년 사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강력한 태스크포스가 조직되었다. 무료 법률 지원 그룹(Free Legal Assistance Group, FLAG), 사형 반대 연대(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CADP), 가톨릭 사제 협회(Catholic Bishops Conference), 국제 앰네스티가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가톨릭 교회는 비록 사형을 지지했으나 일부 재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조세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2000년이며, 그 해 12월 대통령은 사형 집행을 1년간 중단하고 하급 법원이 내린 모든 사형에 대해 감형을 실시했으며 의회에 사형 시행 방식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필리핀은 1987년 ICCPR 하의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의 청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ICCPR의 (제 1)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2000년 10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던 사건에서 두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통보의 검토를 마무리하기 전에 국가가 혐의가 있는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정서 하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Piandiong et al v The Philippines, Communication No. 869/1999, 19 October 2000, CCPR/C/70 /D/869/1999).

2001년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 대통령은 또 한 차례의 집행 중단을 발표했다. 2개월 후 연이은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를 포함해 다양한 곳에서 사형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으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01년 사형 지지자들이 사형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듬해인 2002년 상원과 하원 모두 사형을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NGO의 활동이 계속되었으며, FLAG은 사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대변했다.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사형 재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종교 단체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필리핀 복음주의 교회는 사형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필리핀 가톨릭 사제 협회는 사형 폐지를 재차 청원했다.

2006년 4월 15일 부활절을 맞아 아로요 대통령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1,200명이 넘는 사형수들에게 감형이 적용되었다. 대통령은 프랭클린 M. 드릴론(Franklin M. Drilon) 상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사형의 부과가 극악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주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형을 폐지" 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으며 법률 대리인을 구할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받는 소외계층이 많다는 점에서 사형 폐지로 인해 사형이 빈자를 죽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필리핀 의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2006년 6월 6일 사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16표, 반대 0표와 기권 1표, 하원에서 찬성 119표와 반대

20표로 통과되었다. 아로요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생명의 승리를 축하하며 법률로 사형을 폐지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 주신 의회에 감사한다. 그러나 틀림없이 사형은 모든 면에서 더욱 엄격하고 단호한 법률 집행으로 보완될 것이다.”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사형의 부과를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했고 2006년 6월 24일 효력이 발생되었다 (RA 9346).

2016년 6월 선거에서 당선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필리핀이 ‘마약 국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약 사범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형에 찬성한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사형의 재도입이 그의 선거 공약이나 첫 번째 국정연설에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에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 2016년 7월 집권당은 (강간, 방화, 마약 운반, 소량의 마약 소지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재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논쟁이 이어진 끝에 법안에 제시된 범죄 중 다수가 삭제되었고 법안은 마약 관련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 2017년 3월 7일 “마약 관련 극악 범죄에 대한 사형을 재도입하기 위한” 법안 제 4727호가 하원에서 찬성 217표, 반대 54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 이후 법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 상원에 제출되었다. 본 보고서 발간 시점에서 법안은 상원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 필리핀은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고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채택된 후속 결의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2016년 결의 표결에서는 처음으로 기권했다.

필리핀은 ICDP 지원 그룹의 창설 회원국이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유럽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1867년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법률상 폐지가 발표되기 전부터 사형의 사용을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1846년 또는 1849년으로 알려진다.

포르투갈에서는 사형이 점진적으로 폐지되었다. 폐지 절차는 여왕 마리아 2세(Maria II) 재위 중인 1852년에 시작되었다. 정치범에 대한 사형의 폐지를 위해 많은 법률상 변화가 수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루이스(Luis) 왕 재위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1867년과 1870년 포르투갈과 식민지에서 각각 일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다.

이후 1911년 군사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군사법이 도입되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1916년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1918년까지 전시 군사 범죄에 대해 사형이 재도입되었다.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74년 카네이션 혁명(Revolução dos Cravos)이 일어난 뒤 1976년 포르투갈 공화국 헌법이 승인되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이 영구히 폐지되었다. 헌법 제 24조는 "인간의 생명은 불가침이다. 사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 10월 포르투갈은 평시 사형 폐지를 규정한 유럽 인권협약 제 6 의정서에 가입했다.

2003년 10월에는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협약 제 13 의정서를 비준했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은 1990년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했다.

포르투갈은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전세계적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고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모든 후속 결의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포르투갈은 많은 유럽 국가의 본보기가 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포르투갈의 전철을 밟아 프랑스는 1981년, 스페인은 1995년, 영국은 1998년 사형을 폐지했다. 2017년 포르투갈의 사형 폐지 150주년을 기념해 정부, 대학, 지자체, 시민 사회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포르투갈 외무장관 아우구스토 산토스 실바(Augusto Santos Silva)는 기고문에서 두 가지 점을 강조했는데, 하나는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이며, 다른 하나는 포르투갈 헌법 제 24조와 25조[2]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 고문 또는 기타 일체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처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는 포르투갈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전세계의 사형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이야기했다. 첫째, 포르투갈은 사형 폐지국의 모범이다. 둘째, 유럽연합, 유엔 총회와 같은 다양한 국제 기구는 사형 폐지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셋째, 포르투갈은 인간 존중의 필수 요건을 전세계에 확산하기 위하여 포르투갈의 양자 관계에서 인권을 일관되게 현안으로 고려한다.

포르투갈은 ICDP 지원 그룹의 창설 회원국이 됨으로써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을 확증했다.

르완다

르완다는 2007년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주변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80만 명의 르완다인들이 살해 당한 1994년의 대학살 이후 이루어진 조치이다. 22명에 대해 집행된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8년 이루어졌다.

2) Augusto Santos Silva, "Portugal, protagonista da luta contra a pena de norte", Diário de Noticias, 1 July 2017. https://www.dn.pt/opiniao/opiniao-dn/convidados/interior/portugal-protagonista-da-luta-contra-a-pena-de-morte-8605272.html

르완다 형법에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 존재했으며 국가 안보 법원은 사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포함하여 정치적 성격을 띄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었다. 때때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120명의 사형수 중 13명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졌다. 1982년 쥐베날 하브자리마나(Juvenal Habyarimana) 대통령은 1981년 국가 안보 법원이 피고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내린 두 건의 사형 선고에 대해 감형을 실시했다. 그러나 2개월 후인 1982년 9월 정부는 43건의 사형을 집행하며 사형제 유지 의도를 밝혔는데, 그 중 대부분은 살인범이었다. 1987년 7월 하브자리마나 대통령은 모든 사형 확정 판결에 대해 종신형으로 감형을 실시했는데, 이는 537명의 수감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당시 대통령은 사형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형을 실시했다.

1994년의 학살 사건 이후 르완다 당국은 학살에 관련된 사람들을 국내 법원에서 기소하고자 했다. 1998년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22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것이 르완다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사법적 사형 집행이었으나, 사형 선고는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 국제 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르완다의 성공적인 사형 폐지 과정이 시작되었다. 1994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학살의 가해자와 국제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를 설립했다. 당시 안보리 의석을 갖고 있던 르완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처벌에서 제외되었다. 르완다 대표는 안보리에서 사형을 배제한 계획안이 "르완다의 국가적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ICTR 규정에서 사형을 제외하기로 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은 정부에 딜레마가 되었다. 만약 국내에서 재판을 받은 용의자에 사형이 선고되는 반면 해외에 있는 수천 명의 학살 용의자 중에서 주모자로 의심되는 자를 포함하여 ICTR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최고형으로 종신형을 받는다면 근본적인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살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용의자 중에서 해외로 도주한 자를 수용하고 있는 정부와 ICTR은 사형을 우려하여 수용 중인 르완다 용의자의 인도를 거절했다. 이들 정부와 ICTR은 사형 사건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재판의 공정성 부재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2007년 ICTR에서 르완다 법원으로 이송되는 용의자의 사형 집행을 금지하는 특별 이송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조치들이 빠르게 이어졌다.

2006년 10월 집권당 정치국에서 사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했으며 2007년 1월 19일 내각은 사형 폐지 계획을 승인했다. 타르시세 카루가마(Tharcisse Karugama) 법무장관은 오랜 공공의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르완다인들이 사형에 반대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하원이 2007년 6월 8일, 상원이 2007년 7월 25일 사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형 폐지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25일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르완다 공보에 게재함

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르완다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고 형법에서 사형을 삭제했다.

카가메 대통령은 학살의 역사가 사형 폐지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약 600명의 수감자의 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ICTR의 검사를 역임하고 당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이던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는 이러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악의 범죄를 겪고 사람들이 아직 정의에 목말라하는 국가가 어떤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인권 존중을 침해하고 인간의 불가침을 훼손하는 제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르완다는 행동으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 11월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에서 국가가 사형 집행 중단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사형에 관한 첫 번째 결의가 채택되었다. 2009년 9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중부, 동부, 남부 아프리카의 사형 폐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관한 제 1회 사형에 관한 지역 컨퍼런스(Regional Conference on the Death Penalty)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1년 10월 르완다는 사형 폐지에 관한 지역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뒤비비에(Duvivier) ICDP 위원이 참석했다.

2013년 존스턴 부싱게 (Johnston Busingye) 르완다 법무장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 5회 세계 사형 폐지 총회(World Congress on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에 참석해 르완다의 생명권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범죄에 서조차 죽음이 정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도달했고, 우리는 단 한 순간도 그러한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 사형 폐지는 화해의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었다.*"

르완다에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1993년 아루샤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사형의 폐지를 요구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 비준을 약속했다. 이러한 비준 약속은 2008년 12월 실행되었다.

르완다는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으며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의 후속 결의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르완다는 2016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세네갈

세네갈은 2004년 12월 10일 사형 폐지 법안이 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됨으로써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이 법안은 앞선 2004년 7월 정부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사회 조직의 토론과 압둘라예 와데 (Abdoulaye Wade) 대통령의 사형 폐지로의 입장 선회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세네갈은 1960년 독립 후 1965년과 1967년 사형을 집행했는데, 두 건 모두

정치 지도자 살인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세네갈 형법은 살인을 비롯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했으며 간첩과 반역 등에 대해서는 필수적 적용을 규정했다.

2001년 헌법 개정 논의에는 사형 폐지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폐지에 반대하고 이는 사형 폐지를 규정하는 법률 통과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한 압둘라예 와데 당시 대통령의 반대에 직면했다. 2001년 헌법 제 7조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며 불가침"이고 모두에게 생명, 자유, 안전의 권리가 있으며 "또한 신체의 무결성, 특히 신체적 절제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사형에 대한 예외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법전에는 사형 관련 규정이 유지되었다. 정부는 사형 폐지에 관하여 국제 앰네스티에 보낸 2001년 7월의 답변을 통해 "사회 모든 부분이 법률 변경 가능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2003년과 2004년 여러 건의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폐지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재개되었고,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한 법안이 2004년 의회에 제출되면서 논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당시 네 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었다.

세네갈은 무슬림 위주의 국가이다. 사형 폐지에 반대한 이들 중에는 사형 유지를 지지하고 억제 효과를 주장한 이슬람 협회 연대(Coalition of Islamic Associations)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르긴 디오프(Sergine Diop) 법무장관은 사형이 존재하는 국가들의 범죄율이 폐지국보다 낮지 않다고 말했다. 사형 폐지를 지지한 이들은 아프리카 인권 모임(African Encounter for Human Rights), 세네갈 인권위원회(Senegalese Committee for Human Rights) 등으로, 이들은 세네갈 전통 문화의 생명의 신성한 가치에 호소했다. 또한 세네갈 인권위원회는 사형 폐지가 사형을 폐지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와데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어 폐지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 것이다. 법안은 2004년 7월 15일 정부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으며 의회는 2004년 12월 10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세네갈 사회 또한 이를 대부분 지지했다.

세네갈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사형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회원국이다. 세네갈에서 일어난 논쟁은 다른 ECOWAS 회원국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들 중 6개 국가는 이미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되었으며, 다른 6개 국가인 베냉,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세네갈, 토고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또한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ECOWAS 회원국 중에서는 나이지리아만이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3)]

3) 본 보고서의 제 1판이 출간된 2013년 당시에는 ECOWAS 회원국 중 세네갈과 토고만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상태였다.

세네갈은 사형 폐지를 위한 전세계적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2007년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의 후속 결의에 대해서는 기권했고, 2016년 표결에도 불참했다. 세네갈은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2013년 10월 세네갈에 대해 UPR의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 국가에서 ICCPR-2OP (A/HRC/25/4) 비준을 권고했다. 세네갈은 부속서를 통해 권고를 거절하고 세네갈의 "사형에 반대하는 심층적이고 분명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A/HRC/25/4/Add.1).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는 1995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1995년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1997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해는 1991년이다.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시대에는 흑인을 대상으로 사형이 차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억압적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한 기념비적 결정에서 사형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의 금지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남아프리카는 1995년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는 거의 전적으로 백인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이 아프리카 흑인을 차별하여 백인 피고에 비해 무거운 선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흑인 피고인은 거의 항상 가난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 사형은 형사범은 물론 정치범에게도 적용되었다. 정치범의 경우 테러리스트법, 치안법, "방해공작법"의 적용을 받았다. 테러리스트법과 방해공작법은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두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이용되었고, 국제 앰네스티는 1979년 보고를 통해 남아프리카가 세계에서 사법적 처형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 1978년부터 1987년 사이 1,593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매년 사형 집행 건수는 100건을 넘지 않았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가 1964년, 1982년, 1987년, 1989년 남아프리카에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행위로 인해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법률 하에서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남아프리카에서 특히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률이 높아짐에 따라 종교 및 정치 집단, 노동 조합, 인권 단체, 법조인 사이에서 사형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이들은 1971년 남아프리카 사형 폐지 협회(Society for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in South

Africa)를 창설했다. 협회는 남아프리카 교회 위원회(South African Council of Churches)가 사형에 대한 절대적 반대를 선언한 1988년에 재설립되었다.

1990년 데 클레르크(de Klerk)가 이끄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대통령은 사형 집행의 중단을 선언했다. 1990년 7월 개정 형법을 통해 살인에 대한 필수적 사형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 항소권을 규정했으며 주거 침입에 대한 사형 조항을 폐지했다.

1990년은 기념비적인 해였다.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투쟁을 이끌어 사형이 언도될 수 있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사형을 야만적 처벌로 규정한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형 폐지는 새로운 사회 질서 수립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1990년 7월 이전에 내려진 모든 사형 선고를 재검토하기 위한 법정이 세워졌다. 이에 법무장관은 1992년 권리장전 도입 시까지 사형 집행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남아프리카 임시 헌법이 1993년 채택되었고, 여기에 포함된 권리장전에는 사형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았다. 같은 해 집행 중단 기간 중에 사형을 선고받은 두 명이 사형이 새로운 헌법 제 3장에 규정된 권리장전의 인권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사형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장관이 개입해 항고인을 지지했고, 사형의 위헌 결정을 위해 새롭게 수립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심리한 이 사건(State v T. Makwanyane and M. Mchunu)에서 기념비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 6월 6일 헌재는 일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이 잠정 헌법의 초석으로서 생명과 존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 문화"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5년 2월 사형에 관한 심리를 진행한 헌재는 억제 효과에 대한 주장을 단호히 일축하고 남아프리카에서 폭력을 감소시키는 길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중 한 명은 사형이 남아프리카 식민 잔재의 일부이며 원주민 사회의 사법 절차에서는 전통적으로 살인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형이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새로운 시대의 화해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형에 대한 여론이 상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소는 대중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서 차스칼슨(Arthur Chaskalson) 헌법재판소장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여론이 심의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헌법을 해석하고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그 조항을 지키도록 헌법재판소에 정히 부여된 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의견에 결정권이 있다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 새로운 법 질서를 세우고 모든 법률에 대한 사법적 검토의 권능을 부여하는 이유는 소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State v Makwanyane (1995) (3) SA 391,para. 88).*

이 결정에서 남아프리카 헌법재판소는 국제법과 비견되는 법률을 광범위하게 인용했다. 헌재는 사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남아프리카 헌법에 있는 생명권 조항을 유럽 인권협약 및 미국 헌법의 조항과 구별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미국 연방 및 주 대법원과 헝가리, 캐나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하여 사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처벌의 형태로서 잠정 헌법에서 금지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형을 부활시키라는 일부 정당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지지했다. 1997년 의회는 법전에서 사형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는 개정 형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개정 형법은 1998년 발효되었으며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재선고가 이루어졌다. 200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사형의 위헌성에 대한 1995년의 결정을 온전히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아프리카 국민당을 포함한 이들이 남아프리카의 높은 범죄율에 맞서는 수단으로 사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했으나 남아프리카의 지도자인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가 이를 거절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의 억제 효과를 거듭 부인함에 따라 그러한 요구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11년 12월 15일 제이콥 주마(Jacob Zuma) 남아프리카 대통령은 사형 폐지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남아프리카는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고,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모든 후속 결의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남아프리카는 2002년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남아프리카는 ICDP 지원 그룹의 창설 회원국이 됨으로써 사형 폐지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을 확언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1932년 처음으로 사형이 폐지되었으나 1934년 부분적으로 재도입되었고 1938년 완전히 재도입되었다. 스페인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의 독재가 끝나가던 1975년 말이다. 1978년 승인된 현행 헌법에 따라 일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다. 1995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다.

1822년의 스페인의 첫 번째 형법은 교수형을 대체하는 집행 수단으로 가로테(garrote)를 도입했다. 절대 왕정 시대에 사형 집행 방법으로 교수형을 부활시킨 후 몇 년이 지난 1832년 국왕 페르난도 7세(Fernando VII)는 교수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가로테를 재도입했다. 뒤이어 1848년, 1850

년, 1870년 형법은 군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의 총살을 제외하고 가로테가 유일한 사형 집행 방법으로 자리잡도록 했다.

스페인에서 사형은 1932년 제 2 스페인 공화국 형법 개혁의 결과로 사형이 폐지될 때까지 중단 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형이 폐지된 지 2년 만인 1934년 10월 테러와 강도 집단에 대해 사형이 재도입되었다.

1936년부터 1939년 사이에는 스페인 내전이 발생해 1975년 사망 시까지 집권을 꿈꾸던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가 종식되었다. 1938년 프랑코는 사형 폐지가 순조로운 국가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긴급 명령을 통해 형법에 사형을 완전히 부활시켰다.

스페인 내전 기간과 프랑코 치하에서는 남성과 여성, 심지어 아동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프랑코 사후 두 달이 지난 1975년 9월 27일이었다. 그 날 테러 조직 ETA의 일원인 혼 파레데스(Jon Paredes)와 앙헬 오타에기(Angel Otaegi), 또 다른 테러 조직 FRAP의 일원인 호세 루이스 산체스 브라보(José Luis Sánchez Bravo), 라몬 가르시아 산즈(Ramón García Sanz), 움베르토 바에나(Humberto Baena)가 총살형에 처해졌다. 사형 선고는 유럽 국가의 찬성과 반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교황 바오로 6세(Paul VI)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서유럽에서는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여러 유럽 국가의 대사들이 항의의 뜻으로 마드리드를 떠났다.

보고에 따르면 5명의 사형수에 대해 가로테 대신 총살로 집행 방법을 변경하는 데 국제적인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1974년 3월 2일 살바도르 푸이그 안티크(Salvador Puig Antic)와 에인즈 체즈(Heinz Chez)가 바르셀로나와 타라고나에서 각각 사형을 당했는데, 가로테를 이용해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살바도르 푸이그 안티크는 스페인의 과르디아 시민군을 살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이 언도되었다.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로 선고를 받은 에인즈 체즈 또한 같은 날 사형을 당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폭력과 정치적 폭력을 동일시하는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국의 시도였다.

프랑코 독재 이후 스페인의 민주화를 이룬 1978년 헌법은 일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전시 군사법에서는 사형이 유지되었다. 군형법은 반역, 군사 반란, 간첩, 방해 공작, 전쟁 범죄에 대한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했다.

1995년 군사법에서 사형이 폐지되면서 스페인은 완전한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스페인 헌법 제 15조에서 여전히 사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두는 생명과 신체적, 정신적 무결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문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처벌 또는 취급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 이에 전시 군형법에 의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형은 폐지한다.*"

1985년 1월 스페인은 평시 사형 폐지를 규정한 유럽 인권협약 제 6 의정서에 가입했고 2009년 12월에는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협약 제 13 의정서를 비준했다.

또한 1991년 스페인은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스페인의 이러한 의정서 비준은 사형 폐지에 대한 스페인의 노력을 보여주며 사형 관련 헌법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2007년 스페인은 사형의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 찬성했고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채택된 모든 후속 결의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스페인은 해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스페인 국민을 위한 양국 관계 수준의 노력과 다자 관계에서는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안 (2018-2020년) 사형 폐지를 국가의 우선순위로 삼는 등 보편적 사형 폐지를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호아퀸 호세 마르티네즈(Joaquin José Martinez)는 미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제 2심 후 2001년 사형에서 벗어난 최초의 스페인 국민이자 유럽인이 되었다. 그는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1997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스페인 정부와 의회는 그의 석방을 위해 그의 가족 및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유럽 의회 및 기타 조직과 협력했다.

스페인의 주도적인 노력은 2010년 ICDP의 설립에 이바지했다. ICDP 사무국은 마드리드에 있다. 스페인은 ICDP 지원 그룹 구성원이자 현재 의장국이다.

수리남

수리남은 2015년 4월 13일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군형법에서는 아직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수리남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2년이다.

2011년 5월 6일 수리남에 대한 UPR의 평가에서 1982년부터 사실상 사형 집행이 중단되고 있으나 형법에 여전히 악질적 살인, 계획적 살인, 반역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UPR 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형법이 개정 중에 있으며 형법 개정안에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A/HRC/18/12).

수리남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2년으로 알려져 있다. 군부 정권의 정적이던 부사관 윌프레드 호커(Wilfred Hawker)가 반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82년 3월 13일 군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1982년 12월 8일 15명의 정적이 처형된 사건은 “12월의 살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과 언론에서는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해를 1927년으로 꼽으며 이러한 사형 집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리남 의회 부의장인 루스 바이덴보쉬(Ruth

Wijdenbosch)는 2013년 10월 10일 ICDP와 국제 의원연맹(Inter Parliamentary Union)이 제네바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사형 폐지를 위한 성명을 통해 "국회의 주요 정당과 정부에서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개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덴보쉬의 요청에 따라 스위스 대통령직을 역임한 루스 드라이푸스(Ruth Dreifuss) ICDP 위원이 영국 국회의원 그렉 멀홀랜드(Greg Mulholland)와 함께 수리남을 방문해 정부 고위 관료 및 사형 폐지 문제에 관한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정부가 사형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형법을 채택할 것을 독려했다.

2014년 6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20-30년의 장기 징역형으로 대체하는 형법안이 수리남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다.

EU,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주최로 파라마리보에서 2015년 2월 2-6일 열린 수리남의 사형제에 관한 세미나에는 마크 보수위트 교수가 기조 연설자로 참석했다.

보수위트 교수의 방문은 ICDP가 주선한 것이었다. 세미나에는 의회, 시민 단체, 법률 전문가 등의 강연이 포함되었으며 형법안 채택 과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사형의 폐지와 수리남의 제 2 선택의정서 및 미주 인권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15년 4월 13일 새 형법이 발효되었고, 이로써 사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ICDP에 제출된 보고에 따르면 데시 보우테르세(Dési Bouterse) 대통령이 3월 30일 서명하고 4월 13일에 관보에 게재되었다(Staatsblad van de Republiek Suriname, 2015, N° 44; Wet wijz. Wetboek van Strafrecht (4)). 새 형법에는 사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리남은 2016년 5월 2일 UPR의 2차 평가를 받았고, 사형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이 칭찬을 받았다(A/HRC/WG.6/25/SUR/2). 수리남은 수리남 군형법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서명, 비준하라는 UPR의 권고를 받아들였다(A/HRC/33/4).

수리남은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반대했다. 2008년, 2010년, 2012년의 표결에는 기권했고, 2014년과 2016년에는 사형 폐지를 위한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다.

토고

토고 공화국은 2009년 국내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법률상 사형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1978년이다. 토고는 국제적인 사형 폐지를 목표로 2016년 9월 의회에서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토고는 1992년 2월 27일 아프리카연합의 전신인 아프리카 단결기구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가 1990년 7월 11일 채택해 1999년 11월 29일 발효된 아프리카 아동 인권 복지 헌장(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OAU Doc. CAB/LEG/24.9/49 (1990))에 서명했다. 헌장 제 5조는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토고 정부는 2008년 12월 10일 각료 회의를 통해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2년 마지막으로 내려진 사형 선고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토고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해는 1978년이다.

코코우(Kokou) 법무장관은 "*이 나라는 사법적 오류를 제한하고 (…) 개인의 생득적 권리를 보장하는 건전한 사법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체계는 사형을 유지하고 사법부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형법과 양립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포레 나싱베(Faure Gnassingbe) 토고 대통령이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가운데, 의회는 2009년 6월 23일 모든 범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형을 폐지했다(법률 제 2009-011호).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즈 자파테로(José Luis Rodriguez Zapatero) 스페인 총리(2004-2011년)와 2010년 ICDP 설립을 주도한 인물들이 로메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토고는 2011년 UPR 평가에서 보고서를 제출했고 2011년 10월과 2012년 3월의 검토 과정에서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2015년 1월 21일 토고 각료 회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 가입을 승인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후 의회는 2015년 7월 10일 이를 만장일치로 비준했고, 토고는 2016년 9월 14일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해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토고는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의 표결에 기권했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전세계적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에는 찬성했다. 2014년과 2016년에는 사형에 대한 전세계적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다.

토고는 ICDP 지원 그룹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터키

터키는 2001년의 헌법 개정과 2002년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일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04년 터키는 또 한차례의 헌법 개정과 후속 형법 개정을 통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금지했다. 1987년 군사법 폐지는 사실상의 집행 중단과 사형 감소에 이은 사형 폐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해는 1984년이다.

1926년 터키 형법의 16개 조항에서는 국가, 정부, 헌법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필수적인 사형 선고를 규정했다. 또한 8개 조항에서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해 필수적 사형 선고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군형법과 반역법에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헌법 제 87조에 따라 모든 법적 구제책을 소진한 사형수에 대해 국민회의(Grand National Assembly)(의회)의 선고 승인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국회 사법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집행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1923년 근대 터키 공화국 수립 이후 588명의 형사범과 정치범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1960년, 1971년, 1980년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집행이 더 빈번히 일어났으나, 1973년부터 1980년까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의회에서 확정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집행 중단이 이루어졌다. 사형 집행 중단은 1980년 9월 12일 군사 쿠데타 이후 종료되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84년 사이 50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27건은 형법 제 125조 및 146/1조에 따른 정치 관련 범죄였다. 대부분의 사형 선고는 1978년 발효된 군사법 하에서 군사 법원의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4년으로, 이는 국제적인 항의를 불러 일으켰으나 법원은 계속해서 사형 선고를 이어갔다. 1987년 7월 군사법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사형 폐지를 향한 초석이 되었다.

1990년 11월, 터키 국민회의는 사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의 수를 줄이는 형법 개정안을 비준했다. 그러나 살인과 분리주의 등의 정치적 범죄를 포함한 13개 죄목에 대해서는 사형이 유지되었다. 폐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1991년 4월 의회는 1991년 4월 8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모든 사형 선고를 감형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형법에 따른 정치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와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강간 및 마약 밀수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총리는 국민회의 비준을 위해 계류중인 276명에 대한 사형 판결안을 즉시 철회했다. 터키는 사실상 사형 집행 중지국이었으나, 사형은 법전에 남아 있었다. 법원은 계속해서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 법원은 판결을 유지했다.

터키는 1950년 4월 13일 유럽 평의회 회원이 되었고 1954년 유럽 인권협약을 비준했다. 1997년 스트라스부르 정상회의에서 터키 대통령 슐레이만 데미렐(Süleyman Demirel)은 사형 폐지를 약속했다. 사형 폐지 절차를 취하는 과도기에는 사형 집행 중단을 유지했다.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새로운 형법안이 1997년 의회 위원회에 의해 발의되었고 1999년 초 정부는 유럽 평의회에 법안 통과가 정부의 우선순위임을 알렸다.

1999년 6월까지 항소 법원은 47건의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PKK의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Abdullah Öcalan)에게 "반역과 분리주의" 혐의로 1999년 6월 29일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주심 재

판관이 판결 후 사형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다. 유럽 정부와 정부간 단체, NGO는 터키에 그의 사형 판결에 대해 감형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사형 집행 재개에 반대했다. 유럽 의회는 1999년 6월 외잘란의 처형이 "터키의 EU 통합 과정에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0년 1월 외잘란의 사형 선고가 유럽 인권재판소의 검토에 의해 중단되었고, 2002년 10월 국가안보법원은 유럽 인권재판소의 평결 이전에 그의 사형 선고에 대해 감형을 실시했다.

터키가 사형 폐지를 사전 요건으로 하는 EU 가입 후보 자격을 얻은 후 EU는 단기적으로 사실상 사형 집행 중지를 유지하고 중기적으로는 유럽 인권협약의 관련 의정서 비준을 포함한 사형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터키는 사형 폐지를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1년 10월 통과된 헌법 개정안 제 38조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형을 금지했으나 전시 및 '테러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유지했다. 2002년 8월 3일 의회는 평시에 사형을 폐지하고 '테러 범죄'에 대한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이 포함된 일련의 개혁안을 채택했다. 2002년 11월 PKK 단원 180명을 비롯한 이들의 사형 선고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일 년 뒤인 2003년 11월 터키는 평시에 사형을 폐지하는 유럽 인권협약 제 6 의정서를 비준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 2년차인 2004년 터키는 헌법과 형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금지하는 마지막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5월 7일 의회는 전시 사형을 허용하는 헌법 제 15조의 어구를 삭제하고 제 38조에 "사형은 …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제 5170호를 채택했다. 이어 2004년 7월 14일 의회는 형법의 모든 조항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률 제 5218호, 일명 '제 9차 조화법'을 채택했다.

터키는 2006년 사형을 폐지하는 유럽 인권협약 제 13 의정서에 가입하고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약속을 더욱 분명히 했다. 터키는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고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의 모든 후속 결의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2016년 7월 쿠데타 실패 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형 재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017년 4월 16일 터키는 의회제에서 대통령에게 유례 없는 권력을 부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터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반을 약간 넘긴 찬성표를 얻어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다(투표인의 51.4%가 개헌에 찬성). 에르도안 대통령은 의회가 사형 재도입을 위한 법안을 지지하고 법안이 자신에게 제출된다면 서명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터키

에서 사형제 부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터키는 ICDP 지원 그룹의 창설 회원국이다.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다수의 사건에서 사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는 결정을 내놓은 이후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사형이 중단되었다. 1977년 게리 길모어(Gary Gilmore)가 항소권을 포기하고 유타주에서 총살형에 처해짐에 따라 사형 집행이 재개되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사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형을 폐지한 주들이 들어나고 있다. 2018년 3월 현재 19개 주에서 사형을 폐지했고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31개 주 대부분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 8개 주에서 2017년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적은 수의 주에서 사형이 주기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남부에 위치한 주들이다. 2017년 집행된 사형의 30%가 텍사스 주에서 이루어졌다. 2017년 8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2016년의 5개 주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많은 연구에서 인종적, 지리적 편견이 미국 내의 사형 적용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미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통상적인 처벌"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린 결정(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국가는 산업화, 민주화된 국가 중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 41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23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 측면에서 2016년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연간 사형 집행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많은 주에서는 사형을 지지하는 여론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요인으로는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심지어 집행이 이루어지는 잘못된 유죄 판결에 대한 상당한 증거, 사형의 억제 효과에 대한 의문 증가, 매우 높은 사형 집행 비용에 대한 고려, 사형에 반대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청원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종교 단체, 소수집단 대표, 시민 지도자, 변호사, 각 주의 변호사협회, 지자체, 정신과 의사협회 등은 전국적으로 사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거나 사형제의 결함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활동을 펼쳤다. 워싱턴의 사형 정보 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를 비롯해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시민 사회 조직들은 대중에게 잘못된 유죄 판결에 대해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문을 비롯한 언론 역시 아이오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경우와 같이 사형제의 재도입에 반대하는 데에 있어 역할을 했다.

최근 미국 7개 주에서 사형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코네티컷(2012년), 델라웨어(2016년)[4], 일리노이(2011년), 메릴랜드

(2013년), 뉴저지(2007년), 뉴멕시코(2009년), 뉴욕(2007년) 주가 이에 해당된다. 콜로라도(2013년), 오레곤(2011년), 펜실베니아(2015년), 워싱턴(2014) 주에서는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중단시켰다. 존 히킨루퍼(John Hickenlooper) 콜로라도 주지사는 "나는 한때 사형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사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 사형은 세상을 더 안전하거나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워싱턴 상원은 주에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했고 현재 법안이 하원에서 계류 중이다.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멕시코 주의 사형 폐지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각 주의 주지사들이 사형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지사가 사형수에게 사면을 허가하거나 의회에서 통과된 사형 폐지 법안에 서명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미국은 사형 폐지를 위해 전세계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2007년의 유엔 총회 결의와 후속 결의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코네티컷 주

2012년 4월 25일, 코네티컷 주는 미국에서 사형을 폐지한 17번째 주가 되었다. 다넬 말로이(Dannel Malloy) 주지사는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17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으나 사형 폐지는 이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코네티컷 주는 1973년 사형을 재도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코네티컷 주는 피고가 "정신 지체"인 경우 (Atkins v Virginia, 536 U.S. 304, 2002) 또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전게서, Roper v Sim- mons)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사형이 재도입된 후 한 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9년 사형 폐지 법안이 주 의회 양원을 통과했으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1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사형 재판으로 인해 상원에서 이와 같은 시도가 다시금 이루어졌다.

가톨릭 교회, 코네티컷 사형 폐지 네트워크 (Connecticut Network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CNADP), 전직 사법 당국 관리 등이 지역의 유력한 사형 반대 운동가로 활동했다. 지역 최대의 신문사에서도 편집부 논평을 통해 사형 폐지에 찬성했다. 2004년 뉴헤이븐 시와 하트포드 시에서 코네티컷 주의 사형에 반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2003년 1월에는 코네티컷 의회가 2001년 설립한 코네티컷 사형 위원회(Connecticut Commission on the Death Penalty)에서 코네티컷 주의 사형 적용의 인종적, 지리적 차

4) ICDP에 전달된 보고에 따르면 2016년 델라웨어 대법원이 사형 관련 주법을 폐기하여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델라웨어 하원에서 사형을 재도입하는 법안을 표결 처리했고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를 밝힌 "사형 부과에 대한 연구(Study of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를 발간하여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2012년 4월 상원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다넬 말로이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검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 나는 우리의 사법 체계가 (…)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완전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거나 잘못 결부된 사람들을 보았다. 차별을 목격했다. 나는 사형이 공정하지 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또한 주지사는 사형에 반대하고 주 의회에 로비를 펼친 피해자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의 48%가 사형에 찬성하고 43%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폐지되었다.

메릴랜드 주

메릴랜드 주는 2013년 사형을 폐지했다. 이는 5명의 사형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마틴 오말리(Martin O'Malley) 주지사는 2015년 1월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메릴랜드는 미국에서 사형을 폐지한 18번째 주가 되었다.

미국 대법원이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판결*(Gregg v. Georgia, 428 U.S. 153, Proffitt v. Florida, 428 U.S. 242, and Jurek v. Texas, 428 U.S. 262)*을 내놓은 지 2년 뒤인 1978년 메릴랜드 주에서 사형이 재도입되었다. 앞서 메릴랜드 주는 사형 선고 과정에서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실시한 바 있다. 1987년 메릴랜드 주는 청소년을 사형 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켰다(Laws of Maryland 1987, Chapter 626).

2년 후 메릴랜드 주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불법화하는 법을 채택했다. 1993년 하원 법안 제 498호에 의해 메릴랜드 주 내의 사형 집행 방법이 가스에서 주사로 변경되었다.

1996년 패리스 넬슨 글렌데닝(Parris Nelson Glendening) 주지사는 "메릴랜드 주의 사형 집행에 있어 인종적 차이"에 대해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했다. 사형의 공정한 부과에 관한 보고서에서 태스크포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과 […]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 중 피해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경우의 비율이 적은 것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스크포스는 당시 직접적으로 인종적 차별이 적용되었거나 피해자의 인종이 피고의 사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3년 후 글렌데닝 주지사는 "인종과 관할권의 영향과 관련한 메릴랜드 사형 선고 체계에 대한 실증 분석(An Empirical Analysis of

Maryland's Death Sentencing System With Respect to the Influence of Race and Legal Jurisdiction)" 연구를 시작했고, 메릴랜드대학이 연구를 시행했다(레이 파터노스터(Ray Paternoster) 교수). 2003년 연구 최종 보고서에서는 메릴랜드 주의 사형 선고에서 인종적, 지역적 편견이 존재했으며 특히 백인이 피해자이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범, 살해자인 살인 사건의 경우가 사형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글렌데닝 주지사는 2002년 메릴랜드 주 내에서 사형의 사용 중단을 발표했으나 이를 자신의 임기까지로 제한했다. 뒤를 이은 로버트 에를리히 주니어(Robert Ehrlich Jr.) 주지사는 2003년 사형 중단을 해제하고 집행 재개를 허용했다.

2006년 메릴랜드 항소법원은 약물 주입에 의한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했고, 이에 주 내의 사형 집행에 대해 사실상의 중단을 발표했다.

2008년 하원 법안 제 1111호에 의해 메릴랜드 사형 위원회(Maryland Commission on Capital Punishment)가 설립되었다(SB614/HB1111). 위원회는 인종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차이와 사형의 비용, 사형 선고에서 비롯되는 기타 문제에 대해 조사했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메릴랜드 주의 사형 폐지를 권고했다. 주요 결과로는 1) 메릴랜드 주에서 인종적, 지역적 차이가 존재했고 2) 사형의 경제적 비용이 종신형의 비용을 현저히 상회했으며 3) 사형이 메릴랜드 주에서 폭력 범죄를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듬해 메릴랜드주는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사형 제한을 도입했다. 사형은 살인 용의자와 관계된 생물학적 또는 DNA 증거가 있거나 영상을 통해 유죄가 명백하거나, 살인 용의자의 자발적 심문과 자백이 있거나, 살인 용의자와 결정적으로 연결된 영상 기록이 있는 사건으로 제한되었다. 목격자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

2013년 1월 메릴랜드 주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상원 법안 제 0276호가 상원에 제출되었다. 법안은 찬성 27표, 반대 20표로 통과되어 하원에 전달되었고, 다음날 하원은 찬성 82표, 반대 56표로 이를 승인했다. 2013년 5월 2일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상원 법안 제 0276호에 서명해 "사형 폐지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한" 주법 제 156장이 되었다.

오말리 주지사는 "나는 법을 바꾸고 사형을 폐지하여 우리가 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사형 폐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형 선고를 받은 5명의 수감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번째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015년 1월 20일, 오말리 주지사는 메릴랜드 주에 남아있는 네 명의 사형수에 대해 종신형으로 감형을 실시했다.

메릴랜드 주에서 사형 반대를 위해 노력한 이들 중에는 커크 노블 블러즈워스(Kirk Noble Bloodsworth)가 있었다. 그는 무고하

게 사형 판결을 받고 1993년 혐의를 벗을 때까지 메릴랜드 주에서 약 9년 간 복역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DNA 시험으로 피고의 결백을 입증한 첫 번째 사례였다.

뉴멕시코 주

빌 리처드슨(Bill Richardson) 뉴멕시코 주지사가 2009년 3월 18일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멕시코는 미국에서 15번째로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되었다. 이 법은 두 명의 사형수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1977년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재개된 후 뉴멕시코 주에서는 2001년 단 한차례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당시 주지사는 "오늘날 선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더 나은 공공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1974년 뉴멕시코 주에서 네 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2년 뒤 사면되었다. 2001년 2월 10일 뉴멕시코 주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법안은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2008년 주 전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4%의 주민들은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에 찬성했다.

가톨릭 교회의 주요 인사와 – 뉴멕시코 주는 가톨릭 신자들이 다수이다 – 살인 피해자 가족 등이 사형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로비 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일부 주의회 의원들은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로 사형 집행의 비용을 들었고,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이유로 든 이들도 있었다. 사형 폐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주의회는 뉴멕시코 로 리뷰(New Mexico Law Review)에 실린 2008년의 권위있는 연구를 참고했다. 연구에서는 1979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형의 적용에 대해 검토하여 뉴멕시코 주에서 사형의 부과가 범죄 발생 장소와 시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종 또는 민족 등 법적으로 무관한 사안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다.

뉴멕시코 주의 2009년 사형 폐지 법안은 상원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 (찬성 24표, 반대 18표) 통과되었고 하원에서는 찬성 40표, 반대 28표로 통과되었다. 2009년 3월 사형 폐지 법안이 통과된 후 빌 리처드슨 주지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은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주지사가 부임한 후 입장을 바꾸어 사형 폐지 법안에 서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사법적 오류의 가능성이었다. 그는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으로 인해 양심의 도전을 느꼈고, 심각한 사법적 오류의 내재적 위험이 있는 사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세계적인 사형 폐지 추세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국제 인권의 시각에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세계 다른 지역에 뒤쳐질 이유가 없다." 그는 법안에 서명하기로 한 결정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인정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2005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령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사형을 폐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12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5년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8월 31일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인권과 자유를 중요 목표로 두 차례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과도기와 국가 건설을 위한 제 1단계(1991-2000년)와 현대와 및 역동적 민주주의 갱신을 위한 제 2단계(2001-2007년)가 그것이다. 제 1단계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유엔의 6개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제도를 수립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인권 교육을 촉진했다. 2008년 1월 1일의 사형 폐지는 법제와 민주주의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 2단계의 일환이었다.

1991년 독립 당시 우즈베키스탄 형법에서는 30개 이상의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1994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새 형법에서는 13개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했다. 1998년 사형을 허용하는 조항의 수가 8개로 줄어들었고, 2001년에는 4개, 2003년에는 2개 조항(제 97조 : 가중 상황에서는 계획적 살인, 제 155조 : 테러)으로 줄어들었다. 미성년자, 여성, 6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이 금지되었다.

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2005년 8월 1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의 사형 폐지에 관한" 대통령령을 채택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1월 1일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 또는 장기 구류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령 발표부터 사형 폐지 사이의 28개월 동안 공식적인 집행 중단이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2005년부터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선제적인 개혁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형의 즉각적인 폐지는 거절되었는데, 대통령령에 따르면 "사형의 폐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대중 인식 증진으로 […] 사형의 폐지를 포함한 형사 처벌의 추가적인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통령령은 종신형으로 감형된 수감자를 위한 시설과 건물의 건축,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할 인력의 훈련 등 "조직적인 준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하여 개정과 추가를 통한 형법, 형사절차법, 집행법 등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미 사형을 폐지한 국가의 법제를 연구하고 사형을 종신형 또는 장기 징역형으로 대체하는 법적 절차에서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지원,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체계 및 형사 처벌 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추세는 사형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07년 6월 29일 헌법 개정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1월 1일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 폐지 이후 2008년 4월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은 사형 선고 수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형 폐지와 후속 사법, 법률 개혁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12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사형 폐지를 위한 전세계적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에 찬성했고, 2008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형 폐지국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교훈

본 보고서를 통해 사형 폐지 조치를 취한 26개 국가와 미국 3개 주의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방향과 교훈이다.

사형의 폐지를 향한 국제적 약속

몽골과 **베냉** 등의 국가는 국제적 약속이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채택함으로써 사형 폐지 과정을 시작했다. 즉,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것이다.

마다가스카르 역시 사형의 최종적인 폐지에 앞서 ICCRP 제 2 선택의정서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국내적인 사형 폐지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기니, 콩고 등의 국가는 사형 폐지국이 되기 이전에 사형의 사용에 대한 전세계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 찬성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남아프리카와 **과테말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과테말라의 경우에는 헌재의 역할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남아프리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과테말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억압적 과거와의 단절

권위주의적 과거 또는 학살과 비인간적 범죄를 수반한 분쟁과 단절하는 수단으로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도 있다. **캄보디아, 독일, 아이티, 르완다, 남아프리카, 스페인** 등이 이러한 방향을 택한 나라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개헌

캄보디아,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콩고 공화국, 터키, 우즈베키스탄은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기 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사형을 폐지했다.

멕시코에서는 법률에 의해 사형이 폐지되고 헌법 개정으로 이를 한층 강화했다.

의회의 역할

호주에서는 연방 의회가 사형을 금지했다. **피지, 마다가스카르, 뉴질랜드, 세네갈**에서는 의회가 표결을 통해 사형 폐지에 찬성했다. **토고** 의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국내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법률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하원이 헌법 개정으로써 사형을 폐지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수리남**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사형의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진 조치들은 수리남에서 사형 폐지 과정을 다시금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국제 사회의 중요성

UN, EU 등의 국제 공동체와 그 기구, 시민 사회 단체는 여러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제적 압박은 **르완다**와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사형 폐지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마다가스카르**와 **수리남**에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조직과 세계 사형 반대의 날 등의 행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집행 중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남아프리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첫 번째 조치로 사형과 집행에 대한 공식 중단을 확립했다.

피지, 과테말라, 기니, 콩고, 수리남, 터키 등의 경우 오래 기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에 사실상 사형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몽골, 과테말라, 필리핀의 경우에서 보듯 이러한 사형 중단에는 보통 사형의 징역형으로의 감형이 수반되었다.

사형의 범위 축소

사형의 사용 범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축소되었고 몇몇 국가들은 사형의 종국적 폐지를 향한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다.

아르헨티나, 피지, 기니, 포르투갈, 남아프리카는 완전한 사형 폐지에 앞서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과테말라** 또한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상태이다.

카자흐스탄과 **터키**는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갔다.

정치적 리더십

이러한 모든 계획과 경험의 밑바탕에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리더십은 개인적인 신념과 지도자들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프랑스, 몽골, 필리핀**의 경우가 그러했고, **미국 주**들의 사형 폐지에서도 주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권위적 과거와 결별하거나, 분쟁을 넘어서거나, 의회, 법치 등의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형 폐지의 실현을 담보한 경우도 있다.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은 해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는 리더십은 사형 폐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 지도자들의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부 수반,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주지사, 법무장관 등이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ICDP)는 사형 폐지를 향한 세계적 추세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스페인의 주도로 2010년 10월 7일 마드리드에서 창설되었다. ICDP는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하며 사형의 총체적 폐지를 향한 조치로 사형 집행의 즉각적인 보편적 중단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나비 필레이(Navi Pillay) 대표가 이끄는 21명의 고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은 세계 모든 지역을 대표하며 사형 폐지가 특정 지역, 특정 정치 체제, 종교, 문화 또는 전통이 원인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위원은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한다.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나바네템(나비) 필레이(Navanethem (Navi) Pillay) (대표) : 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2008-2014), 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판사(2003-2008), 전 르완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및 소장(1995-2003).

루스 드라이푸스(Ruth Dreifuss)(부대표) : 전 스위스 대통령(1999), 내무부 장관.

이브라힘 나자르(Ibrahim Najjar)(부대표) : 전 레바논 법무장관(2008-2011).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 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2004-2008).

미셸 뒤비비에 피에르-루이(Michèle Duvivier Pierre-Louis)(운영위원) : 전 아이티 총리(2008-2009).

한네 소피 그레베(Hanne Sophie Greve)(운영위원) : 서노르웨이 굴라팅 고등법원 판사 및 부원장, 전 유럽 인권재판소 판사(1998-2004).

마크 바론 보수위트(Marc baron Bossuyt) : 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위원, 상설 중재재판소 위원, 전 벨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9년 12월 15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작성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 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2010-2016), 전 인도네시아 법무장관(1999-2001).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 : 전 몽골 대통령(2009-2017).

실비에 카이테시(Sylvie Kayitesi) : 르완다 헌법재판소 부소장,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사형 및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전 르완다 공공 서비스 및 노동부 장관, 국토 인간 재정착 및 환경 보호부 장관.

이오아나 쿠추라디(Ioanna Kuçuradi) : 유네스코 철학 인권 의장(1998-현재), 터키 이스탄불 말테페 대학 철학과 교수 겸 인권 연구센터 소장(2006-현재).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 전 필리핀 대통령(2001-2010).

빌 리처드슨(Bill Richardson) :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2002-2010).

이반 시모노비치(Ivan Simonovic) : 전 유엔 사무부총장(2010-2016), 보호 책임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 자문(2016-2018), 전 크로아티아 법무장관(2008-2010).

호라시오 베르비츠키(Horacio Verbitsky) : 저명한 아르헨티나의 정치 칼럼니스트, 작가.

페데리코 마요르 사라고사(Federico Mayor Zaragoza)(명예대표) :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1987- 1999), 스페인 교육과학부 장관(1981-1982), 유럽 의회 의원(1987).

줄리아노 아마토(Giuliano Amato)(명예위원) : 전 이탈리아 총리(1992-1993, 2000-2001).

호베르 바뗑데흐(Robert Badinter)(명예위원) : 전 프랑스 법무장관(1981-1986).

모하메드 베자위(Mohammed Bedjaoui)(명예위원) : 전 알제리 외교장관(2005-2007), 국제 사법재판소 판사(1982-2001).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즈 자파테로(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명예위원) : 전 스페인 총리(2004- 2011).

마르타 빌라델 코마(Marta Vilardell Coma)(명예위원) : 전 스페인 인도주의, 사회문제 및 사형 폐지 대사(2015).

로돌포 마타롤로(Rodolfo Mattarollo)(1939-2014) : 전 아르헨티나 인권 차관(2005-2007).

아스마 질라니 자항기르(Asma Jilani Jahangir)(1952-2018) : 전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2002-2010).

ICDP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icomd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참고자료

- Amnesty International, Annual Global Reports: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and 2008.
  Available from: https://www.amnesty.org/en/what-we-do/death-penalty/
- Cornell Law School: Cornell Centre on the Death Penalty Worldwide.
  Available from: http://www.deathpenaltyworldwide.org/
-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re.
  Available from: https://deathpenaltyinfo.org/
- Ensemble contre la Peine de Mort
  Available from: http://www.ecpm.org/
- Hands Off Cain, Database.
  Available from: http://www.handsoffcain.info/bancadati/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United Nations, “Death Penalty”.
  Available from: http://www.ohchr.org/EN/Issues/DeathPenalty/Pages/DPIndex.aspx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Perio- dic Review”.
  Available from: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UPRMain.aspx
-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Available from: http://www.worldcoalition.org/es/
- Roger Hood and Carolyn Hoyle,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5 ed., OUP Oxford, 2015

감사의 글

ICDP는 본 보고서 제 2판의 출간을 기획하고 부분적으로 후원해 준 스페인과 각국에서 사형 폐지의 역사에 대한 내용 작성에 도움을 주신 ICDP 지원 그룹의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들에 특히 감사드린다.

ICDP 위원들의 지원과 조언, 독려는 본 제 2판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ICDP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Comisión Internacional contra la Pena de Muerte Calle Serrano Galvache 26

28071 Madrid, Spain

Phone: + 34 91 3799458

www.icomdp.org

©copyright ICDP 201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인 쇄 | 2018년 10월
| 발 행 | 2018년 10월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31 | F A X | (02) 2125-091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40-1 9336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